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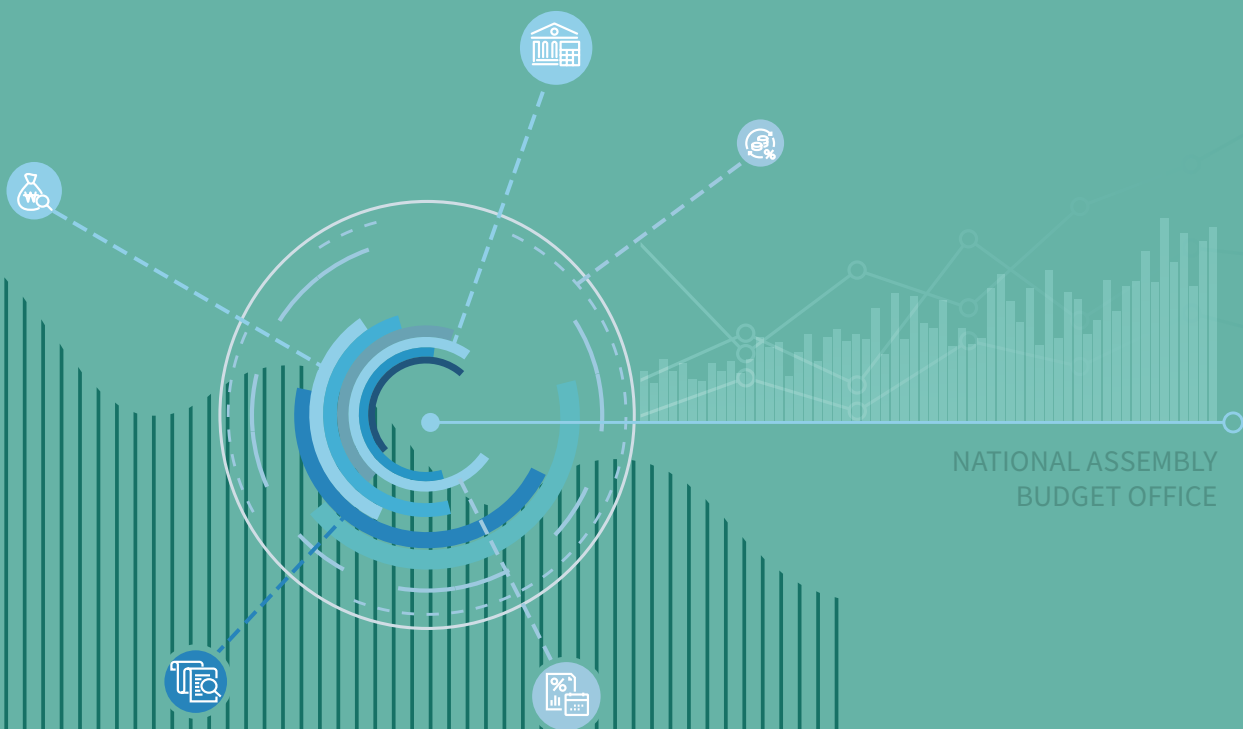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I 예산안 분석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Comprehensive Analysi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윤성식 박나경 윤성노 이미선
김민석 정성영 허아름
유민호 박은형 한서영 예산분석관

지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임윤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V. 정책별 분석 / 1

1.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3
2. 에너지시스템 효율화 예산안 분석	83
3.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분석	102
3-1.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냉장고문닫기 수요 불명확	106
3-2. 금융비용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추정 필요	109
3-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적정 수준 검토 필요	115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119
5.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사업 분석	157
6.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사업 분석	180
6-1.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의 국회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필요	183
6-2. 한국형 3축체계 주요 사업 현황 분석	188
6-3.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3축체계 전략 마련 필요	194
7.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	204



V. 정책별 분석

가. 현 황

(1) R&D 예산안 규모

2024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5.2조원) 감소한 25.9조원으로 편성되었고, R&D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9%에서 2024년 3.9%로 1.0%p 감소하였다.

[2024년도 총지출 및 R&D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R&D예산(A)	29.3	31.1	25.9	△5.2	△16.6
총지출(B)	682.4	638.4	656.9	18.5	2.9
비중(A/B)	4.3	4.9	3.9	△1.0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의 감액규모에는 R&D 사업으로 분류되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각 부처 정책연구 사업 등을 일반재정사업(비R&D)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된 예산도 포함되었는데, 이를 2023년 모수에서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12.1%(3.6조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

[R&D→비R&D 전환을 고려한 2024년도 R&D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2024 예산안(B)	증 감	
	예산	비R&D제외(A)		B-A	(B-A)/A
R&D예산(A)	31.1	29.5	25.9	△3.6	△12.1
총지출(B)	638.4	638.4	656.9	18.5	2.9
비중(A/B)	4.9	4.6	3.9	△0.7	-

자료: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자료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 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비R&D 전환 사업 목록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자료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작성하였다.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²⁾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R&D 사업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일반R&D 사업으로 구분된다.³⁾

2024년도 주요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0%(3.5조원) 감소한 21.5조원이며, 일반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1.7조원) 감소한 4.4조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주요/일반 R&D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전체R&D	31.1	25.9	△5.2	△16.6
주요R&D사업	25.0	21.5	△3.5	△14.0
일반R&D사업	6.1	4.4	△1.7	△27.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회계별 R&D 예산안 현황

2024년도 회계별 R&D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9.1%(1조 8,663억원) 감소한 18조 6,6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3%(2조 6,990억원) 감소한 5조 4,073억원을 편성하였다. 기금은 전년 대비 24.5%(5,973억원) 감소한 1조 8,456억원을 편성하였다. 특별회계의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지원 되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다수가 2024년부터 일반재정사업(비R&D)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이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주요R&D 사업은 기초원천 및 응용개발 등 과학기술R&D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비, 국방R&D 등이다. 일반R&D 사업은 인문사회R&D, 대학지원금, 보안성 국방R&D, 경제인문사회 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국공립연구소의 운영경비 등이었으나,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인문사회R&D, 대학지원금 등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제외되었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비가 주요R&D에서 일반R&D로 재분류되었다.

[2024년도 회계별 R&D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전체R&D	310,778	259,152	△51,626	△16.6
예산	286,349	240,696	△45,653	△15.9
- 일반회계	205,286	186,623	△18,663	△9.1
- 특별회계	81,063	54,073	△26,990	△33.3
기금	24,429	18,456	△5,973	△24.5

자료: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자료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② 부처별 R&D 예산안 현황

2024년도 R&D 예산안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안만 증액 편성되었고, 28개 부처는 감액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790억원(10.5%) 증액된 8,345억원으로 증액 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질병관리청은 전년 대비 194억원(9.7%) 증가한 2,20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대비 47억원(3.3%) 증가한 1,452억원이 편성되었다.

전년 대비 R&D 예산안 감액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총 1조 7,261억원 (59.9%)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학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R&D 사업의 일반재정사업 재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1,463억원(11.2%) 규모가 감액되어 1조 3,006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안은 8,959억원(9.3%)이 감액된 8조 7,599억원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7,486억원(13.8%) 감액된 4조 6,838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493억원(25.4%) 감액된 1조 3,208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기후관리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R&D 예산은 전년대비 1,785억원(30.6%) 감소한 4,04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R&D 분야 부처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202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A)	비R&D전환 제외		B-A	(B-A)/A
R&D	310,778	294,756	259,152	△51,626	△1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6,558	96,539	87,599	△8,959	△9.3
산업통상자원부	54,324	54,312	46,838	△7,486	△13.8
방위사업청	50,823	50,823	46,424	△4,399	△8.7
중소벤처기업부	17,701	17,701	13,208	△4,493	△25.4
교육부	28,804	13,006	11,543	△17,261	△59.9
보건복지부	7,555	7,548	8,345	790	10.5
농촌진흥청	9,022	9,022	7,174	△1,848	△20.5
해양수산부	8,824	8,815	7,147	△1,677	△19.0
국무조정실	5,567	5,567	5,356	△211	△3.8
국토교통부	5,571	5,545	4,225	△1,346	△24.2
기획재정부	5,830	5,815	4,045	△1,785	△30.6
환경부	3,914	3,900	3,059	△855	△21.8
질병관리청	2,008	2,004	2,202	194	9.7
농림축산식품부	2,779	2,755	2,135	△644	△23.2
식품의약품안전처	1,405	1,398	1,452	47	3.3
산림청	1,574	1,574	1,257	△317	△20.1
행정안전부	1,262	1,251	1,040	△222	△17.6
기상청	1,224	1,218	1,009	△215	△17.6
문화체육관광부	1,354	1,336	1,001	△353	△26.1
기타 부처 ¹⁾	4,681	4,628	4,091	△590	△12.6

주: 1) 기타 부처는 2023년 본예산 기준 21개, 비R&D제외 및 2024년 예산안 기준 12개 부처임

자료: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③ R&D 분야 세부사업 수 현황

2024년 R&D 예산안은 31개 부처 총 1,36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계속사업은 1,178개, 신규사업은 186개이며,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81개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195개, 해양수산부 106개, 국토교통부 81개, 방위사업청 74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7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R&D 분야 부처별 세부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4세부사업수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계속	신규	합계			B-A	(B-A)/A
R&D	1,178	186	1,364	310,778	259,152	△51,626	△1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2	89	381	96,558	87,599	△8,959	△9.3
산업통상자원부	177	18	195	54,324	46,838	△7,486	△13.8
방위사업청	65	9	74	50,823	46,424	△4,399	△8.7
중소벤처기업부	30	2	32	17,701	13,208	△4,493	△25.4
교육부	9	-	9	28,804	11,543	△17,261	△59.9
보건복지부	61	12	73	7,555	8,345	790	10.5
농촌진흥청	52	-	52	9,022	7,174	△1,848	△20.5
해양수산부	96	10	106	8,824	7,147	△1,677	△19.0
국무조정실	31	-	31	5,567	5,356	△211	△3.8
국토교통부	78	3	81	5,571	4,225	△1,346	△24.2
기획재정부	70	3	73	5,830	4,045	△1,785	△30.6
환경부	35	4	39	3,914	3,059	△855	△21.8
질병관리청	21	2	23	2,008	2,202	194	9.7
농림축산식품부	22	2	24	2,779	2,135	△644	△23.2
식품의약품안전처	13	4	17	1,405	1,452	47	3.3
산림청	18	3	21	1,574	1,257	△317	△20.1
행정안전부	22	4	26	1,262	1,040	△222	△17.6
기상청	20	1	21	1,224	1,009	△215	△17.6
문화체육관광부	9	4	13	1,354	1,001	△353	△26.1
기타 부처 ¹⁾	57	16	73	4,681	4,091	△590	△12.6

주: 1) 기타 부처는 2023년 본예산 기준 21개, 비R&D제외 및 2024년 예산안 기준 12개 부처임

1. 2024년 신규 세부사업에는 기존사업의 통폐합 등 구조개편을 통해 신설된 사업 포함

자료: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24년 사업별 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사업 1,486개 세부사업 중 41개(2.8%) 사업은 비R&D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67개(18.0%)는 종료 또는 통폐합되었으며, 812개(54.6%)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308개(20.7%)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58개(3.9%)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2024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16.6% 감액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거나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365개, 24.6%) 보다는 감액 편성된 사업(813개, 54.7%)이 사업 수 기준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2024년 R&D 분야 전년 대비 증액 또는 감액 사업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3년 세부사업	비R&D 전환	종료/ 통폐합	2024 계속사업			2024 신규사업	2024년 세부사업
				전년 대비 감액	전년동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수	1,486	41	267	813	58	307	186	1,364
비중1	100.0	2.8	18.0	54.7	3.9	20.7	-	-
비중2	-	-	-	59.6	4.3	22.5	13.6	100.0

자료: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 R&D 예산안 편성 방향

2023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에 따르면, R&D 분야는 보조금 사업과 함께 ‘중점 정비 분야’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는 ‘그간 R&D 투자가 2018년 19.7조원에서 2023년 31.1조원으로 연평균 10.9%씩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하고, ‘도전적인 과제 보다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하고 있으며, R&D 생태계가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도전적·성과창출형 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정부는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는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2024년 R&D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4년 R&D 예산안은 ① 국가전략기술 분야, ②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③ 국제협력, ④ 신진연구자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

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여 첨단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947억원 (6.3%) 증가한 4조 9,775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인공지능 분야는 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등에 전년 대비 633억원(9.0%) 증가한 7,685억원이 편성되었고, 바이오헬스에 AI와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전년대비 1,463억원(17.7%) 증가한 9,750억원이 편성되었다.

양자 분야에는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72억원(15.9%) 증가한 1,25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블록체인 고도화 등 사이버보안을 위한 사업에도 전년 대비 239억원(14.5%) 증가한 1,892억원이 편성되었다.

② 전략기술 R&D 내에는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플래그십프로젝트’로 명명하였으며, 2024년 예산안에 1,495억원이 편성되었다. 세부(내역)사업 수로는 총 7개 사업이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사업(495억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삼각체제 클러스터 구축’ 사업(100억원), 한계도전 R&D 프로젝트(1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총 800억원)이 해당된다.

③ 국제협력 R&D는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년 대비 1조 3,000억원(260.0%) 증가한 1조 8,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바이오기술을 융합·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며, 2024년 예산안에 총 864억원이 편성되었고,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에 협력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사업(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④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3,071억원에서 4,357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젊은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실구축지원, 국외연수 등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2024년 R&D 중점투자 분야방향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주요내용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① 핵심전략기술 R&D		46,827	49,775	2,947
- 인공지능(AI)	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 등	7,051	7,685	633
- 첨단바이오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8,288	9,750	1,463
- 양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1,080	1,252	172
-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 블록체인 고도화 등	1,653	1,892	239
② 플래그십 프로젝트 ¹⁾	(핵심전략기술에 포함)		1,495	1,495
- KARPA-H	바이오분야 도전적·혁신적 연구	-	495	495
-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 축	-	100	100
- 한계도전R&D프로젝 트	기초원천분야 도전적·혁신적 연구	-	100	100
-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 술개발(4개 사업)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	-	800	800
③ 국제협력 ²⁾		5,000	18,000	13,000
-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	의료데이터(한국) - 첨단바이오 기술(미국) 융합·활용	-	864	864
- Top-tier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에 협력거점 구축 및 지속적 협력추진	-	100	100
④ 신진연구자 지원	신진연구자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 확 대	3,071	4,357	1,286

주: 1)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안은 전액 핵심전략기술 R&D에 포함됨

2) 국제협력 R&D 예산안 합계는 보도참고자료에 조원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
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억원 단위 예산액 파악이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보도참고자료(2023.8.)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R&D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는 (1) 2023~2027년 중장기 R&D 재정
지출 계획, (2) 2024년 R&D 예산안 감소의 적절성, (3) R&D 예산의 편성 체계,
(4) R&D사업의 비R&D 전환, (5) R&D 조기종료 사업, (6) 예산 감액 과다 계속사
업, (7) 신규 R&D사업 예산안, (8) 국제협력 R&D사업 예산안, (9)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사업, (10)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

나. 분석의견

(1) 2023~2027년 중장기 R&D 재정지출 계획의 문제점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⁴⁾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가 2023년 9월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분야 재정지출은 2023년 31.1조원에서 2027년 31.6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0.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R&D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R&D 투자	31.1	25.9	27.6	29.5	31.6	
계획	(4.4)	(Δ16.6)	(6.6)	(6.9)	(7.1)	(0.4)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안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202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재정지출 계획은 최근 4년간 발표된 계획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12대 분야 중 R&D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 또는 부문별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올해 초 발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의 목표와의 정합성도 부족하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7년까지의 R&D 분야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R&D 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최근 4년간 R&D 분야의 재정지출 계획 및 방

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향성과 일관되지 않고, 세부 분야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R&D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먼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에 제출된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연평균 10.8%씩 공격적으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연평균 7.2%, 2021년에는 연평균 6.6%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또한 2022년에는 2026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을 3.8%로 설정하여 이전 3년에 비해 R&D 예산이 완만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R&D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2019~2023	20.5 (4.4)	24.1 (17.3)	26.7 (10.7)	28.7 (7.7)	30.9 (7.6)					(10.8)
2020~2024		24.2 (18.0)	27.2 (12.3)	29.1 (6.9)	30.7 (5.4)	32.0 (4.3)				(7.2)
2021~2025			27.4 (13.2)	29.8 (8.8)	32.3 (8.5)	34.0 (5.2)	35.4 (4.0)			(6.6)
2022~2026				29.8 (8.8)	30.7 (3.0)	32.0 (4.2)	33.2 (3.8)	34.6 (4.2)		(3.8)
2023~2027					31.1 (4.4)	25.9 (Δ16.6)	27.6 (6.6)	29.5 (6.9)	31.6 (7.1)	(0.4)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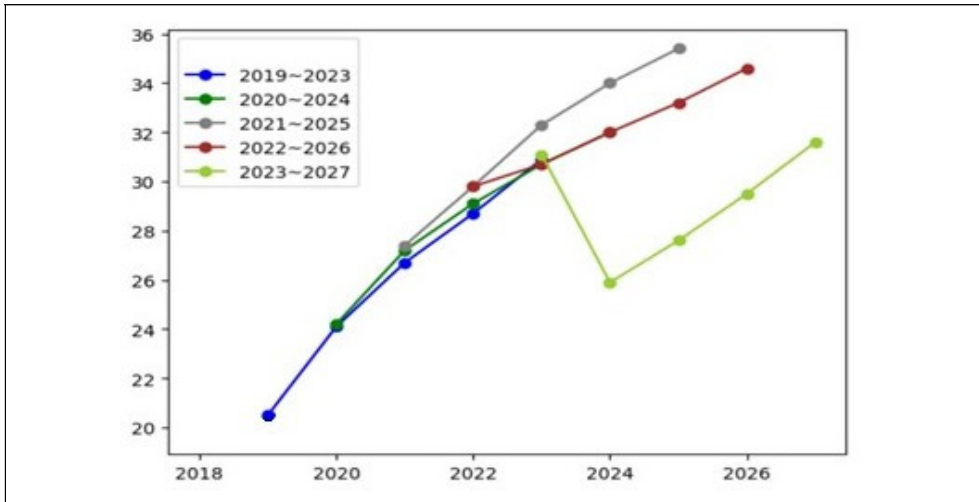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4년 R&D 예산안이 전년대비 16.6% 감액 편성됨에 따라 지난 5년간 발표했던 R&D 분야 재정지출 계획과 일관되지 않은 모습과 방향으로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2024년 R&D 예산안 25.9조원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투자 계획(34.0조원) 보다 8.1조원 낮고, 직전연도 계획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투자 계획(32.0조원) 보다 6.1조원 낮은 상황이다.

[2019~2023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R&D 분야 지출 계획 변화]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다음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투자계획에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 사회복지보존환경, SOC, 기타 분야에 대한 향후 5년간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해 왔다. 그러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 중 R&D 분야는 유일하게 세부 분야 또는 부문별 재정투입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결국 2025~2027년 R&D 분야는 전체 규모만 설정되어 있을 뿐, 세부 분야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마지막으로, 202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그간의 투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었다.

2023~2027년 정부 R&D 투자 목표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R&D 투자 규모 지속 확대
 -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과 그간의 투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국정과제 74-2)
- ⇒ 정부 R&D 5년간 170조원 투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p.10

국회는 2020년 6월 「과학기술기초법」 제7조의2⁵⁾를 신설하여,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R&D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단위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근거는 그동안 R&D 재원이 현안 대응 및 단년도 중심으로 투입되어,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에 한계가 있고, 예산 투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되었다.⁶⁾

그러나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R&D 분야 재정지출을 5년간 총 145.7조원 규모로 계획하여, 불과 6개월 사이에 향후 5년간 R&D 분야 재정지출 총규모를 24.8조원 줄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5) 「과학기술기초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6)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p.21

[2023~2027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출계획 간 차이]

(단위: 조원)

구 분	발표 시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R&D 중장기 투자전략(A)	2023.3.	31.1	32.0	33.6	35.7	38.1	170.5
국가재정운용계획(B)	2023.9.	31.1	25.9	27.6	29.5	31.6	145.7
차액(B-A)	-	-	△6.1	△6.0	△6.2	△6.5	△24.8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2.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간 정책 조율 및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국가재정법」제7조제3항제1호⁷⁾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3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투자계획에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변동사항과 변동요인,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변동되었는지와 그 이유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존의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전략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2023~202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재정지출 계획은 최근 수립된 계획들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12대 분야 중 R&D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7)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

분야 또는 부문별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초 발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의 목표와의 정합성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7년까지의 R&D 분야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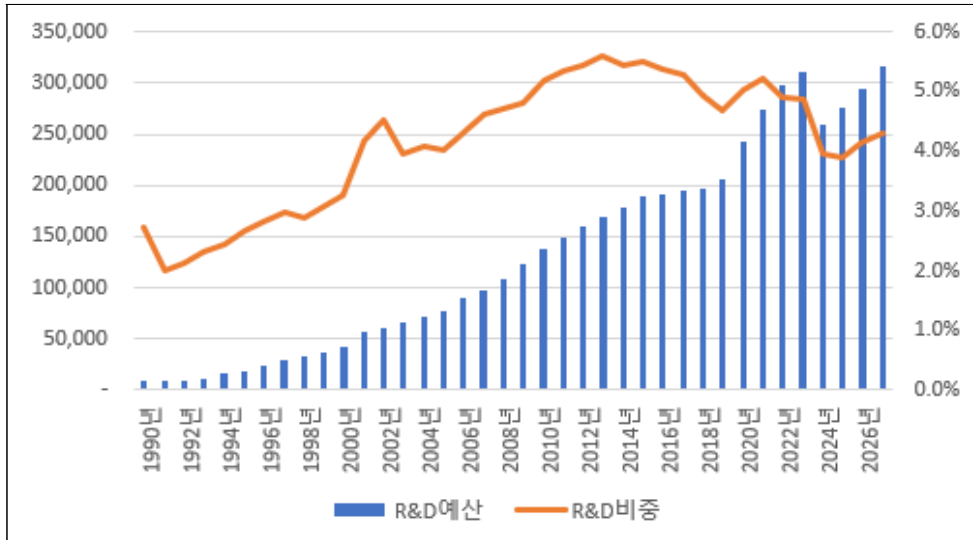
(2) 2024년 R&D 예산안 감소의 적절성 검토 필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정부R&D 투자의 양적 측면에서의 지속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성과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R&D 전체사업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추진하여 뿌려주거나 나눠먹기식 예산, 성과미흡 및 관행적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정부 R&D 재원을 꼭 필요한 투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6.6% 감액된 25.9조원으로 편성하였다.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단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R&D 분야 예산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수준에서 머물렀으나, 2019년을 거쳐 2020~2023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및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4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2025~2027년까지의 R&D 분야 재정지출 계획은 2021~2023년과 유사한 규모와 추이로 설정되었다.

[1990~2027년 R&D 분야 예산(안) 및 정부총지출 중 R&D 분야 비중 추이]



주: 2024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2025~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R&D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처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기술수요를 제기하거나, 과제를 기획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제를 착수하게 되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갖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급격하게 R&D 예산이 감소할 경우, 기존에 수행하던 과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했던 과제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연구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R&D 예산과 자체 R&D 재원을 활용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관련된 인력 채용 및 설비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을 수 있고, 향후 정부 R&D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급격한 정부 R&D 예산 감소에 따라 취소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R&D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3대 과학학술지⁸⁾인 사이언스(Science)와 네이처(Nature)는 학술지

8) 세계 3대 과학기술지인 셀(Cell)은 사이언스(Science)나 네이처(Nature)와 달리 학술지 내에서 별도로 기사를 보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내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라 과학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각각 보도한 바 있다.⁹⁾¹⁰⁾

물론 2020~2023년 사이 정부 R&D 예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연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R&D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정부의 R&D 분야 예산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장기 투자전략,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제출 및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차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 등 일련의 사전준비 과정을 거친 후 ①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과 ② 정부 예산안 편성의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 제127조제3항¹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¹²⁾ 및 제5조제1항¹³⁾에 따라 설치·구성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배분·조정(안)을 확정한다.

다음으로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D사업의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로 제

9) 사이언스(Science), 'South Korea, a science spending champion, proposes cutbacks', 2023.9.19.

10) 네이처(Nature), 'South Korean scientists' outcry over planned R&D budget cuts', 2023.10.5.

11) 「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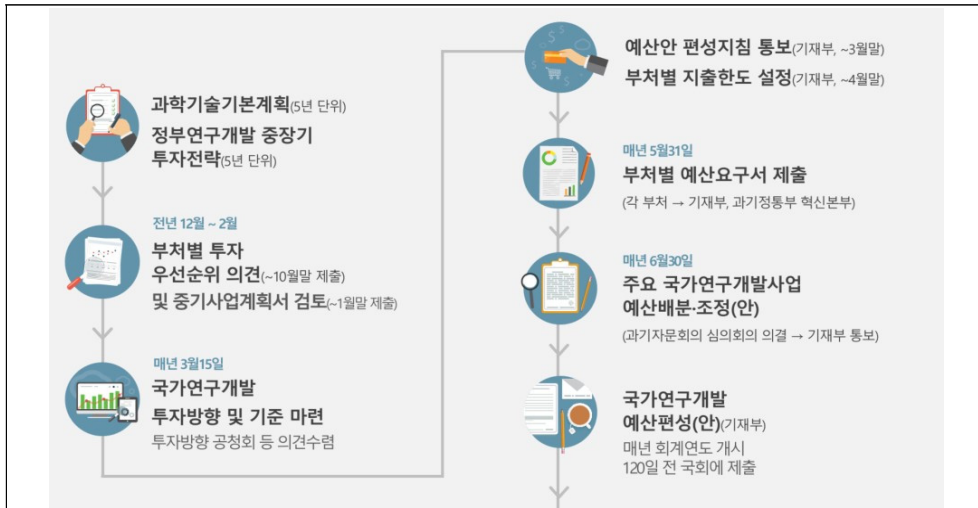
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5조(회의)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출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R&D 예산과 다른 전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여 최종 정부안을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R&D 예산 편성 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심의·의결된 2024년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¹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연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주요 R&D 사업에 대한 배분·조정(안)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일정을 살펴보면, 2014~2022년은 모두 정해진 법정 기한일이나 그 이전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하였다.

1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정 기한일인 6월 30일보다 약 2개월이 지연된 8월 22일에 차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

또한, 심의회의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¹⁵⁾ 개최 일자를 보더라도 2014~2022년까지는 심의회의 개최일로부터 3~7일 전에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23년에는 6월 26일에 1차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다시 심의회의 하루 전인 8월 21일에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10년간 주요R&D 배분·조정(안) 관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개최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률상 기한일	7.30.	7.15.	6.30.							
심의회의 개최일자	7.30.	7.10.	6.30.	6.29.	6.29.	6.28.	6.26.	6.24.	6.28.	8.22.
운영위 사전검토 일자	7.23.	7.7.	6.27.	6.26.	6.25.	6.25.	6.23.	6.21.	6.23.	6.26. 8.21.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운영위원회 개최 후 28일 심의회의를 열어 ‘2024년도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회의를 앞두고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향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심의회의는 취소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배분·조정(안)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2024년도 주요R&D 사업의 예산·배분 조정(안)」을 확정하였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심의회의에 올릴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위원회 위원장 10인과 관련부처 1급 상당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물론 건전재정 기조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예산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제출된 안건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¹⁶⁾

따라서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법률에서는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기 재정운용 및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의 통보 일자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차년도 R&D 분야 예산요구서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 재정운용 및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6월말~7월초에 개최되다 보니 6월말까지 제출되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는 그 내용과 방향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5년간 자문회의 심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수정한 주요R&D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1조 429억원이 조정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R&D 예산 심의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20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¹⁷⁾으로 채택된 바 있다.

16)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한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검토 시에도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의견, 부처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회의 등 법 상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기획재정부는 국가 R&D사업 예산안 편성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다.’의 내용으로 채택되었다.

[2019~2023년 자문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수정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자문회의 결과 (A)	기획재정부 편성 결과(B)	증감 (B-A)	증감률 (B-A)/A
2019년 예산안	157,811	163,522	5,711	3.6
2020년 예산안	164,537	196,047	26,591	19.2
2021년 예산안	216,492	223,172	6,679	3.1
2022년 예산안	231,757	242,937	11,180	4.8
2023년 예산안	246,601	248,587	1,986	0.5
(평균)	-	-	(10,429)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결과」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도 6월 28일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내용에 따라 기존에 마련하였던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최종안이 8월 22일에 의결되었다.

특히, 2023년 기준 주요R&D 예산이 전체 31.1조원 중 25조원으로 약 80.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일(5월 31일) 이후 배분·조정(안)의 기재부 제출일(6월 30일)까지의 시간은 1개월로, 차년도 R&D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전략적 자원 배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재정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R&D 배분·조정안이 법적기한을 약 2개월 넘긴 8월말에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및 기획재정부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비R&D 전환의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정비 후 추진 필요 등

2024년 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각 부처의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재분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R&D에서 비R&D로 전환한 사업 목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R&D에서 비R&D로 전환된 사업은 1.8조원 규모'라는 정부 발표와 교육부 제출자료, 각 부처의 정책연구개발 사업 등을 종합해본 결과 총 41개 사업이 비R&D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41개 사업의 2023년 예산 중 R&D 통계로 분류되는 예산은 1조 6,022억원이며, 2024년 예산안에는 1조 8,811억원이 편성되었다.

[R&D→비R&D 전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조정계수	2023예산	2024예산안
고용노동부	정책연구개발	1.0	813	415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1.0	363	3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정책연구개발	1.0	983	668
	정책연구사업	1.0	942	538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0.5	264,345	262,342
	고전문헌 국역 지원	1.0	3,186	0
	대학혁신지원	0.5	550,492	502,304
	마이스터대지원	0.25	3,028	3,778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	0.5	278,624	221,883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0.25	26,050	3,550
	전문대학 혁신 지원	0.25	155,500	154,475
	정책연구개발사업	1.0	1,110	99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0.5	177,000	601,250
	학교기업지원사업	0.5	3,336	3,336
	학술단체지원	1.0	6,745	0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1.0	26,829	26,309
	한국고전번역원출연	1.0	23,369	24,646
	한국학진흥	1.0	22,619	21,796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1.0	37,581	36,200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조정계수	2023예산	2024예산안
국방부	정책연구활동	1.0	751	376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	1.0	2,515	3,515
기상청	기상정책연구사업	1.0	553	358
기획재정부	정책연구개발	1.0	1,525	1,52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개발사업	1.0	2,352	2,117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개발	1.0	1,795	1,616
법무부	정책연구개발사업	1.0	40	0
법제처	법제정책연구개발	1.0	74	68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개발	1.0	705	56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연구	1.0	1,199	60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정책연구	1.0	836	568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기반연구	1.0	721	533
여성가족부	정책연구개발사업	1.0	258	132
외교부	정책연구개발	1.0	445	356
인사혁신처	정책연구개발	1.0	596	337
질병관리청	정책연구개발	1.0	404	240
통일부	정책연구개발	1.0	371	271
해양경찰청	정책연구개발	1.0	342	423
해양수산부	정책연구개발사업	1.0	930	837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개발	1.0	1,152	92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정책연구비	1.0	394	197
환경부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1.0	1,416	708
합계(41개 사업)			1,602,289	1,881,099

주: 2023년 예산 및 2024년 예산안은 해당 사업 예산(안)에 R&D조정계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고등교육분야 R&D 사업 등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 분류하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OECD 기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 및 지침 재정비 후 재분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18)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OECD 기준을 준용하여 각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R&D 통계 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비R&D 사업으로 재분류한 41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일반재정사업으로 분류할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41개 재분류 사업은 크게 ①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②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③ 정책연구사업으로 구분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19)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국제기구 등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사업,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 사업 등에 대해서는 R&D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규정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 호에는 ①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②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③ 정책연구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 구체적으로 예고 및 공고(제9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0조) 및 협약(제11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제1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14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들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①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은 연구목적이 명확한 경우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계수를 적용하여 R&D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기준 역시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은 연구목적의 모든 지원금을 포함하고, 혼합된 경우 연구개발부분을 분리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도 OECD 기준은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정책연구는 포함하고, 정책의 분석·평가·정책위원회의 활동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적용기준은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의 정책연구는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우수대학원 중점 육성사업, 대학원 중심 및 우수 지방대 지원 등)	- 포함 연구목적의 모든 지원금은 포함되 고 혼합된 경우 연구개발부분은 분 리 포함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포함) - 제외 단순 실험실습 등 순수 교육목적 지원	- 포함 연구목적이 명확한 대학연구시설, 대학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지원 등은 전액 포함 - 분리포함 혼합된 예산인 우수대학원 중점사 업 등은 전체 사업비에 대학의 연 구시간계수인 0.4를 적용
정책연구 (각부처 정책연구비)	- 포함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정책연구 - 제외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위원회 등의 활동	포함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 의 정책연구는 모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존 R&D사업 중 비

R&D사업으로 재분류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 각 부처 정책연구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41개 사업을 비R&D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및 기준 정비 전까지 해당 사업들을 R&D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5) R&D 조기종료 사업의 문제점

2023년 R&D 사업 중 2024년 예산안 편성 결과 종료되거나 통폐합된 세부사업은 총 267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1조 7,799억 9,600만원이다. 이 중 통폐합된 사업(109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종료된 사업은 총 15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7,287억 5,200만원이다.

대부분의 R&D 사업은 신규로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까지 지원 후 종료되는 158개 사업을 당초 계획에 따라 종료되는 사업과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기종료되는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료 사업 158개 중 당초 계획에 따라 종료되는 사업은 14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16개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기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세계최장경간(200m급)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연구’ 사업은 2024년 연구내용에 포함된 실증지역의 건설 지연으로 사업 목표를 변경하여 종료하게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은 후속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일찍 폐지되었다.

그 외에 13개 사업은 R&D정책방향 및 환경 변화, 재정여건 등에 따른 지출효율화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조기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조기종료 R&D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	세부사업	종료사유	2023 예산	사업기간	
				당초계획	변경
국토 교통부	세계최장경간(200m급)경전 철고가구조물실증연구	실증지 건설지연	5,735	2021~ 2024	2021~ 2023
소방청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 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	R&D 정책 방향 및 재정여건	1,978	2022~ 2025	2022~ 202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	환경변화	969	2013~ 계속	2013~ 2023
	전파연구	효율화	890	1999~ 계속	1999~ 2023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환경변화	1,370	2014~ 계속	2014~ 2023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	코로나19 종료	1,380	2022~ 계속	2022~ 2023
산림청	산림기반 사회문제해결 실 증기술개발	효율화	5,200	2022~ 2026	2022~ 2023
	산림과학기술실용화지원	효율화	4,312	2020~ 2024	2020~ 2023
교육부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 반구축	효율화	2,725	2012~ 계속	2012~ 2023
산업통상 자원부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을 위한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	효율화	4,766	2021~ 2025	2021~ 2023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후속사업 예타통과	6,500	2019~ 2024	2019~ 202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후속사업 예타통과	2,000	2019~ 2024	2019~ 2023
중소벤처 기업부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효율화	9,000	2023~ 2025	2023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효율화	2,525	2015~ 계속	2015~ 2023
	융복합기술교류촉진	효율화	3,710	2015~ 계속	2015~ 2023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효율화	3,920	2017~ 계속	2017~ 2023
합 계			56,98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첫째, 일부 사업은 착수 후 1~2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D 사업의 기획이 미비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신규 R&D 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사업**²¹⁾은 중소기업에 장비활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바우처 지원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에 신규로 착수된 사업이다.

연구장비활용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을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 연간 90억원씩 총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의2²²⁾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사업이 2019년부터 연구기반활용 사업(2019~2020년),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사업(2021~2022년)의 형태로 지원되어 왔고, 2023년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착수 1년만에 동 사업이 폐지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필요성이나 지원방식, 사업 기획 등이 미흡하였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13~219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의2(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온라인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 사업**²³⁾은 과학기술 전문성과 연계하여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 실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확산을 통해 초·중·등 수학·과학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2년에 착수되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라 수학과 과학에 관한 가상 실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콘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가상실험 콘텐츠 개발 및 SW실행환경 구축 등에 14억원이 투입되었고, 2023년에는 추가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13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 2년 동안 총 27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22~2023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2결산	23예산	합계
콘텐츠 개발	가상실험 콘텐츠 개발	600	600	1,200
기반기술 개발 등	기반기술 개발 및 시범서비스 운영	410	400	810
실행환경 구축	SW 실행환경 구축	390	380	770
합계		1,400	1,380	2,7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동 사업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 구축된 플랫폼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향후 플랫폼의 관리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한, R&D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착수 2년만에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정부의 R&D 사업 기획 및 예산안 편성의 전략성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이 착수 1~2년 만에 사업을 조기 종료시키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R&D 사업 기획 및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1~74

둘째, 일부 조기종료 사업은 법정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내용이거나, 국립연구기관의 기본 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통계조사 및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사업**²⁴⁾은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분석,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 예산은 22억 2,500만원이다.

동 사업 지원내용 중 ‘중소기업 기술통계’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²⁵⁾에 따라 2003년부터 격년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법정조사이자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이다.

그러나 2024년 동 사업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기존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산 지원 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연구 사업**²⁶⁾은 ICT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기준 제·개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우주전파환경 국제 컨퍼런스, ITU 등 국제기구

2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13~219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1~74

표준화 대응 등의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고유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립전파연구원에 필요한 시험연구비(210-13) 및 일반연구비(260-01)와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220-02) 등을 연간 7~8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에는 유·무선 및 전자파 방송통신 분야 및 재난·안전 및 방송통신 분야 등의 기술기준 제·개정을 연구하고 있다.

전파연구 사업은 「전파법」 제61조²⁷⁾에 따라 전파이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 분야로, 2024년 동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전파연구 및 기술기준 제·개정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전파법」

제61조(전파연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차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7.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8. 지자기 및 전리층의 관측
 9. 태양 흑점의 관측
 10. 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6) 계속사업의 예산 감액 과다에 따른 문제점

2023년 R&D 사업(1,486개)의 54.7%인 813개 세부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다.

감액 비중별 세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813개 감액 사업의 46.0%인 374개는 30% 미만 수준으로 감액되었고, 121개(14.9%)는 30% 이상 50% 미만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나,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18개로 전체의 39.1%를 차지하였다.

[2024년 R&D 분야 감액 사업의 감액 비중별 사업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30% 미만	30%~ 50% 미만	50%~ 70%미만	70%~ 80%미만	80%~ 90%미만	90%~ 100%미만	합계
사업 수	374	121	102	59	123	34	813
비중	46.0	14.9	12.5	7.3	15.1	4.2	100.0

자료: 디지털국가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50% 이상 감액된 318개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3조 7,736억 5,400만원) 대비 2조 7,984억 6,400만원 감액된 9,75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사업 수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86개 사업으로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개 사업, 기획재정부 31개 사업, 해양수산부 22개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50% 이상 감액 사업의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7,473억 5,600만원)이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5,363억 2,700만원), 방위사업청(△5,068억 2,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4,698억 7,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R&D 사업 중 50% 이상 감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감액 사업 수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통상자원부	86	1,034,976	287,620	△747,356	△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	620,636	150,761	△469,875	△75.7
기획재정부	31	240,609	50,837	△189,772	△78.9
해양수산부	22	142,533	44,052	△98,481	△69.1
중소벤처기업부	21	742,920	206,593	△536,327	△72.2
국토교통부	19	75,859	18,969	△56,890	△75.0
농촌진흥청	12	88,237	21,486	△66,751	△75.6
방위사업청	8	636,694	129,865	△506,829	△79.6
환경부	7	58,600	24,033	△34,567	△59.0
문화체육관광부	5	27,722	6,650	△21,072	△76.0
보건복지부	5	38,222	14,714	△23,508	△61.5
기상청	4	9,803	2,054	△7,749	△79.0
경찰청	2	4,860	1,634	△3,226	△66.4
교육부	2	10,321	2,458	△7,863	△76.2
농림축산식품부	2	16,007	5,825	△10,182	△63.6
산림청	2	16,250	4,829	△11,421	△70.3
소방청	2	5,325	1,070	△4,255	△79.9
대통령경호처	1	1,000	500	△500	△50.0
해양경찰청	1	2,080	1,040	△1,040	△50.0
행정안전부	1	1,000	200	△800	△80.0
합계	318	3,773,654	975,190	△2,798,464	△74.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0% 이상 감액 사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 가시적 성과 미흡에 따른 감액 사업이 13개, ② 평가 결과 반영 감액 4개, ③ 소재·부품·장비 및 감염병 등 단기 급증 사업 4개, ④ 당초 계획에 따른 자연감소 37개로 나타났고, 그 외에 260개 사업은 ⑤ 기타 정책여건 변화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50% 이상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0% 이상 감액 사업의 사유별 구분]

(단위: 개, %)

구분	가시적 성과 미흡	평가결과 반영	단기 급증 사업	당초 계획에 따른 자연감소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합계
사업 수	13	4	4	37	260	318
비중	4.1	1.3	1.3	11.6	81.7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액된 34개 사업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4개 사업 중 당초 계획에 따라 자연감소 되는 사업은 7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7개는 당초 계획과 무관하게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사업 중 당초 계획과 무관하게 90% 이상 감액된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R&D혁신바우처지원	40,209	1,920	△38,289	△95.2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13,000	744	△12,256	△94.3
	국민공감·국민참여R&SD선도사업	4,400	160	△4,240	△96.4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실증단지조성	8,900	864	△8,036	△90.3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 육성	5,800	400	△5,400	△93.1
	연구장비산업육성	6,461	633	△5,828	△90.2
	연구재료개발·확산 지원	4,400	296	△4,104	△93.3
	초전도도체시험설비구축	4,000	300	△3,700	△92.5
교육부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1,000	60	△940	△94.0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획재정부	수소버스안전성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4,801	99	△4,702	△97.9
	제조업활력제고를위한 산업기계에너지저감형 재제조기술개발	3,000	256	△2,744	△91.5
농촌진흥청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 생산안전화기반기술개발	6,485	148	△6,337	△97.7
방위사업청	2개 사업	359,582	1,526	△358,056	△99.6
산업통상 자원부	DX한결음프로젝트	8,375	455	△7,920	△94.6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	4,212	179	△4,033	△95.8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4,862	352	△4,510	△92.8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26,428	1,983	△24,445	△92.5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5,476	243	△5,233	△95.6
	산업일자리고도화기술개발사업	10,092	400	△9,692	△96.0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2,273	136	△2,137	△94.0
	전략제품창출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21,450	1,823	△19,627	△91.5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R&D역량제고	14,283	1,000	△13,283	△93.0
	창업성장기술개발(소방청)	13,869	793	△13,076	△94.3
해양수산부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4,877	435	△4,442	△91.1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	6,274	331	△5,943	△94.7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	6,631	520	△6,111	△92.2
합 계(27개)		608,359	16,832	△591,527	△97.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1. 기존 투자 성과 매몰 및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우려

첫째,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되거나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²⁸⁾은 ICT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혁신바우처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2억 8,900만원(△95.2%) 감소한 1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0년에 착수되었으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224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 중 국고 지원규모는 2,320억원으로 산정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동 사업에 투입된 국고는 총 1,621억 100만원이며,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동 사업의 2024년 투입 계획액은 448억 3,6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안이 19억 2,000만원으로 크게 감액됨에 따라 동 사업의 2020~2024년 국고 지원액은 총 1,640억 2,100만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320억원) 대비 70.7%의 예산만 지원되게 되었다.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실제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계획 (국고)	연도별 국고 지원액					
		2020	2021	2022	2023	2024(안)	합계
지원규모	232,000	12,854	54,726	54,312	40,209	1,920	164,02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은 바우처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성공률과 사업화매출액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화성공률을 2022년 55.8%에서 2024년 67.5%로 높이고, 국고 지원액 10억원당 기업 누적 매출액을 2022년 4.05억원에서 2024년 4.91억원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5~84

그러나 2024년 지원규모 감소에 따라 과제별 지원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당초 수행하려던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²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초화학, 기계금속 등 5개 분야에서 국내 소재산업의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2020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4,7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한 규모인 1,842억 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었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의 당초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184,204	184,204	184,204	16,47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및 당초 투자계획 대비 674억 8,200만원이 감액된 1,18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2개 계속과제에 대한 과제별 지원 예산은 2023년 평균 35억 1,700만원에서 2024년 22억 8,7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도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사업명	구분	2023			2024		
		계속과제	신규과제	합계	계속과제	신규과제	합계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금액	186,400	0	186,400	118,918	0	118,918
	과제수	53	0	53	52	0	52
	과제별 지원금	3,517	0	3,517	2,287	0	2,28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60~66

對 일본 핵심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623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5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화 등을 위해 완성도 높은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감액되어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R&D 예산 감액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사업**³⁰⁾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과 연계하여 “R&D→고도화→보급→확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2023~2025년간 추진되어, 일반형 과제 1개당 3개 이상 소상공인업체에 보급, 선도형 과제 1개당 10개 이상 소상공인업체에 보급할 예정이었다.³¹⁾

그런데 2024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형 과제는 종료과제로 6개월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개월분만 지원하고, 선도형 과제는 계속과제(2년)로 10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분만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3년 8월 과제신청을 받고, 10월 중 R&D 수행기업(주관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제 협약 시 2024년 예산 감액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지원단가를 낮춰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실증규모·범위 등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도형 R&D의 경우에는 성능지표를 조정하여 지원기간 등을 축소할 예정으로, 이와 같은 사업 계획 변경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05~212

31) ○(일반형 R&D) 소상공인 대상 단기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실증, 보급 등 지원

* 1단계 일반형 R&D기획과제 수행 기업에 한하여 별도 선정평가 진행 후 선발

○(선도형 R&D) 소상공인 상권 및 업종 단위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파급력 높은 기술개발 및 실증, 보급 등 지원

[2024년도 사업계획 변경]

- 일반형 R&D : (당초) 1년, 3억원 → (변경) 7개월, 1.77억원
- 선도형 R&D : (당초) 2년, 20억원 → (변경) 8개월, 6.5억원
 - * 일반형 R&D는 기획단계(7~8월)에서 개발목표 및 방법, 투입인력,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R&D 수행기간 단축 가능
 - * 선도형 R&D는 소상공인에 적용할 기술임을 감안하여 기술 성능지표 조정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일부 사업은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그간의 예산 지원을 통해 개발·구축된 장비나 연구 인프라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해양수산부의 **항만 하역장비 자동화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³²⁾은 운행제어 기능을 갖춘 항만 하역장비 자동화 기술과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9,100만원(△51.6%) 감소한 30억 8,900만원³³⁾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 사업은 타이어형 자동화 항만크레인(ARTGC, Automated Rubber Tyred Gantry Crane)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2년 신규로 착수하였다. 동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44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과제 선정 공고문에 따르면 3년차인 2024년에는 38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3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9~134

33) 2024년도 항만 하역장비 자동화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 (‘23) 3,846백만원 → (‘24요구) 848백만원
-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무인트랙)개발: (‘23) 2,475백만원 → (‘24요구) 2,241백만원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 사업의 당초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합계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	3,846	4,800	3,840	1,914	14,40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이 중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안전모듈 개발’ 과제 등을 통해 ‘항만 크레인 국산화 핵심부품 6종 개발’, ‘Full 자동화 크레인 개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에 8억 4,8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기 개발·구축 중이던 장비나 시스템 등을 완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일부 기개발한 장비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는 등 매몰비용이 우려되고, 당초목표인 자동화 기술 개발 목표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³⁴⁾은 미래 핵심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진대회(챌린지) 기반의 경쟁형 R&D를 추진하고, 우수팀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R&D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억원 감액된 14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 환경구축과 챌린지 후속연구 지원의 두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에는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 환경구축에 전년 대비 95% 감액된 2억원, 챌린지 후속연구 지원에 전년대비 80% 감액된 12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3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5~84

[2024년도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3,000	10,000	1,400	△8,600	△86.0
인공지능챌린지대회 환경구축	3,000	4,000	200	△3,800	△95.0
챌린지 후속연구 지원	-	6,000	1,200	△4,800	△8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원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분야 공개경진대회(챌린지) 개최에 필요한 GPU 서버, 초고속 스토리지, 광대역 네트워크 및 이더넷 네트워크 장비 등 컴퓨팅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에 신규대회 주제를 발굴하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감액에 따라 14억원 중 2023년 선정된 챌린지 후속연구에 12억원을 지원하고, 2억원은 인프라 운영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2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컴퓨팅 자원 등 챌린지 대회 환경을 구축하였으나, 2024년 예산 감액에 따라 신규 챌린지 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고, 구축된 인프라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팅 자원이나 인프라의 경우 신규 구축 이후 내용연수가 평균적으로 5년 가량을 고려할 때, 대회 개최 예산 미지원으로 기 구축 장비의 활용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2. 기존 계속과제 감액 및 단기 수요 과제 증액의 적절성 검토 필요

2024년도 예산안 감액 사업 중 일부 사업은 타당성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내역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단기간에 기획된 과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급성 및 활용가능성이 낮은 신규과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³⁵⁾은 자동차 분야 기술개발과 핵심

부품 개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18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8억 1,700만원 증액된 3,4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18개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2021~2027년)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0억원 감소한 372억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도에는 신규과제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전체 예산 규모와 신규과제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스마트카 및 그린카 내역사업은 2023년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2개월의 짧은 기간에 지원대상 과제의 상세기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의 100억원 이상 주요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타 여부	2023			2024		
		계속과제	신규과제	합계	계속과제	신규과제	합계
그린카	×	81,820	5,000	86,820	71,242	48,808	132,050
스마트카	×	34,683	2,000	39,683	43,167	37,244	80,411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40,817	6,100	46,917	37,174	0	37,17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기 수요에 대응한 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과제 지원은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기 수요에 근거한 기술개발 과제 중심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갖춘 과제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은 단기 수요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준비된 과제 간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통해 기술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2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산업고도화 기술개발 사업**³⁶⁾은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신산업을 융합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R&D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5,000만원(△61.3%) 감소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블록체인 산업융합형 혁신 기술개발’ 내역사업과 ‘웹3 선도형 블록체인 기술개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블록체인 산업융합형 혁신 기술개발 내역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원(△80.0%) 감소한 8억원이 편성된 반면, 웹3 선도형 블록체인 기술개발 내역은 2024년에 신규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 블록체인산업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024예산안
블록체인 산업융합형 혁신기술개발	4개×200=800	800
웹3 선도형 블록체인 기술개발	1개×750=750	750
합계		1,5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산업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에 4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 중 3개 과제는 2024년 각각 10억원씩 지원하고, 1개 과제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1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4개 계속과제 지원단가는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웹3 선도형 블록체인 기술개발’ 내역사업을 통해 1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 웹3 선도형 블록체인 산업융합형 혁신 기술개발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2024예산안
신규과제	웹3 기반 익명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여론조사 기술 개발	7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5~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내역사업을 통해 ‘웹3 기반 익명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여론조사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과제가 계속과제의 연구비를 80% 감액하면서 신규로 추진해야 할 시급성 및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동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의 수요기업인 여론조사기관은 2023년 9월 현재 약 90여개³⁷⁾에 불과하여, 개발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산업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은 계속과제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20% 수준으로 축소하여 편성하면서, 시급성 및 활용가능성이 낮은 신규과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 목표했던 계속과제의 성과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3. 2024년 예산 축소가 2025년 이후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일부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안이 축소됨에 따라 당초 2024년에 지급되어야 할 연구비를 2025년 이후로 순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2024년 예산안의 축소가 2025년 이후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³⁸⁾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공공분야 팹을 활용한 설계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CMOS³⁹⁾ 공정 장비를 고도화하며 팹 간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 R&D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120억원) 대비 60억원 감액된 6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예산 (A)	2024예산안 (B)	증감 (B-A)
팹 인프라 고도화	7,800	1,500	△6,300
학부·대학원생 반도체 설계검증 서비스 제공	4,200	4,500	300
합계	12,000	6,000	△6,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7) 2023년 9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업체 기준

3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5~84

39)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금속 산화막 반도체

동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3억원을 투입하여 이온주입장비 등 13종의 반도체설계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착수 1년만에 예산안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됨에 따라 장비 구축 완료 시점을 2027년으로 순연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고, 2026년~2027년에는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사업의 장비구축 계획 변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당초계획(A)	78	115	110	0	0	303
변경계획(B)	78	15	135	38.5	36.5	303
B-A	0	△100	25	38.5	36.5	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2024년 예산안의 과도한 삭감은 2025년 이후 R&D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장래의 재정 부담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재원의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4.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분야 및 인건비 확보 불가능한 수준의 예산안 감액 부적절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대폭 감액함에 따라 관련 R&D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기존 계속과제의 인건비 확보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해양수산부의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 사업**⁴⁰⁾은 육상 기인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유입과 해양 기인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기제 분석, 미세 플라스틱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및 차세대 친환경 부표 개발·실증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4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9~134

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5억 8,600만원(△87.7%) 감소한 1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해역별 오염 평가 및 국내 서식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기준 수립은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4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연구의 지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재질의 부표를 개발할 것’을 시정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동일한 시정요구 내용으로 심의 중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부표 연구개발 관련 시정요구사항]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2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재질의 부표를 개발하거나 부표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양식 기법을 개발하는 등 부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⁴¹⁾은 정부와 민간이 ICT 기술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R&D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억원 감소한 4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3년 29개 계속과제에 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2년 6개월⁴²⁾ 동안 과제당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이 지원되며, 기술·사업화 멘토링, 판로개척, 투자연계 등 민간의 창업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되어 왔다. 2024년 예산안은 10개 계속과제에 대해 잔여 협약기간인 1년간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4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5~84

42) 과제별 협약기간은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년, 3차년도 1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동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안에는 계속과제의 연구비 지원단가가 당초 계획인 2억원에서 80% 감액된 4,000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해당 과제에서 지출되던 인건비(2022년 평균 1억 8,600만원)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과제 수행 자체가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2022년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 총연구비 중 인건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연구비			인건비			인건비 비중(B/A)
	정부	민간	합계(A)	현금	현물	합계(B)	
총규모	8,000	2,117	10,117	6,573	1,809	8,382	82.9
과제평균 (45개)	177	47	225	146	40	186	8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또한,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 2024년 연구비로는 인건비 확보 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고용된 인력의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수준의 R&D 예산안 감액의 적절성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3년	2024년(안)
산출내역	• (계속) 29개 × 200백만원 × 12/12개월 = 5,800백만원	• (계속) 10개 × 40백만원 × 12/12개월 = 4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자체역량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7) 신규 R&D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2024년 R&D 세부사업 총 1,364개 중 신규사업은 186개이다. 이 중 사업 분리 등 구조개편을 통해 신설된 사업(76개)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110개이며, 2024년 예산안은 4,69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부처별 신규 R&D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46억 3,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978억 6,200만원, 보건복지부 950억 7,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71억 4,700만원 등의 순으로 신규 R&D 사업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부처별 R&D 신규 세부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규 R&D 사업		주요사업
	세부사업 수	2024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184,632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108억원), 차세대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150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19	97,862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140억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108억원) 등
보건복지부	11	95,07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495억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171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4	17,147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대응(85억원) 등
국토교통부	5	14,640	협력거점형국토교통국제협력연구개발(43억원) 등
해양수산부	6	11,677	대체해조육묘수산배양육기술개발(34억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3	11,470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55억원) 등
방위사업청	7	9,313	정찰용무인수상정(53억원),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14억원) 등
산림청	3	7,475	산림산업현장맞춤형인재양성(35억원) 등
행정안전부	4	6,540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16억원) 등
소방청	2	5,942	전기기반모빌리티관련시설및부품화재대응 기술개발(39억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2	3,931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18억원),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21억원)
기상청	1	2,00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20억원)
문화재청	1	1,514	기후변화대응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개발(15억원) 등
합계	110	469,213	

주: 과목구조개편 등에 따라 기존의 내역사업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된 경우는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 R&D 사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규사업은 9개 916억 2,600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2개, 595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전 시범사업이 1개 100억원이며, 총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98개 3,080억 8,700만원으로 추진된다.

[2024년 신규 R&D 사업의 유형별 구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예타 통과사업	예타 면제사업	예타 전 시범사업	예타 미만 소규모 사업	합계
신규사업 수	9 (8.2)	2 (1.8)	1 (0.9)	98 (89.1)	110 (100.0)
2024년도 예산안	91,626 (19.5)	59,500 (12.7)	10,000 (2.1)	308,087 (65.7)	469,213 (1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보고서에서는 세부사업 단위의 신규사업 외에 계속사업 중 내역사업 단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안에는 2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59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에 495억원을 편성하였다. 두 사업은 모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이후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신규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사업기간	총사업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10,000	2024~2031	616,10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 정책적 추진 필요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49,500	2024~2033	1,931,400	
합 계		59,500	-	2,547,5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⁴⁴⁾은 민간의 우주 산업 확장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민간 발사장과 우주 환경시험시설, 특 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100억원이 신규로 편 성되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발사체특화지구 구축, 위성특화지구 구축,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구축의 3개 내용으로 구성되며, 사업을 총괄 수행·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단을 설립·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장소	주요내용	2024 예산안
발사체특화지구	전라남도 고흥	① 민간발사장 공사 설계비 2,500 ②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비 1,000	3,500
위성특화지구	경상남도 진주, 사천	①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500 ②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비 1,000	3,500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광역시 유성	①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설계비 600 ② 연구현장 연계형 우주인력 양성 R&D 1,400	2,000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획·관리	-	사업단 운영비 등 1,000	1,000
합계			1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8~113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⁴⁵⁾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장비 등의 규모 또는 사업추진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차별 예산투입 금액도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등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 착수 및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⁴⁶⁾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과제를 추진하여 팬데믹,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4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등 4개 핵심임무에 대해서는 임무당 2개 과제에 40억원씩 6개월분의 예산(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확충’ 1개 임무에 대해서는 8개 과제에 과제당 100억원씩 3개월분(총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보건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Fast Track 지원 예산 50억원, 해외 우수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지원 예산 85억원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135억원 등 총 495억원을 편성하였다.

4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4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125~136

[2024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 5대 임무 중심 R&D 360억원
 - 4개 임무 × 임무당 2개 과제 × 과제당 40억원/년 × 6/12개월 = 160억원
 - 필수외료 8개 과제 × 과제당 100억원/년 × 3/12개월 = 200억원
- 기반조성 135억원
 - 신속지원 1개 과제 × 12개월 = 50억원
 - 국제협력·연구지원 85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사전 과제 기획을 바탕으로 예산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일반 R&D와는 다르게, 2023년 12월까지 연구과제 전 주기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전담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 이하 PM)을 선발한 후, 임무별로 선정 구성된 PM을 주도로 2024년 3월까지 과제에 대한 상세 기획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과제 기획 후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실질적인 R&D 과제 수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는 사업 목적과 의의, 추진전략과 같은 개념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 내역별 및 과제별 예산 규모나 사업 추진방식 등의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이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시범사업 규모로 예산안에 편성한 이후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황이므로, 이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확정하거나 시범사업과 본 사업 간 중복 여부,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개발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를 신설하고, 2024년 예산안에 160억원을 편성하였다.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사업**⁴⁷⁾은 친환경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14개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6월 1일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고, 2023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으로 1,987억원이고, 이 중 정부출연금으로 1,6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과]

구분	주요내용
예타 사업명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예타 신청 및 수행기간	2분기(23.6.1) 신청, 예타 대상선정(23.7.31), 결과 발표(23.11월 예정)
예타사업기간	2024~2028년
총사업비(신청기준)	1,987.3억원(정부출연금 1,628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안 요구 및 편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에 발표 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확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사업⁴⁸⁾과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사업⁴⁹⁾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군집위성의 동시 운용 및 위성-지상망 연결을 위한 지상국 핵심기술을

4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25

48) 코드: 일반회계 2531-340

49) 코드: 일반회계 2531-341

개발하고, 관련 단말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신규 R&D 사업이다.

두 사업에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총 111억 1,500만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7억 7,000만원, 단말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4억 5,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저궤도 위성통신용 지상국 및 단말 핵심 기술개발 사업 현황]

구분	2024년 신규사업		예타 신청 사업
	지상국 핵심 기술개발	단말 핵심기술개발	
주요내용	3GPP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용 지상국(중심국, 관제국) 개발	3GPP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용 단말(모뎀, 안테나) 핵심기술 확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 지상국+단말국+위성
사업기간	2024~2026년	2024~2026년	2025~2030년
총사업비 (국고)	127억 7,000만원	194억 5,200만원	4,797억원
2024년 예산안	4,960백만원	6,155백만원	-
예타 진행 상황	('22하) 예타 신청 → ('23상) 예타 대상 미선정 → ('23.9.) 예타 재신청 → ('23.10.30.) 예타 대상 여부 결정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두 사업의 내용은 2022년 하반기 예타를 신청했다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일부분에 해당하고⁵⁰⁾, 2023년 9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예타를 재신청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검증'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2023년 10월 30일 결정될 예정으로, 대상사업으로 대상사

50)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위성과 유사한 규모의 위성을 수차례 제작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위성 본체의 현황조사와 활용 가능성, 개발비용 저감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위성·지상국·단말국에 대한 활용 및 유지·보수 등 운용계획 내용이 부재하며, 성과활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성과평가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업 선정 시 본조사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지상국 및 단말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본사업 간 중복을 지양하고, 두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민간 자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사업**⁵¹⁾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현안, 경제·산업 이슈와 관련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책임PM을 선정하여 문제 정의-기획-선정-평가-과제 수행의 전 단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5개 프로그램에 10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한계도전R&D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4 예산안
프로그램1	(신규) 2개 × 1,092백만원 × 10/12개월	1,820
프로그램2	(신규) 2개 × 1,092백만원 × 10/12개월	1,820
프로그램3	(신규) 2개 × 1,092백만원 × 10/12개월	1,820
프로그램4	(신규) 2개 × 1,092백만원 × 10/12개월	1,820
프로그램5	(신규) 2개 × 1,092백만원 × 10/12개월	1,820
기획평가관리비	(신규) 1개 × 1,080백만원 × 10/12개월	900
합 계		1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고, 5개 중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책임PM이 선정되어 과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2개 프로그램의 책임PM 선정 및 과제 기획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물량을 3개로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5~9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네트워크 선도연구시험망 구축 운영 사업⁵²⁾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초연결지능형연구개발망(KOREN)을 운영·고도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연구망을 활용하여 실증·시험하는데 소요되는 망 이용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9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4~2027년까지 국고 총 496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차세대네트워크 선도연구시험망 구축 운영 사업의 근거인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5조 제2항⁵³⁾은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에게 무료로 시험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초고성능컴퓨팅을 구축 지원하는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역시 이용기관들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험망 이용 기업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해당 금액 만큼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코드: 일반회계 2033-363

53)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국가지능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국제협력 R&D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R&D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R&D가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2023년 0.5조원 규모의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협력 R&D 사업에 대한 사업 목록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주요 국제협력 R&D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 국제협력 R&D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	6,900	19,600	12,700	184.0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9,725	29,725	순증
	(디지털바이오육성)	-	(15,000)	(15,000)	순증
	(바이오혁신기반조성)	-	(4,725)	(4,725)	순증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	(10,000)	(10,000)	순증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10,117	10,117	순증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7,950	11,750	3,800	47.8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66,500	66,500	순증
	산업기술국제협력	101,052	103,594	2,542	2.5
보건 복지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0,082	15,286	5,204	51.6
	연구중심병원 (한미글로벌혁신성과창출)	-	19,600	19,600	순증
	국가신약개발사업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 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	19,125	19,125	순증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지원, 국립암 센터 연구지원 등 4개 사업	-	60,400	60,400	순증
국토교통부	협력거점형국토교통국제협력 연구개발	-	4,300	4,300	순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현행 법령 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협력 R&D 사업 추진 시 이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추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구성, 개발도상국가 지원, 국내 과학기술자의 외국 파견, 보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과제의 수행 및 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제협력 R&D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제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⁵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54)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2월까지 해외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제협력R&D 추진 관련 법령 및 한계]

구분	법령	내용	한계
해외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근거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정부 연구기관, 국내법에 따른 대학이나 민간기업·기관·단체로 제한	•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과정에 관한 법령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3조(적용범위)	• 국제분담금 납부 등의 사업에 대해서만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허용 ※ 제9조(예고 및 공고)~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제분담금 납부 등의 사업 외에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나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해외 송금 연구비 정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 제13조, 제28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해외기관으로 직접 송금하고, 정산은 해외기관과 맺은 국제계약서 및 계좌이체증명자료 제출로 대체	• 해외 송금 연구개발비가 사용용도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특히, 2024년 예산안에 국제협력 R&D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기관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귀속, 국제협약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 발의)」이 2023년 9월 5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 상 해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협력 R&D 추진 시 공통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 상대국을 특정하거나, 상대국과의 협력 추진 의향서(MOU, LOI⁵⁵⁾ 등) 체결, 구체적인 연구범위 및 기간 등의 합의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국제협력 R&D 사업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협력 R&D 사업의 사전준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업은 양자 혹은 다자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23년 10월 현재 협력 상대국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제협력 R&D 사업 중 협력 상대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협력방식	상대국	2024		
				과제수	편성 기간	예산안
과기 정통부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디지털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양자· 다자 혼합	협의 중	10	6개월	2,430
	(디지털융합기술국제공동연구)		협의 중	2	6개월	500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양자	협의 중	3	6개월	10,000
산업부	에너지인력양성(해외연계)	양자· 다자 혼합	협의 중	16	12개월	10,458
문체부	문화기술연구개발 (글로벌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양자· 다자 혼합	협의 중	4	9개월	3,60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5) LOI(Letter of Intent)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력 상대국이 정해진 내역사업 중 일부 사업은 양해각서(MOU)나 참여의향서 등 구체적인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제협력 R&D 사업 중 상대국과 양해각서·협력의향서 등 협의 진행 중 사례]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상대국	MOU 등 체결 여부	2024		
				과제수	편성 기간	예산안
과기 정통부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	미국, 벨기에, 프랑스	연내 체결 예정	21	6개월	2,520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유럽, 미주, 아시아	연내 체결 예정	5	6개월	10,000
	(바이오혁신기반조성)		협의를 중	2	9개월	4,725
해수부	해양디지털항로실증기술개발	유럽	협의를 중	1	9개월	2,400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 예측기술개발	태평양 도서국	협의를 중	1	9개월	2,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은 상대국의 협력 의향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하는 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은 상대국이 정해진 이후에도 구체적인 연구범위 등을 합의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상대국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연구나 인력교류 등의 협력 활동이 무산되기도 한다.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협력 R&D 사업 중 일부는 상대국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나, 상대국은 특정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 협력의향서 교환 등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국제협력 사업**⁵⁶⁾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

5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8~70

지의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4년에 101억 1,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한-미 및 한-EU 공동연구과제 18개에 5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 추진에 4개 과제 35억원을 지원하며, 한-미 및 한-EU 반도체 협력센터 구축·운영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원천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4 예산안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 (신규) 6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신규) 12개 × 319백만원 × 9/12개월	5,117
반도체 R&D 협력센터	- (신규) 2개 × 500백만원 × 9/12개월	1,500
이차전지 국제공동연구	- (신규) 4개 × 1,200백만원 × 9/12개월	3,500
합계		10,11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9월 현재 미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및 EU 집행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나, 2024년 신규과제 24개를 9개월 동안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 10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과제 착수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부의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⁵⁷⁾은 우수연구집단 육성, 글로벌아젠다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⁵⁸⁾은 학문후속세대,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연구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7)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pp.61~64

58)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pp.61~64

55억 700만원이 감액된 2,35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은 2023년 2억 6,700만원이었던 글로벌아젠다 연구를 2024년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은 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지원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2024년 예산안에 160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제공동연구 예산 29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사회과학 연구지원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과학연구지원(R&D)	10,798	10,798	12,184	1,386	12.8
글로벌아젠다 연구	-	267	1,200	933	349.4
인문사회 기초연구(R&D)	188,295	241,372	235,865	△5,507	△2.3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	-	-	16,025	16,025	순증

자료: 교육부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글로벌아젠다 연구 지원,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은 국제공동연구 R&D 사업으로, 연구원 및 연구소가 협의의 주체가 되어 양사 혹은 다자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대국과의 협력 의향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하는 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내 연구진들로만 구성된 과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제협력 R&D 중 일부 신규 내역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이나 기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 센터 사업**⁵⁹⁾은 우리나라 기업의 협력수요가 많은 해외 우수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협력거

점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내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있다. 이를 위해 동 내역사업에서는 글로벌 협력수요가 높은 반도체·배터리·자율주행·항공·로봇·바이오 등 6개 첨단사업 분야에 대하여 북미·유럽 등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66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협력센터구축은 2024년에 6개 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2027년에 다시 6개 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공동 R&D는 2026년까지 매년 49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동 내역사업은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6,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내역사업의 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협력센터구축	180	-	-	180	-	360
공동과제	485	1,210	1,690	1,685	1,440	6,510
합계	665	1,210	1,690	1,865	1,440	6,8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재정법」 제38조⁶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내역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5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122~131

6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타당성 검증 없이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2024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이하로 예산을 조정하고 타당성 검증 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건복지부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사업⁶¹⁾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신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19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4년 선도물질 과제 7개, 후보물질 과제 5개, 비임상 과제 4개, 임상 과제 2개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선도·후보·비임상의 경우 국내기업 중심의 글로벌 연구기관 또는 바이오벤처와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을 지원할 계획이고, 임상1상 및 2상의 경우 풍부한 글로벌 임상 경험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가신약개발 사업을 통해 기지원된 초기 단계과제 및 신규 진입 과제와의 공동임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의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4 예산안
선도물질 도출	7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90%	2,475
후보물질 도출	5개 × 1,933백만원 × 9/12개월 × 90%	5,437
비임상 지원	4개 × 2,500백만원 × 9/12개월 × 75%	5,625
임상 지원	2개 × 7,600백만원 × 9/12개월 × 75%	5,700
합계		19,125

자료: 보건복지부

동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 1,758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신규 내역사업의 내용은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동 신규 내역사업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지원할

61) 코드: 일반회계 3031-444

계획이며, 총 지원규모는 2023년 10월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⁶²⁾ 그러나 2024년 예산안 수준으로 7년 동안 동 사업이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⁶³⁾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⁶⁴⁾에 따른 특정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국제협력 R&D사업은 2023년 하반기 중 사업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일부 사업 간에는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⁶⁵⁾은 세계 최고 수준의

62)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에 동 사업의 7년간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년도 예산안 외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며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6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52~57

Top-tier급 연구집단 간 연합(Alliance)을 형성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인 협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연구사업의 기획·관리, 네트워크 형성, 표준 선점, 실증·창업, 현지정보 활용·지원,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3개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4년도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의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4 예산안
신규과제	1개 × 10,000백만원 × 6/12개월	5,000
신규과제	2개 × 5,000백만원 × 6/12개월	5,000
합계		1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어떤 내용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수준의 계획만 갖고 있고, 2023년 9월 중순부터 사업 기획을 위한 자료조사·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협력 상대국, 플랫폼 구축 방법, 2024년 3개 지원 분야의 내용, 공동연구 지원내용 및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⁶⁶⁾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용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⁶⁷⁾은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혁신신약 분야의 연계·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유망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유럽·미주·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공동연구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기술 협력 플랫폼 활동,

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부터 상세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 확정 이후 상세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등을 통해 2024년 7월 중 신규과제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58~61

고위급 협의체 및 합의사항, 연구기관 간 협력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도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유사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과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사업 비교]

구분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신규)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신규)
사업내용	①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유럽, 미주, 아시아 주요국과 지속가능한 연구플랫폼 구축 ② 글로벌 바이오기술 협력 플랫폼 활동, 고위급 협의체 및 합의사항, 연구기관 간 협력활동 등을 지원	① Top-tier급 연구기관과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플랫폼 기반 연합(alliance) 형성 ② 산업 기획·관리, 네트워크 형성, 표준 선점, 실증·창업,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지원
사업기간	2024~2029	2024~계속
지원분야	첨단바이오, 디지털바이오	핵심·신흥기술
협력대상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원대상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 출연연 등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 출연연 등
지원규모('24)	5개 과제, 100억원	3개 과제, 100억원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2023년 사업 추진·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사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과제형 R&D, 기반구축형 R&D, 기관지원형 R&D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과제형 R&D 사업의 차년도 예산안은 당해 연도 과제의 선정 현황과 차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된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R&D과제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9개월분의 연구비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6개월분의 연구비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단,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과제가 아닌 경우 직전년도의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의 연구비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다.

[과제형 R&D 신규과제 편성 기준]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4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예산편성 개월수를 보다 축소하거나, 단가를 10% 삭감하는 등의 강화된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지침의 내용과 목적은 결과적으로 R&D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데 있고, 실제 당해연도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R&D 신규과제의 경우 각 부처의 계획이나 기 선정 과제의 선례 등을 통해 과제 기획·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을 산출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과제는 차년도 협약기간이 회계연

도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제형 R&D 중 당해연도 신규과제의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시점에 따라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2023년 5월말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는 2023년 신규과제 중 이미 선정과 협약이 완료되어 2024년도 예산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고·선정 중이거나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인 경우에는 2023년도 협약기간을 예측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R&D 예산안을 검토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부처의 계획과 다르게 2023년도 신규과제 선정이 지연되거나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점인 10~11월은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4년도 R&D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2023년 상반기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과제 선정 지연, 미선정, 재기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혁신연구센터 사업**⁶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⁶⁹⁾ 중 강점이 있는 대학 연구소를 영속성 있게 지원하고, 연구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62억 5,000만원 증액된 375억원이 편성되었다.

68)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21~26

69)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② 이차전지 ③ 첨단 모빌리티 ④ 차세대 원자력 ⑤ 첨단 바이오 ⑥ 우주항공·해양 ⑦ 수소 ⑧ 사이버보안 ⑨ 인공지능 ⑩ 차세대 통신 ⑪ 첨단로봇·제조 ⑫ 양자

[2024년도 글로벌 IRC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4 예산안
계속과제	3개 × 5,000백만원 × 12/12개월	15,000
신규과제	6개 × 5,000백만원 × 9/12개월	22,500
합계		37,5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동 사업에서 2023년 선정한 3개 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은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당초 9개월의 연구비로 6개월의 협약을 체결하여 1차년도 연구비가 과다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사업의 2023년 신규과제에 3개월분의 연구비 총 37억 5,000만원이 과다 지원되었으므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3개 계속과제의 12개월 연구비를 9개월로 조정하고, 해당 연구비 37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글로벌 IRC 예산안 산출내역 및 적정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협약기간	2023예산
예산안	(계속) 3개 × 5,000백만원 × 12/12개월	2024.3.1.~ 2025.2.28.	15,000



△조정	(과다 지급 차감) 3개 × 5,000백만원 × 3/12개월	△3개월	△3,750
-----	-----------------------------------	------	--------



적정규모	(계속) 3개 × 5,000백만원 × 9/12개월	2024.3.1.~ 2024.12.31.	11,250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2024년 신규과제의 연구비도 2023년 신규과제의 선정 및 협약이 9월에 이루어졌고, 2024년의 경우 신규과제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제 선정 및 연구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C 신규과제 선정 추진경과 및 2024년 일정 예상]

구분	2023년	2024년(예상)
선정공고	1.3.	1월
과제 신청·접수	4.11.~ 4.26.	1~2월
1차 평가 실시	(요건 검토) 4.27.~5.15. (토론평가) 6.20.~6.22.	3~4월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통보	6.28.	4월
2차 평가 실시	(1단계 발표평가) 7.19. (2단계 발표평가) 8.8.~8.9.	5~6월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9.12.	7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9.1. (협약기간)2023.9.1.~2024.2.29.	7월 (협약기간) 2024.7.1.~12.3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⁷⁰⁾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국내 반도체 수요와 연계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개 분야의 반도체칩 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원 증가한 10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에 선정한 5개 과제에 평균 21억원씩 총 10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202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계속 과제 5개 × 2,100백만원 × 12/12개월 = 10,5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에 선정된 5개 과제를 계속 지원하는 내용으로 105억원이 편성되었다.

7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132~134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1월 사업공고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나, 1개 과제 수행기관이 선정 후 과제 협약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함에 따라 4개 과제만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2023년 미선정된 1개 과제에 편성된 2024년 예산안(21억원)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규과제별 신청기관 대비 선정기관수]

(단위: 개)

과제 공고차수	과제공고 연월일	과제선정 연월일	공고 과제수	선정 과제수	선정과제 협약기간	미선정 사유
1차	2023.1.1 9	2023.3.2 8.~3.29.	5	4	2023.6~7	수행기관의 협약 전 선정포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⁷¹⁾은 2030년대 세계 SMR⁷²⁾ 시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SMR을 개발하기 위해 2028년까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표준설계 및 기술 검증 등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42억 6,000만원 증액된 27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3년에 착수되었고, 2028년까지 총사업비 3,992.4억원(국고 2,747.2억원, 민간 1,245.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단을 두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2023년에 선정한 7개 과제를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22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7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36~40

72) SMR(Small Modular Reactor)은 출력이 300MW보다 작은 소형모듈원자로를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은 큰 출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방식이지만, 출력 조절이 어렵고, 원자로를 식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발전소 건설비용이 비싸고, 입지 역시 제한적이다. SMR은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이론적으로 규모가 작아 출력 조절과 원자로 냉각이 용이하고, 굳이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 입지 선정이 일반 원전에 비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으며, 모듈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 건설비용과 기간 역시 일반 원자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024년 혁신기술 내역사업 지원예정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2023 예산	2024 예산안
혁신 기술	①~⑥ 생략	한국원자력 연구원 등	1,680	1,210
	⑦ 혁신형 SMR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및 격납용기 장착형 격리밸브 개발	미정	90	1,210
합 계			1,770	22,06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7개 과제 중 ⑦ 혁신형 SMR 비상노심냉각계통 밸브 및 격납용기 장착형 격리밸브 개발 과제는 2023년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이 없어 선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의 상세내용을 재기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기획을 10월말까지 완료한 후 11월 선정 공고(30일 이상)를 시행한 후 12월말까지 선정 평가 및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연구개발기관이 정해진다는 하더라도 2023년 연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⑦번 과제는 2024년이 실질적인 1차년도 연구가 될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2차년도 연구비 12억 1,000만원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의 문제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1,445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37억 4,800만원(△9.4%) 감소했다. 이는 각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비, 주요 사업비(연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연평균 3.5% 수준으로 증가해 왔으나, 2024년 예산안은 R&D 분야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2021년 예산(2조 1,929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최근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예산 합계	20,621	20,661	21,929	22,577	23,683	3.5

주: 2019년 및 2020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개 기관 중 전년 대비 예산안이 증가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전년 대비 735억 900만원(60.4%) 증가했는데, 이는 25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할 매트릭스형 통합예산 1,00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예산에서 통합예산 1,000억원을 제외할 경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1.8%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4.1%(97억 5,700만원) 감소한 306억 8,200만원, 한국전기연구원이 19.0%(135억 3,900만원) 감소한 577억 9,500만원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92억 7,500만원, △18.7%)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191억 3,400만원, △1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80억 3,000만원,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2,368,271	2,144,523	△223,748	△9.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21,717	195,226	73,509	6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2,796	205,153	△17,643	△7.9
녹색기술센터	9,369	8,854	△515	△5.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107	74,176	△9,931	△11.8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97,198	82,754	△14,444	△14.9
한국천문연구원	67,872	56,339	△11,533	△1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5,553	91,307	△14,246	△13.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7,886	89,856	△18,030	△16.7
한국한의학연구원	58,063	56,714	△1,349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7,669	120,558	△17,111	△12.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9,994	96,825	△13,169	△1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96,349	81,400	△14,949	△1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9,782	60,320	△9,462	△13.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3,179	53,629	△9,550	△15.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3,777	87,822	△15,955	△15.4
한국식품연구원	45,763	39,473	△6,290	△13.7
세계김치연구소	16,260	14,617	△1,643	△1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3,020	93,886	△19,134	△16.9
한국기계연구원	80,094	68,490	△11,604	△14.5
한국재료연구원	50,381	43,004	△7,377	△14.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9,190	111,418	△7,772	△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3,299	84,024	△19,275	△18.7
한국전기연구원	71,334	57,795	△13,539	△19.0
한국화학연구원	115,074	98,238	△16,836	△14.6
안전성평가연구소	40,439	30,682	△9,757	△24.1
한국원자력연구원	158,106	141,963	△16,143	△10.2

주: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사업비, 시설비 모두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연구회를 제외한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중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기관 경상경비, 시설사업비를 제외하고, 출연연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주요사업비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88억 8,800만원 (25.2%) 감소한 8,85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184,771	885,883	△298,888	△25.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3,537	104,761	△28,776	△21.5
녹색기술센터	3,751	3,192	△559	△14.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6,280	36,398	△9,882	△21.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64,507	49,480	△15,027	△23.3
한국천문연구원	42,838	30,808	△12,030	△28.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0,310	43,070	△17,240	△28.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6,357	47,715	△18,642	△28.1
한국한의학연구원	30,197	21,764	△8,433	△27.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0,608	43,286	△17,322	△2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3,429	39,184	△14,245	△26.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55,336	39,726	△15,610	△28.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6,457	26,206	△10,251	△2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2,771	23,527	△9,244	△28.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9,573	42,848	△16,725	△28.1
한국식품연구원	23,652	16,921	△6,731	△28.5
세계김치연구소	8,507	6,756	△1,751	△20.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688	39,840	△14,848	△27.2
한국기계연구원	41,167	29,609	△11,558	△28.1
한국재료연구원	28,148	20,210	△7,938	△28.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1,766	39,938	△11,828	△2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8,085	34,674	△13,411	△27.9
한국전기연구원	29,778	23,106	△6,672	△22.4
한국화학연구원	59,119	44,435	△14,684	△24.8
안전성평가연구소	17,449	12,489	△4,960	△28.4
한국원자력연구원	76,461	65,940	△10,521	△13.8

주: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 예산안만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파괴하고,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지원할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⁷³⁾의 2024년 예산안에 1,0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	114,562	121,717	195,226	73,509	60.4
융합연구사업	78,910	82,031	153,072	71,041	86.6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은 기관 간 융합연구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 2024년에 1,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 외에 연구분야, 연구단 구성 및 선정 방식, 연구단별 지원규모, 평가방식, 추진 일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조차도 구체화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운영 방향(안)]

- 지원분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제품·서비스
 - * 12대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 지원대상: 출연(연)을 포함하는 개방형 연구단
- 지원규모: 2024년 총 1,000억원, 규모 제한 없이 우선순위 연구단에 지원
- 지원기간: 5년 이내 (예시: 2024년 ~ 2027년 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152~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023년 내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분야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융복합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간의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집행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이 약 3,000억원 수준 감소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없고,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한 내역으로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 편성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4년 예산안 감소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각 기관별 연구개발 적립금에서 이를 충당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은 과학기술계 후속 연구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회에 편성된 전략연구단 사업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은 총 7,141명으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 포함 전체 인원(2만 3,370명)의 30.6%를 차지한다.

[25개 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직 (정원)	무기계약직 (정원)	비정규직 (현원)	박사후연구원 (현원)	학생연구원 (현원)	합계
인원	14,789	1,440	1,529	1,638	3,974	23,370

주: 1. 정원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2022.12.) 기준이며, 현원은 2023년 6월 기준

2.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은 별도 정원 없이 운영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은 출연연 연구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당초 사업 또는 과제별로 이루어지는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활동을 보장하여 연구자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예측가능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의 2024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5.2%(2,988억 8,800만원) 감액되었고, 정부의 R&D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6.6% 수준 감소함에 따라, 주요사업비나 외부 수탁과제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2024년도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24년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의 인건비 확보 현황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나, 2023년 10월 10일 보도자료⁷⁴⁾를 통해 출연연의 학생연구원 등의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예산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재원(연구개발적립금 등)에서 충당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채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2020~2022년도에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에 대한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연간 1,170억 1,500만원이 적립되었고, 사용액은 평균 741억 400만원으로, 이미 연간 추가 적립액의 63.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혁신으로 7,500명 학생연구원·포닥 등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2023.10.10.

[최근3년간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및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평균	
	적립	사용	적립	사용	적립	사용	적립	사용
25개 기관 합계	87,525	74,477	95,214	57,614	168,306	90,222	117,015	74,1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론 단기적으로 기관별 적립금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가피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①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⁷⁵⁾, ②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③ 기관발전사업⁷⁶⁾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립금을 학생인건비 등에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동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편성된 전략연구단 사업 재원 등의 추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여,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인력에 대한 인건비 미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 후속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76)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등

정부는 2024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를 위해 에너지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약자 보호, 중소·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효율화 지원,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공급망 안정화·원전활성화·신에너지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4.8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지원내용]

(단위: 조원)

중점 투자대상	주요 지원 내용	2023 예산	2024 예산안
에너지 약자보호	-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주거공간 에너지효율 개선	0.8	1.3
에너지사용 효율화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고효율냉난방기 설치, 냉장고 문닫기 지원 -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	0.6	0.8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공급망안정화·원전생태계활성화·에너지신산업 구축	2.4	2.7
공급망 안정화	- 주요광물·석유 등 공공비축 확대 - 국내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0.34	0.56
원전 생태계 (원전 활성화)	-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용자·보증지원 신설 - 원전 분야 수출 및 인력지원 강화	0.53	0.66
에너지 신산업	수소·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1.5	1.5
합계		3.8	4.8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8.

① **에너지약자보호 분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1,909 → 6,856억원)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한 주거공간 에너지효율 개선(910 → 1,083억원),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0 → 314억원) 등을 중점 추진하며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② **에너지사용효율화 분야**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에 필요한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2,633 → 2,946억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설비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목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와 냉장고 문닫기 등의 사업(236 → 1,190억원)을 추진하며,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120 → 143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동 분야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한 0.8조원 규모이다.

③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분야**는 **공급망안정화·원전생태계활성화·에너지신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한 2.7조원이 편성되었다.

공급망안정화는 희소금속·석유 등에 대한 비축을 확대(1,045 → 2,997억원)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 투자를 확대(665 → 879억원)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2,170억원 증액된 5,586억원이 편성되었다.

원전생태계 활성화는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0 → 1,308억원)하고, 수출 및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확대(89 → 112억원)하는 방향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1,304억원 증액된 6,622억원이 편성되었다.

에너지신산업육성은 수소·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력 분야 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이 확대(620 → 920억원)되고, 수소 에너지의 공동주택, 건축물 등에서 활용을 지원하는 수소도시지원 예산이 증액(53 → 297억원)되었으나, 수소차 구매 보조지원금을 지원하는 수소차보급 사업의 감액(6,334 → 6,209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411억원 감액된 1조 4,792억원이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1)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소요 명확화 필요

2024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대비 5,000억원 증액된 1조 3,000억원을 편성하였다.

[에너지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단위: 억원, %)

주요 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에너지바우처	1,909	6,856	4,947	259.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910	1,083	173	19.0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	0	314	314	순증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에너지복지)	245	308	63	25.7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715	773	58	8.1
전체 합계	8,000	13,000	5,000	62.5

자료: 기획재정부

에너지약자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지원은 지원단가 및 대상 확대로 예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가구별 총에너지 비용 중 정부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소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약자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¹⁾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947억원 증액된 6,85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6-301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절기 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세대별 30.4만원에서 31.4만원으로 인상하고, 하절기 바우처는 세대별 4.3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2년말 이후 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2023년에 예비비 1,000억원을 재원으로 동절기 지원단가를 당초 세대 당 13.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4년에는 동절기바우처 기준 지원단가를 세대당 30.4에서 31.4만원으로 인상하며 예산안이 증가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	2022년(2022.5~2023.4)		2023년(2023.5~2024.4)		2024년
재원	2022년 추경예산	2023년 예비비 포함 최종예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2023년 동절기 확대	2024년 지원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기후민감 계층 포함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 세대	
지원 세대	117.6만 세대	117.6만 세대	85.7만 세대	113.1만 세대	115.0만 세대
지원 단가	동절기바우처 : 13.2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30.4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15.2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3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30.4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3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31.4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5.3만원/세대

주: 기후민감계층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3년에 예비비로 지원단가를 인상한 이후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목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원단가를 인상한 이후 다시 인하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어, 지원단가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재정소요를 일으키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단가는 현재 가스비 등 에너지비용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일정 비율을 증가시키는 점증적인 방식으로 산

출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목표가 명확히 계획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 재정소요를 면밀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24년도 동절기 지원단가는 2024년 소득 1분위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추산액 60만 6,440원의 51.2%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단가 인상이 중장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지원단가와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단가 인상은 지원 대상 가구별 총에너지 비용 중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률 등을 명확히 계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

(2) 에너지사용 효율화 사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요 고려 필요

에너지사용 효율화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확충과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한 전력사용량 절감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2,000억원 증액된 8,00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에너지사용 효율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사용효율화를 위한 주요 사업]

주요 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단위: 억원, %) 증감	
			B-A	(B-A)/A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2,633	2,946	313	11.9
전력효율향상 (에너지효율시장조성)	236	1,190	954	404.2
탄소포인트제 운영	120	143	23	19.2
에너지수요관리기술개발	2,372	2,344	△28	△1.2
전체 합계	6,000	8,000	2,000	33.3

자료: 기획재정부

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77~180.

첫째, 에너지사용 효율화는 민간투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여 사업장별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킬 계획이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연기, 대출거절 등에 따라 융자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집행잔액과 실집행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사용 효율화는 2024년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사업³⁾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3억원 증액된 2,946억원을 편성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사업은 매년 예산을 초과하는 융자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은행의 대출거절 등으로 대출이 시행되지 않아 연례적으로 연도 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2,651억원의 예산 중 161억 3,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수요가 감소하며 685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융자추천서 발급 업체의 사업포기 등으로 161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집행잔액은 실집행 불용 처리하여 정산 후 반납된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내역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0	296,000	296,000	296,000	279,880	16,120
2021	310,000	310,000	310,000	241,490	68,510
2022	265,100	264,354	265,100	248,966	16,1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313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2023년 8월 기준 융자예산의 집행실적(53.7%)이나 연례적인 집행잔액을 고려하였을 때 2024년에도 집행잔액 발생과 실집행 불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사

3)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1-302

업은 민간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포기 및 연기, 대출거절 등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둘째,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경감과 에너지사용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냉장고 문닫기 지원의 경우 2023년 10월까지 목표 1만대 대비 70개 사업장에서 312대의 수요만이 발생하여 사업 수요와 연계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사용 효율 지원은 2024년에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⁵⁾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24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954억원 증가한 1,19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력수요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 및 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보조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은 고효율 설비교체·냉난방기교체·냉장고문닫기로 구성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의 2023년 계획액을 85억 6,500만원에서 235억 6,500만원으로 150억원 증액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1만대를 Door형으로 교체개조하기 위한 예산이 100억원 규모로 신규 계획되었다.⁶⁾

냉장고문닫기는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신규 반영되고, 2023년 8월 7일부터 지원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2023년 목표 1만대 대비 선정은 70개 사업장의 312대에 불과하여, 사업수요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수요가 없을 경우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51~156.

5)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145-302의 내역사업

6) 냉장고문닫기 지원은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24년에 식품매장을 대상으로 총 1.5만대 냉장고에 대해 보조율 40%와 냉장고당 지원단가 250만원을 적용하여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의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계획안	2023년 지원내용
	당초	수정		2024년 지원계획
고효율설비교체	8,565	13,565	32,995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고효율설비 교체 확대
냉난방기교체	30,000	30,000	71,000	노후 냉난방기 1.9만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
				노후 냉난방기 4.6만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
냉장고문달기	0	10,000	15,000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1만대 Door형으로 교체·개조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1.5만대 Door형으로 교체·개조

주: 냉난방기 교체 지원은 2023년까지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 계획안에서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으로 변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지원의 경우 주요 지원대상인 편의점과 동네슈퍼의 개방형 냉장고를 26만 4,911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4년 계획안은 이 중 1.5만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출되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경우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냉장고문달기 등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지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3)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① 중장기 종합계획에 근거한 공급망안정화 사업 추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분야는 2024년도 예산안에 희소금속 및 석유 비축,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2,170억원 증액된 5,586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을 통한 희소금속 비축에 2,331억원,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을 통한 석유 비축에 666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과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사업을 통한 국내외 석유자원 개발에 87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95~99.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주요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주요 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급망 안정화	광해광업공단출자	372	2,331	1,959	526.6
	유전개발사업출자	301	481	180	59.8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364	398	34	9.3
	석유비축사업출자	673	666	△7	△1.0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1	21	0	0
	전체 합계	3,416	5,586	2,170	63.5

자료: 기획재정부

첫째,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희소금속 등의 비축은 단기 상황에 대응한 전략적 비축과 중장기적인 비축 계획에 따른 비축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희소금속 비축 예산은 공급망안정을 위한 비축 목표와 국제거래 가격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2월에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희토류 포함)에 대한 종합계획인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이후 희소금속을 포함한 비축은 동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에서는 비축대상을 2022년 기준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이전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희토류 포함)은 이전 54일분에서 100~180일분으로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비축물량 및 품목을 관리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비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⁸⁾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전기차·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 비축에 필요한 핵심광종을 구매 및 비축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59억원 증액된 2,331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리튬 24.2일분(2,174억원), 2종의 희토류 1년분(118억원), 갈륨 60일분(13억원)을 비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산출되었다.

8)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40-304

2024년에는 리튬 비축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제 리튬 수요 감소로 리튬 국제거래 가격이 2024년 예산안 산출 단가인 톤당 8,890만원 대비 2023년 8월 기준 톤당 6,89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리튬 등 희소금속의 비축은 국제거래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축단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튬의 비축목표와 국제거래가격에 근거한 비축비용이 보다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최근 공급망 상황에 따라 전략적 비축 필요가 큰 영구자석용 희토류 비축 목표를 상향하고 1년분을 한 해에 비축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단기 상황에 대응한 전략적 비축과 중장기적인 비축 계획에 따른 비축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둘째, 석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국내의 유전개발 지원은 운영권 확보나 생산물 국내 분배가 가능한 정책적 중요사업의 경우 투자 위험이 높아 민간 투자 유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유전탐사를 위한 사업은 국내 연구선 건조 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선을 활용한 탐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석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국내외유전개발용자) 사업¹⁰⁾과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¹¹⁾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국내외유전개발용자)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45억원 증액된 382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은 전년대비 180억원 증액된 481억원이 편성되었다.

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04~107.

10)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47-301

1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44-301

[2024년도 수입선다변화 분야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유전개발사업출자	37,609	30,130	48,140	18,010	59.8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국내외유전개발용자)	33,989	33,616	38,163	4,547	13.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사업에서는 국내외 유전개발의 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 중 운영권 확보나 생산물 국내 분배가 가능한 사업을 정책적 중요사업으로 분류하고 용자비용을 50%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 정책적 중요사업으로 지원 예정인 사업 중 개발 종료단계에 있어 생산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사업은 민간 기업의 투자 초기 단계에서 운영권 확보나 생산물 국내 분배가 가능한 사업이지만, 민간 투자의 위험이 큰 사업으로 정책적 중요사업의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투자비 중 일부를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동 사업에서는 2024년에 국내 대륙붕 탐사를 위한 6-1광구 중·동부 탐사시추 사업,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사업, 남·동해 대륙붕(1,500km²)에 대한 3D 물리탐사 실증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중 신규 물리탐사연구선 실증은 전액 국비로 건조된 연구선을 이용한 탐사 비용을 기존 해외 물리탐사선 용역을 통한 비용과 동일하게 산출하였으나, 국내 연구선 건조에 대규모 재정(총사업비 1,869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선 이용 비용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1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00~103.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61~166.

셋째, 석유비축은 2022~2023년에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익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익을 활용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석유비축은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 제2차 조정안에 근거하여 2024년에 총 90.9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할 계획이며, 이 중 32만 배럴의 석유를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예산으로 비축하고, 나머지 58.9만 배럴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¹⁴⁾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7,300만원 감액된 66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에 석유비축기지운영 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비축유 구입비로 513억원, 석유비축기지운영비로 1,493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2~2023년 석유비축기지운영 수익이 4,231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을 비축유 구입에 추가 투입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에서는 2024년 유가를 \$82.48/B(운임 및 보험료 등 부대비용 미포함)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지만, 최근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비축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사업 운영을 통한 수입과 2024년 국제유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

②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명확화 및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원전생태계 활성화 분야는 2024년에 원전 기자재 업체 등 원전 분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년대비 1,304억원 증액된 6,622억원이 편성되었다. 원전생태계 활성화 분야의 2024년도 예산안은 원전생태계금융지원(1,000억원), 원전수출특별보증(250억원), 원전기자재선금 보증보험 지원(58억원) 사업 등 원전기자재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이 1,308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며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14)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2-30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72~176.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원전 생태계 활성화	원전생태계금융지원	0	1,000	1,000	순증
	원전수출특별보증	0	250	250	순증
	원전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0	58	58	순증
	원전생태계지원	89	112	23	25.8
	전력해외진출지원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69	85	16	23.2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436	526	90	20.6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개발 등 R&D 사업(전력기금, 방폐기금, 원자력 기금 등)	3,706	3,675	△31	△0.8
	전체 합계	5,318	6,622	1,304	24.5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2023.8.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금융지원 예산안은 다소 낙관적인 원전 수출 전망에 근거하여 편성된 측면이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원전 기업 지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원전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원전수출보증 사업¹⁶⁾은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여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입찰·이행·선급금·하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계획안에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에서는 2024년 원전 분야 수출 전망에 근거하여 국내 원전기자재 업체에 2024년 1,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배수 5배를 적용하여 25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다.

1,250억원의 수출보증공급액은 선급금 보증에서 선급금 15%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333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는 ㉔수주 원전 사업의

16)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7403-315

2024년 최대 발주 예상액 8,000억원과 국내 원전기자재 업체가 2023년 이전에 계약한 ㉸수주 사업의 수주액 98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원전 기자재업체가 해외사업에서 발주된 기자재 중 일부만을 수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주 사업의 수출보증 수요는 공급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2017~2021년 우리나라의 원전설비 수출계약은 총 143건, 5.3억불 규모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기자재 업체가 단기간에 지난 5년(2017~2021년)의 수출계약액을 크게 넘어서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원전설비 수출 예상액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계약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맞추어 수출보증공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2)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 사업**¹⁸⁾은 중소·중견기업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보조기기 발주 계약 체결시 선급금 지급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안은 57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납품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특례를 통한 예외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기기 납품업체의 선금 지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추가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3)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²⁰⁾은 원전 기자재 기업 육성을 위하여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게 시설자금·운전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안은 1,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원전 관련 기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원전 산업과 관련이 적은 기업까지 지원할 우려가

1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2.10, pp.28~33.

18)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7403-315

1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2.10, pp.34~40.

20)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7403-313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중소·중견기업 용자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 사업에서는 지원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고 원전 관련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적 용도에 부합하도록 원전 기업의 사업화, 시설투자 및 수출지원 자금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③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배분 방향의 적절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소 및 풍력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과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금 등을 감액하며, 전년대비 411억원 감액된 1조 4,792억원이 편성되었다.

[에너지신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에너지 신산업육성	수소차보급	6,334	6,209	△125	△2.0
	무공해차충전 인프라구축	1,896	1,872	△24	△1.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737	3,187	450	16.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풍력)	620	920	300	48.4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	25	65	40	160.0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17	145	128	752.9
	수소생산기지구축	88	81	△7	△8.0
	해외청정암모니아 생산지원	40	60	20	50.0
	탄소포집활용실증센터구축	37	89	52	140.5
	전체 합계	15,203	14,792	△411	△2.7

자료: 기획재정부

2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2.10, pp.41~45.

첫째, 2024년도 예산안은 수소·연료전지·풍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목표를 반영하여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자원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월 발표된 에너지 분야 법정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는 2036년까지의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23년 32.8GW에서 2036년 108.3GW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 전망(설비용량 기준)]

(단위: GW)

구분	연도	원전	석탄	신재생	LNG	양수	기타	합계
제10차 계획	2023	26.1	40.2	32.8	43.5	4.7	1.1	148.4
	2030	28.9	31.7	72.7	58.6	5.2	0.9	198.0
	2036	31.7	27.1	108.3	64.6	6.5	0.8	239.0

주: 정격용량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2023.1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중 풍력과 연료전지 설비용량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목표]

(단위: MW)

연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연료전지	IGCC	합계
2021	21,199	1,709	1,821	256	3,579	794	346	30,212
2024	28,200	2,944	1,871	256	1,800	1,347	346	36,764
2036	65,700	34,089	2,129	256	1,800	3,947	346	108,267

주 1. 2022년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통계(2022.12) 추출 자료

2. 2022년 합계에는 수력, 해양, 폐기물 설비용량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2023.1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과 유사한 규모이지만, 풍력 분야 금융지원과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의 R&D 지원을 전년에 비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태양광 분야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용자 예산과 R&D 예산 모두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의 에너지원별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	지원분야	2023 계획 (A)	2024 계획안 (B)	증감	
				B-A	(B-A)/A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태양광	395,170	238,925	△156,245	△39.5
	풍력	62,000	92,000	30,000	48.4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태양광	65,744	46,134	△19,610	△29.8
	풍력	75,410	63,279	△12,131	△16.1
	수소	67,697	68,195	498	0.7
	연료전지	51,892	52,854	962	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는 2036년까지 풍력과 연료전지 설비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지만,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중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1년 기준 70.1%, 2024년 계획 기준 76.7%, 2036년 목표 기준 60.7%에 이른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른 중장기 목표에 따라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 설비의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른 풍력과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재생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자원배분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관련 기반구축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액화수소 시험평가 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중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액화수소 분야 시험평가 장비 등의 설치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사업 등 일부 사업은 2023년 10월 현재 센터 및 장비 구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②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사업**²²⁾은 액화수소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28억 3,900만원 증액된 14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건축기획 및 설계가 지연되며 건축 착공일이 당초 계획한 2022년 11월에서 2023년 8월로 지연되었다. 사업지연으로 시험동 건축비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교부된 2022년 출연금 42억 4,600만원 중 42억 800만원은 2023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3년 8월 기준 사업수행기관 시험동 건축감리비 예산현액 42억 800만원 중 5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액화수소공급설비 구축을 위한 2023년 예산 16억 9,400만원은 액화수소 공급설비 구축비 104억 중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023년 8월 1차 공고 시 유찰이 발생하여 2023년 9월 현재 실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천, 울산 등에 민간기업의 대규모 액화수소²³⁾ 플랜트 건립이 추진되어 2023년 12월까지 SK, 효성, 두산 등의 액화수소 플랜트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액화수소 플랜트가 준공됨에 따라 2023년말 이후 액화수소의 대량 생산 및 공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액화수소 관련 저장탱크, 탱크로리, 기화장치, 밸브 등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액화수소 투자가 추진됨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 관련 실증기준을 제정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 안전검사 대상인 액화수소 관련 설비에 대한 검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액화수소 관련 검사 수요에 대응한 장비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⁴⁾

2)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 사업**²⁵⁾은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고장분석, 수명시험 등

22)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3-305

23)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253℃) 상태로 냉각하여 액화한 것으로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부피 감소가 가능하여 수소의 대량 운송 및 저장에 있어 기체수소에 비하여 높은 경제성을 가진다.

2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57~160.

신뢰성 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신뢰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원 증액된 65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를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 시험평가장비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부지선정과 건축설계 공모가 지연되며 2023년 10월 현재 건축기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설계 공모를 위한 조달청 협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²⁶⁾ 따라서 동 사업은 국내 기업의 액화수소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관련 기자재 등의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가 당초 계획대로 구축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5)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03-320

2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관)」, 2023.10, pp.147~150.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리스크, 전기요금 상승 등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중채무자 등 취약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2개 기금¹⁾의 2024년 계획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관련 사업을 편성하였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9,2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비용·금융비용·고용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들로, 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닫기 등 ‘에너지 비용 지원’, ② 고금리 또는 대출만기 도래 등 상환부담이 큰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등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성된 ‘금융비용 지원’, ③ 자영업자의 실업위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부사업 1개(전력효율향상 세부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부사업 2개(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 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소상공인 지원	증감 (B-A)
					당초(A)	수정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력효율 향상	에너지효율 시장 조성	고효율설비 개체 지원	8,565	13,565	32,995	24,000	24,430
				식품매장 냉장고 문닫기 ¹⁾	-	10,000	15,000	15,000	15,000
				노후 냉난방기 지원	-	-	71,000	71,000	71,0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소상공인 지원(융자)	특별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	-	500,000	500,000	500,000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	-	-	300,000	300,000	300,000
		소상공인 재기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5,000	5,000	15,008	15,008	10,008
합 계					13,565	28,565	934,003	925,008	920,438

주: 1) 2024년도 식품매장 냉장고 문닫기 사업 계획안의 지원대상에는 소상공인 외에도 중소기업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윤성노 예산분석관(yoonsn@assembly.go.kr, 6788-4629)

1) 전력산업기반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등에 관한 최근 조사결과 및 통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종 패키지 중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총 5차례 인상되어 2023년 8월말 현재 2022년 1월말 대비 kWh당 40.4원이 인상되었으며,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갑) 전기요금²⁾의 월 평균 납부액을 보았을 때, 전력사용량이 많은 2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59,358원 (23.7%), 8월은 전년 동월대비 52,760원(17.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갑) 대상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전기요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1	240,680	236,566	187,888	162,669	155,740	187,160
2022(A)	251,373	250,048	201,982	174,058	170,382	203,352
2023(B)	308,171	309,406	242,492	210,392	203,207	248,611
22대비 23증감 (B-A)	56,798	59,358	40,510	36,334	32,825	45,259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235,436	267,330	212,805	166,045	181,827	220,351
2022(A)	274,933	298,290	244,338	187,207	205,469	250,979
2023(B)	309,359	351,050	-	-	-	-
22대비 23증감 (B-A)	34,426	52,760	-	-	-	-

자료: 한국전력공사

2) 일반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전력요금은 일반용(갑)이다.

〈 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

- 일반용전력: ①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에 해당하는 전력, ②업무용 오피스텔용 전력
-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일반용전력

참고로,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대상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³⁾ 결과에 의하면 2023년에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46.9%가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답하였다.

둘째, 3종 패키지 중 ‘금융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실시된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한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⁴⁾에 따르면, 2023년 1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33.7조원⁵⁾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말 684.9조원 대비 50.9%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취약차주(다중채무자로서 저신용인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비중은 2021년말 9.0%에서 2023년 1분기말 10.1%로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은 2021년말 35.5%에서 2023년 1분기말 39.4%로 늘어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00%로 2022년 6월말 연체율(0.47%) 대비 0.53%p 상승하였으며,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0%로 2022년 6월말 연체율(5.7%) 대비 4.3%p 증가하였다.

3) (조사대상) 전국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영위 자영업자 (응답자 500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14일 ~ 6월 21일
(조사기관) 모노리서치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이메일, 팩스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4.38\%$ p

4) 「금융안정상황」. 한국은행. 2023. 6. 21.

5)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2023년 1분기말 자영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680.2조원, 가계대출 353.5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¹⁾]

(단위: %, %p)

	12-19년 평균	19년말	22.6월말 (A)	23.3월말 (B)	B-A
○전체 ²⁾	1.05	0.76	0.47	1.00	+0.53
○차주 특성별 ³⁾					
- 취약	11.16	10.27	5.70	10.00	+4.30
(다중채무)	1.85	1.43	0.75	1.42	+0.67
- 비취약	0.24	0.09	0.08	0.17	+0.09
○금융업권별 ⁴⁾					
- 은행	0.48	0.29	0.16	0.37	+0.21
- 비은행	6.10	2.47	1.27	2.52	+1.25
○업종별					
- 대면	0.58	0.38	0.22	0.60	+0.38
- 비대면	0.53	0.42	0.19	0.37	+0.18
- 부동산	0.33	0.13	0.09	0.16	+0.07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2)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3) 가계부채DB상 자영업 차주 대출 기준

4)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자료: 「금융안정상황」, 한국은행, 2023. 6. 21.

동 보고서는 자영업자 부채 관련 취약요인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비자영업자에 비해 상당히 높아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방식의 대출 비중은 44.2%로, 비자영업자(37.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의 비중이 73.2%에 달한다는 점⁶⁾도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 시 대출한도 축소 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셋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를 폐업 등 실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6) 다만, 동 보고서는 현재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대출이 만기연장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3년 1~3월 주요 8개 은행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만기연장률 96.7%)

하는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총 7개 등급)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실업급여 또한 선택한 기준보수에 일정비율(60%)을 적용한 금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2023년 6월 현재 가입률은 0.78%(4만 5,000명) 수준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전체 자영업자	5,638	5,606	5,531	5,513	5,564	5,803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비율)	18 (0.32)	22 (0.39)	30 (0.54)	37 (0.67)	43 (0.77)	45 (0.7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1.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냉장고문달기 수요 불명확⁷⁾

가. 현 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효율향상 세부사업⁸⁾ 내 편성된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내역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력수요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 및 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보조할 계획이다.

[2024년도 전력효율향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전력효율향상	37,199	51,802	96,802	163,374	66,572	68.8
에너지효율시장조성	7,786	8,565	23,565	118,995	95,430	40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95-99 참고

8)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145-302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7월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내역사업의 2023년 계획액을 당초 85억 6,500만원에서 235억 6,500만원으로 150억원 증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내역사업의 고효율설비교체 예산이 2023년 당초 85억 6,500만원에서 135억 6,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방고 1만대를 Door형으로 교체·개조하기 위한 예산이 100억원 규모로 신규 계획되었다.

[2023년도 에너지효율시장조성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3년 지원내용
	당초	수정	
고효율설비교체	8,565	13,565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고효율설비 교체 확대
냉장고문달기	-	10,000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1만대 Door형으로 교체·개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설비교체 지원의 2024년도 계획안은 1,430개소에 평균 2,27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32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 냉난방기교체 지원은 2024년에 4.5만개 노후 냉난방기를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계획안에 71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식품매장 냉장고문달기 지원은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1.5만대에 Door형 문달기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내역 사업의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산출내역	계획안
에너지효율 시장조성	•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32,995백만원)	118,995
	- (설비개체) 22.7백만원 × 1,430개소 = 32,461백만원	
	- (계측전송시스템관리) 534백만원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71,000백만원)	
	- 4.5만개 × 394만원 × 40% = 71,000백만원	
	•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15,000백만원)	
	- 1.5만개 × 250만원 × 40% = 15,0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에너지효율시장조성 내역사업의 냉장고문달기 지원은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신규 추진한 이후 2023년 9월까지 목표 1만대 대비 70개 사업장에서 312대의 수요만이 발생하여 2024년 예산 대비 사업수요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수요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냉장고문달기 지원은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2024년에 식품매장을 대상으로 총 1.5만대 냉장고에 대해 보조율 40%와 냉장고당 지원단가 250만원을 적용하여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수량을 50만 4,323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동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인 편의점과 동네슈퍼의 개방형 냉장고는 26만 4,911대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 계획안은 이 중 1.5만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출되었다.

[전국 식품매장 및 개방형 냉장고 추정 내역]

(단위: 개, 대, %)

구분	매장수 (통계청 기준)	개방형 냉장고 수량		점유율
		평균수량	총수량(추정)	
백 화 점	97	42.80 대/매장	4,152	0.8
대형마트	488	89.33 대/매장	43,593	8.6
기업형 마트	11,927	16.07 대/매장	191,667	38.0
편 의 점	43,975	2.55 대/매장	112,136	22.2
동네슈퍼	53,047	2.88 대/매장	152,775	30.3
합 계	109,534	4.60 대/매장	504,323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국 편의점, 동네 슈퍼 등 식품매장이 사용하는 개방형 냉장고의 수가 약 26만대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⁹⁾. 그러나 2023년 9월 기준 실제 지원대상 선정 현황을 볼 때, 2023년 목표 1만대 대비 312대(70개 사업장)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¹⁰⁾.

9)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2024년 예산으로 지원하려는 목표 수량이 전체 모수의 3.8%(2023년 1만대), 5.8%(2024년 1.5만대) 수준이어서 사업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력효율 향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3년 집행내용
	당초	수정	
고효율설비교체	8,565	13,565	2023년 9월 기준 122개 지원사업장 선정 완료
냉난방기교체	30,000	30,000	2023년 9월 기준 목표 19,000건 대비 11,300건 선정(목표 대비 59.5%), 교체완료 4,160건
냉장고문달기	-	10,000	2023년 9월 기준 목표 1만대 대비 312대 선정 (70개 사업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같이 냉장고문달기 지원은 2024년 계획안에서 냉장고 1.5만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3년 9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사업수요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24년 냉장고문달기 지원 예산은 사업 수요 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금융비용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추정 필요¹¹⁾

가. 현 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시시행되었던 대환대출 사업을 5,000억원 규모로 재시행하고, 경영안정·재해복구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내에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10) 반면 고효율설비교체의 경우 2023년 7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이후 2023년 지원대상 122개 사업장의 선정이 완료되었다. 냉난방기교체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으로 목표 19,000건 대비 11,300건이 선정되었으며, 4,160건은 교체가 완료되었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259-268 참고

[대환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의 2024년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자금구분	2023년	2024년 (정부안)	비고
대환대출	-	500,000	고금리 또는 대출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00	450,000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 상향(7천만원→1억원) 및 일시적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	300,000	경영애로 자금 신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신규 대출 사업의 사업수요·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①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2022년도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대출실행연도에 대위변제지원예금액(대출공급액의 22%)을 은행에 즉시 지급할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계획안은 2.5배인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정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환대출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특별경영자금내에 신설·일시시행된 사업인데, 당시에는 2,000억원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272억 7,200만원이었다.

대환대출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대출신청을 받았고 실제 대환대출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신청은 많았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적어 실집행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은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은행·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성실하게 상환 중(세금 체납 또는 대출금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인 저신용 소상공인¹²⁾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건수

12) [초기] 나이스 신용평점 744점 이하,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

는 6만 325건, 발급금액은 1조 8,097억 5,000만원이었으나¹³⁾, 이에 비해 실제 지원 건수는 4,579건, 지원금액은 1,272억 7,200만원(대출금액 964억원)에 그치고, 집행 잔액 727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대환대출사업 집행부진에 대해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처리하는 대환대출 특성상 대출 신청부터 취급은행의 심사, 최종 대출 실행까지 평균 26일이 소요되어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2022년 대환대출 지원조건 및 지원실적]

대출대상	금리	지원 한도	지원실적	
			건수 (건)	대출금액 (억원)
[초기] 신용평점 744점 ↓,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	5.5%	3천만원	4,579	964
[확대] 신용평점 839점 ↓, 비은행+은행권 고금리 채무	~ 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대환대출 특성상 저신용자비율·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¹⁴⁾되는데, 취급 은행 심사를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실행기간이 크게 짧아지기 어려워 2024년도 대환대출 사업 역시 저조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대환대출 공급규모가 5,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으므로 집행을 제고가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집행액인 1,273억원에 대해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고, 2022년은 사업수행기간이 사실상 5개월이었지만, 2024년에는 11개월간 수행가능할 것으로 보고, 4,668억원¹⁵⁾가량 사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환대출은 대출공급액 외에도 대출공급액의 10%를 추가로 질권

→ [확대] 신용평점 839점 이하, 은행권·비은행권 고금리 채무

13) 대환대출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서류이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현황자료는 아니다.

1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에 전체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15) 1,273억원(2022년 집행액) × 5/3(한도 개선) × 11/5(사업수행기간) = 4,668억원

설정하고, 대출공급액의 22%를 대위변제재원예금액으로 선지급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환대출은 대출기간이 총 5년이고,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므로, 대출 1년차에 바로 부실이 발생하는 비중은 낮고, 주로 상환이 시작되는 3년차부터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차에 대출실행액의 22%를 대위변제액으로 일시에 지급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도 동 사업 추진시에는 이를 낮추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환대출 공급액 964.18억원에 대해 대출상환, 사업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면 2024년 대출공급액은 3,535.33억원, 질권설정액은 353.5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2024년에 은행에 지급하는 대위변제재원예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 2024년도 계획안은 상당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대출시행시에는 지원대상을 전 신용평점으로 확대하고, 고금리 외 민간 대출연장 제한 유형을 포함하며, 대환금리도 재설정할 예정이며, 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하고, 사업방식을 제3자 예금담보방식이 아닌 대리대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¹⁶⁾. 따라서 2024년도 대환대출 사업의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면밀하게 하고,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사업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내 내내역사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3년에 1,000억원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유형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계획안을 1,5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억원 증액편성하였다. 그리고 ㉡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

16) 그런데, 대리대출로 대환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민간 은행이 부실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대환대출 실시후 약 1년만에 대환대출 부실률이 4.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리대출 방식의 적정성·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은 직접대출과 유사하게 소진공에서 부담되, 심사 및 사후관리는 은행에서 담당하는 새로운 대리대출 방식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 이 경우 예금 담보는 없더라도 대위변제지급 등 상세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을 신설하고, 기존 위기지역지원자금 500억원을 통폐합하여 2024년 3,0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각 정책자금유형별로 사업수요를 검토하면, 우선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유형은 대출한도 인상에 비례하여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2023년 8월말 현재 503억 5,400만원이 대출실행되었다. 9월~12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신청·실행된다면 2023년도 집행액은 755억원으로 예상되고, 2024년도 사업수요는 1,079¹⁷⁾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유형은 기존 위기지역지원자금('23년 500억원)이 확대운영될 예정인데, 지원대상의 범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간접피해 또는 위기우려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동 유형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환경 변화 및 사건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중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5년간(거치기간 2년) 7,000만원을 대리대출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 때 일시적 경영애로여부는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¹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판단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10월 현재 간접피해나 지역경제위기 수준·위험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¹⁹⁾ 해당 소상공인·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사업규모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수요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7) 503억 5,400만원×(12개월/8개월)×(한도 1억원/7천만원)=1,079억 100만원

18) 단, 조선사 소재 지역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가 명확한 경우에는 매출감소요건 제외

19) 중소기업창업부는 '24년 용자계획 공고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의 지원대상 및 사유를 열거할 예정이며 지역경제위기 지역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기침체 대응 또는 활성화 필요 지역 중심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간접피해는 정책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사전에 확정하기에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류독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정책적 공감대가 인정되는 사유에 매출감소 요건을 확인해서 지급 예정이며,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대환대출 사업 부실률·리스크 관리 필요

대환대출의 경우 부실발생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부담이 되는데, 2022년에 실시한 대환대출 부실률이 2023년 8월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률·리스크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은 최근 5년간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비율과 함께 부실률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사업은 대리대출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실발생시 취급은행이 부실채권을 부담·관리하게 되지만, 특히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취급은행에 우선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관리할 예정이다.

즉, 대환대출은 부실발생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부담이 되는데, 2022년 실시된 대환대출 사업은 2023년 8월말 기준 부실률이 4.2%로 나타난다.

[대환대출 부실률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대환대출	-	-	-	-	0.05%	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환대출 사업은 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으로 실시되었고, 2022년 7월부터 대출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년만에 부실률이 4.2%로 나타나고 있어 부실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은행과 대위변제 재원예금액을 대출공급액의 22%로 설정하였으므로, 동 사업 부실률을 최대 22%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5.5~7.0%)로 대환해주는 사업 특성상 부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나,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실률 인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환대출사업 시행시 취급은행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률·리스크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적정 수준 검토 필요²⁰⁾

가. 현 황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²¹⁾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100억 800만원(200.2%) 증액된 15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소상공인 재기지원	169,554	151,400	166,308	14,908	9.8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629	5,000	15,008	10,008	200.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었고, 지원기간은 2019년 최대 3년, 2020년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도 2023년 전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기준보수의 20~50%였는데, 2024년부터 50~80%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2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285~289 참고

2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역사업

[2023~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월 지원액 계획]

(단위: 원,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3 지원비율	50%		30%		20%		
'23 월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24 지원비율	80%		60%		50%		
'24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주: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자료: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나. 분석의견

2024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부담율이 0% 등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낮은 등급의 기준보수 선택비율 증가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및 자영업자의 책임성 제고 및 고용보험 재정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비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를 실제 매출·수익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으로 자부담이 없거나 크게 낮아지면 실제 매출·수익이 견조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여력이 있고 폐업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도 기준보수를 낮게 선택하고 최대한 지원 등을 받게 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준보수를 낮게 선택할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2등급에 대해 모두 자부담이 0%라면, 자영업자는 2등급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대비 수익비율이 가장 높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 선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 높은 기준보수를 택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1~2등급과 같은 낮은 기준보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보수 선택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42,578	12,522 (29.4)	7,583 (17.8)	3,013 (7.1)	5,160 (12.1)	3,219 (7.6)	1,504 (3.5)	9,577 (22.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28,588	9,057 (31.7)	6,092 (21.3)	2,036 (7.1)	3,866 (13.5)	1,699 (5.9)	787 (2.8)	5,051 (17.7)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수혜자	18,012	5,894 (32.7)	5,377 (29.9)	1,025 (5.7)	3,083 (17.1)	400 (2.2)	228 (1.3)	2,005 (11.1)

주: 2022년까지는 1인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지원함

자료: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2024년도에 국비 지원율이 50~80%로 인상되고, 1~2등급의 경우 자부담율이 0%로 설정되는 경우, 실제 매출·수익에 비해 낮은 기준보수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율 인상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필요하고, 이를 일부분 분담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에 따른 지원율을 80%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장기간 생존하는 비율이 낮아 납입기간이 짧고 수혜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보험 재정수지상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자영업자는 통상적으로 1년 생존율이 66% 이하이고, 5년 생존율이 30% 가량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차별 신생기업 생존율]

(단위: %)

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16	('15) 65.3	('14) 50.7	('13) 41.5	('12) 33.6	('11) 28.6	-	-
2017	('16) 65.0	('15) 52.8	('14) 42.5	('13) 35.6	('12) 29.3	('11) 25.3	-
2018	('17) 63.7	('16) 52.8	('15) 44.7	('14) 36.7	('13) 31.2	('12) 26.1	('11) 22.8
2019	('18) 64.8	('17) 51.9	('16) 44.5	('15) 38.5	('14) 32.1	('13) 27.7	('12) 23.5
2020	('19) 64.8	('18) 53.6	('17) 44.3	('16) 38.5	('15) 33.8	('14) 28.6	('13) 25.1

주: 「기업생멸행정통계」 내 신생기업 생존율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생존율 추정

자료: 「2022 소상공인지원(용자)사업 성과분석」

그런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기준보수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0.25%로 설정되어, 고용보험은 리스크에 비해 보험료율이 크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이 실업급여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자부담율이 0% 등 과소하게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및 자영업자의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적정 지방비 지원율, 자부담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전망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동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할 때 고용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낮은 등급의 기준보수 선택비율 증가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및 자영업자의 책임성 제고 및 고용보험 재정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비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개 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²⁾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을 의미한다.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29.3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도 본예산 30.3조원 대비 약 1조원(3.5%) 감소하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B-A)/A
일자리사업예산(A)	30.5	31.6	30.3	29.3	△1	△3.5
정부총지출(B)	558.0	607.7	639.0	656.9	17.9	2.8
A/B	5.5	5.2	4.7	4.5		

주: 본예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3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미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① 저소득층(가구원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2.12.)

한편, OECD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을 9개 유형³⁾으로 분류·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기초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세부 유형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사업 예시]

분류	주요 내용	사업 예시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복지부)
직업훈련	실업자의 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위험 감소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내일배움카드(고용부)
고용서비스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고용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일자리 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고용창출장려금(고용부)
창업지원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융자·시설·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창업기업자금(중기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	구직급여(고용부)
지원고용 및 재활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조치	장애인취업지원(고용부)

주: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은 장애인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별도 유형으로 분리

자료: 고용노동부

3) ①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② 노동시장 훈련, ③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④ 고용인센티브, ⑤ 장애인 통합, ⑥ 직접일자리 창출, ⑦ 창업 인센티브, ⑧ 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 ⑨ 조기은퇴 등 9개 유형이다.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1) 연도별 고용동향

최근 5년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3년 8월 기준 63.1%로 증가하였고, 실업률 또한 2018년 3.8% 수준에서 2023년 8월 기준 2.0%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고용동향]

(단위: 만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생산가능인구	4,418.2	4,450.4	4,478.5	4,508.0	4,526.0	4,541.5
경제활동인구	2,789.5	2,818.6	2,801.2	2,831.0	2,899.2	2,925.1
취업자	2,682.2	2,712.3	2,690.4	2,727.3	28,089	2,867.8
실업자	107.3	106.3	110.8	103.7	83.3	57.3
고용률	60.7	60.9	60.1	60.5	62.1	63.1
실업률	3.8	3.8	4.0	3.7	2.9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3.10.)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실업률은 3.0%, 2025년 이후 다소 상승하여 2028년까지 3.2~3.4%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취업자 증감률의 경우 2024년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 중기 고용동향 전망 내역]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임금상승률	3.0	3.4	3.2	3.2	3.2
취업자 증감률	0.8	0.8	0.5	0.3	0.3
실업률	3.0	3.2	3.3	3.3	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3.10.)

2023년 상반기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0%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15~29세)의 경우에도 고용률(47.0%)은 8월 기준 역대 통계치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청년층 실업률(4.5%)도 8월 기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지속 상승중(+1.2%p)이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2) 연도별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021년 30.5조원 규모에서 2022년 이후 감소하여 2024년 예산안에서는 29.3조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3년 대비 1조원 가량이 감소(3.5%)한 것이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2024년 656.9조원으로 전년 대비 17.9조원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총지출에서 일자리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7%에서 2024년 4.5%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A)	2024(B)	증감(B-A)	(B-A)/A
일자리사업 예산(A)	30.5	31.6	30.3	29.3	△1	△3.5
정부총지출(B)	558.0	607.7	639.0	656.9	17.9	2.8
(A/B)*100	5.5	5.2	4.7	4.5		

주: 본예산 기준, 2024년도는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3) 부처별 현황

202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24개 부처(청)에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수는 162개이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은 31조 5,808억원이었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29조 2,935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9.13.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21조 5,439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의 73.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3조 5,089억원(12%), 중소벤처기업부 3조 3,033억원(11.3%) 순으로,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6.8%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서 소관 일자리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4,794억원이 감액되었고(△6.4%), 증액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5,95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438억원, 중소벤처기업부 39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상당 수준 확대되었던 다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출구 전략에 따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부처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부처	사업수		2022	2023(A)	2024		증감	
	2023	2024			예산안(B)	비중	(B-A)	(B-A)/A
경찰청	0	0	645	0.0	0.0	0	0	0
고용부	67	60	244,925	230,234	215,439	73.5	△14,794	△6.4
과기부	9	7	882	1,072	584	0.2	△488	△45.5
교육부	7	6	3,137	2,921	2,893	1.0	△28	△1.0
보훈부	3	3	161	191	179	0.1	△12	△6.1
국방부	1	1	154	163	152	0.1	△12	△7.1
국토부	2	1	28	27	7	0.002	△20	△74.9
기상청	1	1	10	9	9	0.003	0	0.0
농식품부	6	7	414	533	970	0.3	438	82.2
문화재청	2	2	23	52	34	0.01	△18	△34.7
문체부	14	13	912	870	682	0.2	△189	△21.7
방사청	1	1	9	8	8	0.003	0	0
법무부	2	2	109	109	114	0.04	5	4.6
복지부	7	7	27,326	29,137	35,089	12.0	5,952	20.4
산림청	5	5	1461	1,410	1,353	0.5	△58	△4.1
산업부	7	6	296	164	112	0.04	△51	△31.3
식약처	1	1	10	10	9	0.003	△1	△9.5
여가부	4	3	748	757	735	0.3	△22	△3.0
중기부	21	19	30,440	32,635	33,033	11.3	399	1.2

(단위: 개, 억원, %)

부처	사업수		2022	2023(A)	2024		증감	
	2023	2024			예산안(B)	비중	(B-A)	(B-A)/A
통일부	2	2	25	22	18	0.006	△4	△20.2
특허청	2	2	84	48	37	0.01	△11	△22.4
해양경찰청	1	1	6	8	7	0.002	△1	△8.6
해수부	7	6	221	114	117	0.04	3	2.3
행안부	3	2	3,032	2,042	752	0.3	△1,289	△63.2
환경부	6	4	750	945	600	0.2	△344	△36.4
합계	181	162	315,808	303,481	292,935	100	△10,546	△3.5

주: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이며, 사업 수는 세부사업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4) 회계·기금별 현황

202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회계·기금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16조 1,804억원)이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의 55.2%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재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8조 8,275억원으로 30.1%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창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2조 1,505억원으로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기금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기금명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94,540	88,275	△6,265	△6.6
특별회계	6,131	6,467	336	5.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55	955	300	45.8
- 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16	4,055	△161	△3.8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34	1,145	411	56.0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38	30	△8	△21.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5	0	△45	△10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8	37	△11	△22.9
- 환경개선특별회계	397	244	△153	△38.5

(단위: 억원, %)

회계/기금명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금	202,810	198,193	△4,617	△2.3
- 고용보험기금	166,436	161,804	△4,632	△2.8
- 관광진흥개발기금	135	160	25	18.5
- 국민연금기금	355	346	△9	△2.5
- 국민체육진흥기금	157	174	17	10.8
- 군인복지기금	163	152	△11	△6.7
- 금강수계관리기금	4	0	△4	△100
- 기후대응기금	326	310	△16	△4.9
- 문화예술진흥기금	98	91	△7	△7.1
- 방송통신발전기금	40	35	△5	△12.5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기금	5	8	3	60.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8	32	△126	△79.7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09	406	97	31.4
- 수산발전기금	0	0	0	0
- 영화발전기금	0	9	9	100
- 임금채권보장기금	6,075	5,149	△926	△15.2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336	7,891	555	7.6
- 정보통신진흥기금	0	122	122	100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1,146	21,505	359	1.7
- 청소년육성기금	31	0	△31	△100
- 축산발전기금	15	0	△15	△100
- 한강수계관리기금	21	0	△21	△100
합 계	303,481	292,935	△10,546	-3.5

주: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5) 유형별 현황

① 총괄 현황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 총액은 29.3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가량 감소(△3.5%)하였다. 7개 유형 중 3개 유형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4개 유형은 감액 편성되었다.

먼저, 전년 대비 증가분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유형은 전년 대비 3,334억원 증가(10.3%)한 3조 5,578억원이 편성되었고, 창업지원 유형은 1,203억원 증가한 3조 2,687억원(3.8%),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은 711억원이 증가하여 1조 380억원(7.4%)이다.

다음으로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7,933억원 감소(△15.7%)하여 4조 2,701억원이 편성되었고,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은 5,232억원 감소한 12조 9,172억원(△3.9%), 고용서비스 유형은 1,397억원 감소한 1조 6,348억원(△7.9%), 직업훈련 유형은 1,232억원 감액된 2조 6,069억원(△4.5%)이다.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증감	증감률	유형 비중
직접일자리	32,244	35,578	3,334	10.3	12.1
직업훈련	27,301	26,069	△1,232	△4.5	8.9
고용서비스	17,745	16,348	△1,397	△7.9	5.6
고용장려금	50,634	42,701	△7,933	△15.7	14.6
창업지원	31,484	32,687	1,203	3.8	11.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4,404	129,172	△5,232	△3.9	44.1
지원고용및재활	9,669	10,380	711	7.4	3.5
합계	303,481	292,935	△10,546	△3.5	100.0

주: 1. 유형 비중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 해당 유형의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의미
2.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4년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② 직접일자리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유형이다.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종전 공공업무지원,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4개 세부유형으로 구성되었던 직접일자리 유형을 2개 세부유형으로 간소화하였다. 노동시장이행형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단기(1년 이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고유업무(예: 지방자치법 제9조 등)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뜻하고, 사회봉사·복지형은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직접일자리 세부유형 간소화]

구분	2022년	2023년
직접일자리	공공업무지원, 소득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4개 세부유형	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 2개 세부유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34억원이 증액된 3조 5,578억원이 편성되었다(10.3%).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2조 176억원), 자활사업(6,595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5,461억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32,244	35,578	3,334	10.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조 176억원) - 자활사업(보건복지부, 6,595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5,46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17만 7,397명으로, 전년 본예산 기준 104만 3,711명에 비하여 13만 3,686명이 증가 (12.8%)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목표인원 현황]

(단위: 명,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1,043,711	1,177,397	133,686	12.8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103만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정안전부, 1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③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실업자 및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직업훈련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32억원 감액된 2조 6,069억원이 편성되었다 (△4.5%).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1조 2,806억원)⁵⁾, 사업주직업 훈련지원금(3,568억원) 등이 있다.

직업훈련 유형에서는 국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보편적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는 전년 대비 471억원 증액되었으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년 대비 1,497억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축소되었다. 그 외에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95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463억원) 등 사업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다.

5)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이 이분화되어 있으며, 양자를 합산한 금액임

[2024년도 직업훈련 유형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27,301	26,069	△1,232	△4.5	• 내일배움카드(고보)(고용노동부, 7,332억원) • 내일배움카드(일반)(고용노동부, 5,474억원) • 사업주훈련지원금(고용노동부, 3,568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④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는 직업상담·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탐색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도 고용서비스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97억원(△7.9%) 감액된 1조 6,348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8,656억원)와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375억원) 사업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2021년 사업 실시 이후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목표 인원을 현실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예산안이 2023년 대비 2,783억원 감액(△24.3%)되었다.⁶⁾

[2023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17,745	16,348	△1,397	△7.9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8,656억원) •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고용노동부, 2,375억원) • 해외취업지원(고용노동부, 575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6)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경우 목표 인원을 2023년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하향하였고, II 유형의 경우 7만명에서 6만명, 일경험프로그램의 경우 1.7만명에서 1.5만명으로 목표치를 조정하였다.

⑤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세부 유형으로 고용창출형, 고용유지형, 고용안정형 및 모성보호형으로 나뉜다.

[고용장려금 세부유형]

종류	내 용
고용창출형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사업
고용유지형	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안정형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모성보호장려금	출산·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3

2024년도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33억원(△15.7%) 감액된 4조 2,701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2조 4,943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6,49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인력유입인프라조성(1,217억원) 등이 있다.

고용장려금 유형이 감액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확대되었던 일부 한시사업 또는 지원사업들이 축소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종료되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역시 2024년도 잔여 소요 171억원을 편성하고 2,123억원을 감액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확대되었던 고용유지 지원금도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260억원 감액되었다. 그 외에도 청년내일 채용공제 사업의 경우, 2023년도부터 가입 요건이 제한되는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4,206억원이 감액되어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⁷⁾

[2024년도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50,634	42,701	△7,933	△15.7	•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24,943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고용노동부, 6,490억원) •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벤처기업부, 1,21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⑥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창업지원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3억원(3.8%) 증액된 3조 2,687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기업자금(용자) (1조 9,458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3,411억원), 민관협력창업자육성(2,065억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신규로 창업지원 유형에 포함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294억원), 비즈니스지원활성화(5억 6,900만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창업지원 유형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31,484	32,687	1,203	3.8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중소벤처기업부, 19,458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 3,411억원) • 민관협력창업자육성(중소벤처기업부, 2,065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7) 2022년까지는 기업 범위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었으나, 2023년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제조업·건설업'으로 범위가 축소되었고, 대상인원 규모 또한 2022년 7만명에서 2023년 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4,206억원의 감액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1400억원 감액),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2,80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⑦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실업자에게 현금급여 등을 통해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실업급여 등 구직지원, ② 사회보험료 지원, ③ 기업 도산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4년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사업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32억원(△3.9%) 감액된 12조 9,172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10조 9,144억원) 및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8,369억원)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 사업(10조 9,144억원)이 전체 실업소득 유지·지원 유형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도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 유형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134,404	129,172	△5,232	△3.9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109,144억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고용노동부, 8,369억원) • 대지급금지급(고용노동부, 4,74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⑧ 지원고용 및 재활

지원고용 및 재활은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일자리사업과의 단순비교를 지양하기 위해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1억원(7.4%) 증액된 1조 380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3,234억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2,480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2,227억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B-A	(B-A)/A	주요 사업
9,669	10,380	711	7.4	•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3,234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고용노동부, 2,480억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부, 2,22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안 사업분류 적정성 검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중 일자리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 운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사업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일자리예산으로 포함시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취업 지원을 위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8)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조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 마련,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 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부처 운영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적·예산서·운영지침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에 대한 결과 보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다수 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제5항).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하도록 평가제도를 강화하였는바, 부처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매년 별도로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수행 부처가 소관 일자리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 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부처·청과 일자리사업 해당 여부, 유사·중복 여부, 일자리사업 유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의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의 예산안이 심의·확 정된 후 12월 경에 이루어지게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선정 절차]

- 사전협의 절차
 - (협의요청) 부처(청) 대상, 사전협의 안내 통보 후 신설·변경 등이 발생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실시
 - (협의진행) 해당 부처(청)와 일자리사업 해당 여부, 유사·중복 여부, 해당 유형*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자·지원, 지원고용 및 재할
 - (결과통보 등) 사전협의 결과(익년도 일자리사업 포함 여부 등)를 해당 부처(청)에 통보
- (최종확정 등)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확정 후 일자리사업 최종 목록 확정됨(12월)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200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사업은 90개로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업이 추가로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⁹⁾

일자리사업 유형 중 직업훈련 유형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2023)에 따르면¹⁰⁾ 직업훈련 유형은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려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이직이 잦고 재직기간이 짧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실시되는 재직자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는 구직자 훈련,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일학습 병행 등의 세부 유형이 있다.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 부처가 편성한 내역사업 48개가 직업훈련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자리사업 해당 여부 및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기존 계속수행 사업이거나 부처가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주요 지침이지만 [붙임] 자료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각 유형과 의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판단기준」에 따른 직업훈련 유형

(재직자 훈련) 이직이 잦고 재직기간이 짧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직자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는 사업

* 특정분야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기(1년 이내)과정 수료 후 취업지원이 연계되는 경우(예: 연계기업 취업 제공 등)에만 구직자 훈련에 해당

* 상시근무가 곤란한 일부 특수직무(문화·예술·관광·건설 등)의 경우, 관련 경력자·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인 경우 구직자 훈련에 포함(MICE산학연계 일자리창출 등)

(일학습 병행)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지원 사업

* ① 기업은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교육 운영방법 설계

② 기업은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근로자(일학습 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③ 산업현장 전문가 등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도제자격 부여

자료: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2023

그런데 직업훈련 유형의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려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재취업지원 목적 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¹¹⁾ 동 기준에 해당됨에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사업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사업의 SW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산업부의 반도체인프라 활용 현장인력양성 등 다수 사업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훈련 제공 및 취·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직업훈련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예시로, 전문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연계목적 없이 전문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력양성 사업, 취업과 직접 관련 없이 전문분야·특정산업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대학 과정 운영, 대학 내 과정 개설, 학위취득·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들고 있는데, 다수의 인력양성 사업이 취창업 지원 연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편입 가능한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4예산
과 기 부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창업, 창작 및 취업연계 등 진로지원	1,040 (신규)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저변확대 (SW마이스터고 지원)	창의적 SW인재의 조기 육성을 위해 SW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SW마이스터고의 교육기반 조성 및 취업 지원	2,520
문 체 부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종사원 전문 역량강화)	관광산업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종사원 전문교육 실시	600
	예술의 산업화 추진(예술산업 인 력양성)	예술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입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정보 제공	1,900
	방송영상콘텐츠산 업육성 (방송영상콘텐츠산 업기반 조성)	플랫폼 및 매체의 다변화 등 방송영상콘텐츠 시장의 트렌드에 적응하여 창의적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17,901
산 업 부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장비를 보유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수요 기반의 재직자 대상 기술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채용 연계 교육 지원	5,013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6개소 운영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설계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지원	3,700
	통상협정국내대책 추진지원(FTA전문 인력양성)	중소기업의 FTA 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대학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무 교육 지원	1,186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4예산
해수부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일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를 대체하여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적으로 고용시 내·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차액의 일부(1인당 최대 15백만원)를 선사에 지원	450
중기부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등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거나, 지역 내 우수 대학-중소기업 연계를 통해 실무 경험을 습득한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활성화 지원	3436
	연수사업(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연수 과정 운영)	전국 6개 거점별 연수원에서 뿌리기술, 신산업·신기술, 지역특화, 인식개선, 기업가정신, 정책분야 등 민간교육기관이 기피하는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	17305
	마이스터고 육성(4차 산업혁명 분야 특화 교육 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및 후공정, 스마트팩토리, AI, 미래차 분야 특화교육과정 운영(실습실 및 개발실 환경구축, 위탁교육, 현장실습 등)	3,600
농림부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스마트팜 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 운영)	스마트팜 ICT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접목 활성화 및 기술력 제고	850

자료: 각 부처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향후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안 편성 시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유형별 기준¹²⁾에 부합하는 각 부처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고용노동부는 매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합동지침에 유형별 일자리사업 판단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29조 2,935억원 중 5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1%로 가장 높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55.2%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은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원에서 약 55~60%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대비 고용보험기금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일자리예산(A)	고용보험기금(B)	비중(B/A)
2019	212,374	123,672	58.2
2020	254,998	152,039	59.6
2021	305,131	186,044	61.0
2022	315,808	180,998	57.3
2023	303,481	166,436	54.8
2024(안)	292,935	161,804	55.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고용유지 사업이 속한 ‘고용장려금’ 유형 및 구직급여 사업이 속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의 각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과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실업급여 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사업,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는 신규고용 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기금에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적정규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의 적립배율¹³⁾은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¹⁴⁾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 계정의 경우 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하여 법정 적립배율 구간(1~1.5)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차입분을 제외하는 경우 적립배율은 0.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하더라도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1.5~2)을 하회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한 기금 전체의 누적 적립금은 △8,110억원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13) 적립 배율은 해당 연도 지출액 대비 각 계정별 연도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다.

14)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보험기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2		2023		2024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당초 계획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정부안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총계	수입(A)	187,621	178,153	179,832	179,832	188,245	188,245
	지출(B)	180,647	180,647	170,909	170,909	175,609	175,609
	재정수지 (A-B)	6,974	△2,494	8,923	8,923	12,637	12,637
	누적 적립금(C)	63,379	△39,670	72,302	△30,747	84,939	△8,110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135,675	131,207	139,566	139,566	147,109	147,109
	지출(B)	141,325	141,325	139,729	139,729	141,722	141,722
	재정수지 (A-B)	△5,650	△10,118	△163	△163	5,387	5,387
	누적 적립금(C)	36,953	△40,255	36,790	△40,418	42,177	△35,031
	적립금 배율(C/B)	0.3	△0.3	0.3	△0.3	0.3	△0.2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입(A)	51,696	46,696	39,865	39,865	40,767	40,767
	지출(B)	39,182	39,182	31,049	31,049	33,693	33,693
	재정수지 (A-B)	12,513	7,514	8,816	8,816	7,073	7,073
	누적 적립금(C)	25,658	△183	34,474	8,633	41,547	25,706
	적립금 배율(C/B)	0.7	0.0	1.1	0.3	1.2	0.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2024년(안)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9.3조원을 차입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이 총 1.6조원, 실업급여 계정이 총 7.7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이자는 2023년 1,720억원,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1,641억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공자기금 예수원금 10.3조원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1.0조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 연도별 상환 및 이자지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계	93,049	46,997	46,584	9,468	-	△10,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5,841	13,997	6,844	5,000	-	△10,000
실업급여	77,208	33,000	39,740	4,468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일상회복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규모 조정 및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충당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일자리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 등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요 법정지출 사업에서의 반복수급·부정수급 문제 완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의 일반회계 이전, 기금사업의 규모 적정성 평가, 고용보험 가입자 및 지급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실집행이나 실적이 저조한 기금 사업의 감액 기준 명확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다.

(3) 인력양성사업 평가의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의 활용 필요

현재 실시되는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평가 결과의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의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2024년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평가 사업의 향후 수행 주체 및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동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평가와 직업훈련 사업과의 비교, 유형 분류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유형은 2023년 평가 대상 사업에서는 내역사업 51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내역사업 48개가 지정되어 있다. 48개 사업 중 고용노동부 사업이 18개로 가장 많고, 타 부처의 사업도 30개가 지정되어 있다.

[2024년도 예산안 직업훈련 유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2022	2023	2024	사업 수
교육부	100,093	108,988	113,80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980	34,477	28,108	5
법무부	510	510	510	1
문화체육관광부	12,133	6,109	10,350	5
농림축산식품부	8,000	8,000	8,000	1
산업통상자원부	27,559	14,359	9,438	6
환경부	0	17,614	17,718	1
고용노동부	2,201,745	2,479,152	2,364,103	18
여성가족부	22,575	21,425	21,731	1
국토교통부	2,614	2,614	680	1
해양수산부	600	550	550	2
중소벤처기업부	37,650	34,390	30,173	2
식품의약품안전처	1,030	1,030	932	1
방위사업청	865	833	833	2
행정안전부	41,543	0	0	0
총합계	2,478,897	2,730,051	2,606,926	48

주: 사업 수는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수행한 「중양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¹⁵⁾에 따르면, 부처 인력양성사업이 225개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직업훈련 유형으로 지정되는 사업은 이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전 부처·청에서 실시하는 인력양성 사업 중 재직자 훈련이나 구직자 훈련 등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사업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처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정과 유형 분류, 그리고 나아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정부 부처 인력양성 사업 간의 유사·중복성 판단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¹⁷⁾

[중양부처 인력양성사업 선정기준]

구분	고려항목	선정기준
형식 요건	훈련예산	훈련예산 1억원 이상 사업
	훈련인원	연간 훈련(목표)인원 10명 이상 사업
	훈련대상	공공 외 민간인력 대상 사업 ※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이 혼합된 경우, 인원·예산을 분리 가능한 경우 포함
내용 검토	학위·비학위(형식학습)	고등교육 학위과정 중 정책 및 수요 반영 관련 운영사업, 비학위과정 중 직무능력향상·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
	형식학습 외 (멘토링/인턴십/연구지원/창업/해외연수/경진대회등/자격검정)	사업 목적 중 ‘인력양성’,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며, 취·창업, 특정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
	인프라지원 등 (기관운영지원/기업지원/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취·창업, 특정분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한 사업
	기타 지원사항(비용지원)	생계지원이 아닌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15) 「2021년 중양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1.9.3.

16) 이와 같은 사업의 예시는 앞선 “(2) 재정지원 일자리예산안 사업분류 적정성 검토” 참조.

17)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2023년 중양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재정으로 운영중인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요 이슈를 발굴, 심층조사·분석을 통한 인력양성 트렌드(5대 신기술 분야 등) 이해 및 우수훈련 사례 등 발굴·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조사는 위 2021년 실태조사 보고서 이후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수집의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인력양성 사업 실태조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대신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 중에 있다. 동 사업은 2010~2014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수행하다가,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내역사업 등으로 명확히 예산이 분리되어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300, 일반회계) 세부사업¹⁸⁾에서의 심사평가 내역사업 중 ‘중앙부처사업평가’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2024년도 예산안은 편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이 수행하던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를 향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사업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9,520	19,469	18,394	△1,075	△5.5
심사평가	19,520	11,865	10,799	△1,066	△9.0
중앙부처 사업평가	1,758	324	-	△324	△100

주. 중앙부처사업평가 내내역사업의 예산이 전액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평가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타 사업의 평가 및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18) 해당 세부사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과정 및 훈련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훈련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평가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동 기관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추진계획이 불분명할뿐더러 현재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경우 매년 초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11월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평가 월별 추진일정]

절차	주요내용	추진시기
계획수립 등	•조사계획 수립, 예산서 확보*	1~3월
↓		
대상확정	•실태조사 대상 확정	4월
↓		
1차 조사	•인력양성 사업 분석 및 선정	4~7월
↓		
2차 조사	•사업별 세부조사(예산서, 온라인검색)	8~9월
↓		
조사결과 분석	•조사결과 취합 및 결과분석	10월
↓		
보고서 제작	•결과보고서 제작 및 발간	11월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은 2022년 실시한 인력양성사업평가에 대하여 전년도 11월에 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이를 2023년 9월 말까지 대외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년 10월 10일에서야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¹⁹⁾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대외 공개된 2022년 현황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명, 사업내용과 훈련기관, 훈련대상 등 기초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내용은 생략 또는 미기재된 부분이 많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훈련비나 훈련수당 등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소수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19)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된 데이터의 경우 시스템상 10월 말이 되어야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10월 10일 공개된 2022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모든 인력양성 사업은 354개 사업인데, 이 중 훈련기관에 대하여 자료가 미비한 사업이 47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보가 미기재된 사업이 20개, 훈련대상에 대하여 정보가 미기재된 사업이 29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종합하여 발간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서 역시 부실한 측면이 있다. 2022년 완료되었을 결과보고서(실태조사 자료집)²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예산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토대를 조사한 이후, 공고문·기사 등 온라인 조사를 통해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예산서를 수집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한 사례가 있어 자료의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예산서에 명시된 내역사업과 온라인 조사상 내역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조사자별 정성적 판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유추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다 보니, 조사자에 따른 추진 방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사업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신뢰성과 정확성을 이유로 대외 공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는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의 체계적인 활용은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사업의 향후 수행 주체 및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동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평가와 직업훈련 사업과의 비교, 유형 분류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별 세부 실태조사 결과뿐 아니라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및 총괄 현황, 그리고 시사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실업소득 및 유지 지원 유형에서의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 개선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정지출 사업인 구직급여에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문제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단속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업소득 및 유지 지원 유형은 분류된 사업 수는 적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등 주요 사회안전망 사업들이 밀집하여 있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동 유형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에 12조 9,172억원이 편성되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안의 4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유형에서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집행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체의 재원 배분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증감	증감률	유형 비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4,404	129,172	△5,232	△4.0	44.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303,481	292,935	△10,547	△3.5	100.0

주: 1. 유형 비중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 해당 유형의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의미

2.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4년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그런데 동 유형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와 같이 집행에서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구직급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²¹⁾ 또한,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

21)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실직에 따라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반복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2019명 8만 6천명, 총 지급액은 3,489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0만 2천명, 4,98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8월 기준으로 8만 4천명, 4,068억원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반복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회 이상 반복수급액은 전체 구직급여 수급액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단위: 천명, 억원, %)

연도		전체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3회	4회	5회이상
'19	지급자수	1,443	1,075(74.5)	282(19.6)	86(5.9)	58(4.0)	15(1.0)	13(0.9)
	지급액	80,870	63,790(78.8)	13,642(16.9)	3,489(4.3)	2,508(3.1)	550(0.7)	431(0.5)
'20	지급자수	1,703	1,283(75.3)	327(19.2)	93(5.5)	65(3.8)	16(0.9)	13(0.7)
	지급액	118,504	93,869(79.2)	19,836(16.7)	4,800(4.1)	3,556(3.0)	735(0.6)	509(0.5)
'21	지급자수	1,774	1,329(74.9)	345(19.4)	100(5.7)	71(4.0)	17(0.9)	13(0.7)
	지급액	120,578	95,466(79.2)	20,123(16.7)	4,989(4.1)	3,728(3.1)	755(0.6)	507(0.4)
'22	지급자수	1,631	1,194(73.2)	334(20.5)	102(6.3)	72(4.4)	17(1.1)	13(0.8)
	지급액	109,083	84,990(77.9)	19,107(17.5)	4,986(4.6)	3,681(3.4)	783(0.7)	522(0.5)
'23 8	지급자수	1,337	967(72.3)	286(21.4)	84(6.3)	61(4.6)	13(1.0)	10(0.7)
	지급액	78,529	59,285(75.5)	15,176(19.3)	4,068(5.2)	3,040(3.9)	608(0.8)	420(0.5)

주. 당해연도 수급자가 마지막 지급일 기준 5년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반복수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거나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안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 1)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2)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19)

다만, 수급액의 감액이나 대기기간 연장 등 외에 다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복수급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반복하여 실업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차례의 반복수급의 경우 농림어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이 있고, 연령층에 따라서도 반복수급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²²⁾ 업종과 소득 수준, 연령 등에 따른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행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 각 사업의 부정수급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

22) 한국노동연구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2020

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3,786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고 부정수급액은 266억원이다. 실업급여 환수액은 2019년 361억원이었다가 2022년 430억원으로 증가하였다.²³⁾

[구직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부정수급 자진신고	
				건수	금액
2019년	21,866	19,526	39,850	8,614	4,334
2020년	24,154	23,593	43,841	11,887	6,045
2021년	25,664	28,102	49,949	13,299	7,787
2022년	23,786	26,617	51,101	11,990	6,582
2023.8월	15,407	19,667	39,278	6,270	3,804

주: 1. 반환명령액은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값임

2. 자료 추출시점에 따라 부정수급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실적은 변동될 수 있음((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동일)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이와 같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정지출 사업인 구직급여에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문제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단속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 실업급여 환수액은 2019년 361억원, 2020년 382억 900만원, 2021년 430억 7,400만원, 2022년 430억 1,200만원, 2023년 8월 기준 285억 2,200만원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5) 평가결과의 항목별 평가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실집행 평가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의 항목별 평가 점수가 배점에도 불구하고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항목별 사업 평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실집행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 적정성 판단이 곤란하므로 항목별 점수 공개 및 실집행을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는 2022년 실시된 사업 수행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실시된('23.6.) 평가로, 이에 따르면 2023년도 평가에서는 총 222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하여 등급이 부여되었으며,²⁴⁾ 이 중 15개의 사업이 우수 등급을, 20개 사업은 감액 등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행(2023년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등급별 사업 현황]

(단위: 개)

유형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등급대상	평가대상
직접일자리	4	20	10	4	38	42
직업훈련	4	26	12	6	48	51
고용서비스	2	22	8	4	36	42
고용장려금	3	14	6	3	26	31
창업지원	2	11	5	3	21	24
계	15	93	41	20	169	222

주: 사업 수는 내역사업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 원칙상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하도록 재정당국에 성과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그 결과 2023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20개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모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종료 사업 등 제외).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제도가 단순히 사업의 등급 분류뿐 아니라 나아가 재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4) 2022년 평가(전년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19개, 장애인 유형 19개, 실업소득유형 13개에 대해서는 지침상 등급을 미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감액 등급 사업 2024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개)

감액 등급 사업	감액 편성	증액	전년동	2023년 종료
20	12	0	0	8

주: 사업 수는 내역사업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이와 같은 규모 적정성 판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집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세부계획」(‘22.12.)를 수립하여 2023년 평가부터 정량지표 내 집행률을 고려하던 것을 실집행률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량평가에 포함되어 있던 집행률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배점 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예: 75%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감액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침에 명시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개요]

- 평가방식: 집행률(10), 정량(45) 및 정성평가(45)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등급 산출

 - (집행률) 정량평가에 포함되어 있던 집행률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배점 10점 부여
 - * 다만,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예: 75%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감액 등급 부여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실집행을 강조하여 적정성 관리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건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먼저 지침상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감액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23년도 성과평가에서는 여러 사업이 75% 이하의 부진한 실집행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아닌 등급을 판정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성과평가를 받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세부지침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실집행률을 나타낸 사업은 19개이다. 이 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이나 ‘지원 고용 및 재할’ 사업은 특성상 지침에서 평가 등급을 미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들을 제외하면 13개 사업이 평가 등급을 받았다.

[2023년 평가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실적행 75% 미만 사업]

(단위: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유형	실 집행률	2023년 평가결과	2024년도 예산안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직업훈련	72.2	감액	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52.9	개선필요	감액
내일배움카드(고보)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직업훈련	62.5	양호	전년동
내일배움카드(일반)	평생크레딧 (K-Digital Credit)	직업훈련	46.5	양호	전년동
내일배움카드(일반)	평생크레딧 (중장년새출발크레딧)	직업훈련	5.1	감액	감액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직업훈련	64.7	감액	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고용서비스	66.8	개선필요	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고용서비스	60.1	개선필요	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고용서비스	55.6	개선필요	증액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장려금	38.4	감액	감액
노동전환지원	노동전환지원금	고용장려금	2.0	감액	감액
노동전환지원	사업전환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고용장려금	16.8	양호	전년동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용장려금	43.0	양호	감액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가사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7.6	등급 미산정	감액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7.3	등급 미산정	감액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 장려금	지원 고용 및 재활	66.9	등급 미산정	감액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지원 고용 및 재활	38.0	등급 미산정	감액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 및 재활	73.8	등급 미산정	증액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지원 고용 및 재활	58.9	등급 미산정	전년동

자료: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2022년 43%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는데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동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량지표(참여 근로자 현황, 참여 사업장 수, 고용증감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 공개된 평가보고서에서는 각 항목별 점수가 게시되어 있지 않고, 정량지표 중 고용증감률은 18.3%로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 28.3%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²⁵⁾ 어떠한 측면에서 낮은 실효성을 상쇄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전환지원(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의 경우 실효행률은 16.8%로 매우 낮았으나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 정량지표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산출 불가'하여 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정성지표별 평가를 받았으나 어떤 항목에서 '양호'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운영성과는 낮은 것으로 보이나 운영의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배점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동 사업의 수행 결과 실제로 양호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실효행률에도 불구하고 양호 등급으로 결정된 구체적인 근거가 평가보고서상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각 항목별 배점과 실효행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보고서의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연도별 배점]

	2020년 (개편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성지표	0점	30점	40점	45점
정량지표	100점 ※집행률 포함	70점 ※집행률 포함	60점 ※집행률 포함	45점 ※집행률 미포함
집행률	-	-	-	10점
총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세부계획, 2023

25) 다만, 동 사업에서의 고용증감률은 참고용 지표로서 등급 산정 시 정량지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또한, 실집행률 역시 현재로서는 75%의 예시적인 기준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로 실집행률이 어떻게 점수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고로, 연도별로 발간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경우,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계약 관행의 개선,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등 각 평가 지표별로 A, B, C 등급 판정 결과를 모두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기금사업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사업의 총점과 각 항목별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지표별로 사업의 양호한 점과 미흡한 점을 적시하고 있다.

[항목별 평가 결과 공개 사례]

구분	평가 결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한국잡월드: 총점 C 지표1(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B0 지표2(계약 관행의 개선) B0 지표3(바람직한 모·자회사 구축) C 지표4(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개선) D+ 지표5(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 및 지원) C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2.9 (미흡) 지표1(사업계획적정성) 8.5점 지표2(집행의 효율성) 12.4점 지표3(성과 달성도) 38.5점 지표4(성과 우수성) 5.5점 지표5(환류 및 개선 노력) 7점

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최종보고서(2023.4.),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2023.5.)

특히 집행률이 아닌 실집행률을 지표로 삼아 별도의 배점으로 분리하여 2023년도 평가부터 실시한 것은,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 수행 간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집행률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목별 점수 공개와 실집행률의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1) 개요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 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을 지속 견지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특히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발굴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재정정상화 작업을 바탕으로 확보된 재원을 ①약자복지 강화, ②미래준비 투자, ③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보강하고,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사회 안전망’ 및 ‘복지체계’ 강화가 포함되었는데, 먼저 ‘사회 안전망’ 강화 과제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고용·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별로 ①저소득층, ②장애인, ③노인, ④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복지체계’ 강화 과제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취업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로는 ①다문화·한부모 가족, ②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③의료사각지대 등 3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허아름 예산분석관(liebe89@assembly.go.kr, 6788-3728)

[2024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과제 주요내용]

구분		주요 계획
사회 안전망	저소득층	• 생계급여 4인가구 162.0→183.4만원, 선정기준 상향(중위 30→32%)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47→48%)으로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 교육급여 급여액 11.1% 인상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1.3만명), 조기취업수당신규 도입으로 민간취업 촉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0.2만개) •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접근권과 의료인프라 확충
	노인	• 노인일자리 +14.7만개 확대, 수당도 6년만에 2~4만원 인상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
	소상공인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0.9조원) •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0.8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8만명) 지속 지원(+0.04조원)
복지 체계	다문화· 한부모 가족	•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직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취업역량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3.2만명)하고,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月 +5만원)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 (가족돌봄청년) 학습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 신규를 지원하고, 가족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 • (고립은둔청년)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소통훈련, 생활관리 등), 가족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업 신설(청년 320명, 가족 640명 지원)
	의료 사각지대	• (재난적 의료비)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0.8만명) • (의료 인프라)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장비 인프라 투자 확대

주: 기획재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분류를 기초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23.8.29.)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2024년도 예산안」(‘23.8.)에 제시된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2조 218억원이다. 그 중 사회안전망 강화에 51조 1,849억원, 복지체계 강화에 8,36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의 비중이 높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예산을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노인, ④ 소상공인 등 4개 과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과제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사업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9조 3,816억원, 장애인 관련 사업에는 전년대비 11.5% 증가한 4조 2,978억원, 노인 관련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2조 7,737억원,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전년대비 42.7% 증가한 4조 7,318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복지체계 강화 관련 예산의 경우, ① 다문화·한부모 가족, ②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③ 의료사각지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문화·한부모 가족 관련 사업에 전년대비 12.3% 증가한 6,559억원이 편성되었고,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151억원, 의료사각지대 사업은 1,659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46,289,771	52,021,814	5,732,043	12.4
사회 안전망	소 계	45,585,615	51,184,911	5,599,296	12.3
	저소득층	17,842,095	19,381,620	1,539,525	8.6
	장애인	3,854,897	4,297,755	442,858	11.5
	노인	20,572,429	22,773,731	2,201,302	10.7
	소상공인	3,316,194	4,731,805	1,415,611	42.7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본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복지 체계	소 계	704,156	836,903	132,747	18.9
	다문화·한부모 가족	584,266	655,899	71,633	12.3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5,290	15,076	9,786	185.0
	의료사각지대	114,600	165,928	51,328	44.8

주: 1. 기획재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분류를 기초로 작성

2.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23.8.)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각 소관별 사업 예산안 내역을 추가한 내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 상 예산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 및 「2024년 예산안」(23.8.)을 바탕으로 작성

각 유형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 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의무지출 사업이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사업 등이 있으며, 노인 지원 분야는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복지체계 강화 중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가족돌봄청년지원 시범사업,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업으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유형별 주요사업]

(단위: 억원)

구 분	2024 예산안	주요사업
사회안전망 강화	511,849	
- 저소득층	193,816	- 생계급여: 4인가구 162.0→183.4만원, 선정기준 상향(중위 30→32%)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 장애인	42,978	-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
- 노인	227,737	- 기초연금: 지원단가 인상(月32.3→33.4만원)
- 소상공인	47,318	- 소상공인 용자: 대환대출,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 지원
복지체계 강화	8,369	
- 다문화·한부모 가족	6,559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月 +5만원)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151	-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신규 추진
- 의료사각지대	1,659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질환별 의료비 산정 → 개인별 합산 방식) -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국가암관리(소아청소년암 전문 거점병원) 등 소아·응급 의료분야 지원 확대
합 계	520,218	

주: 1. 기획재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분류를 기초로 작성

2.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23.8.)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각 소관별 사업 예산안 내역을 추가한 내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 상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 및 「2024년 예산안」(‘23.8.)을 바탕으로 작성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42조 9,542억원으로 전체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예산안 중 대부분의 비중(83.9%)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3조 8,618억원, 국토교통부 소관 2조 7,424억원, 금융위원회 7,600억원, 고용노동부 5,961억원 등의 순이다.

[2024년도 예산안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비중	증감	
				B-A	(B-A)/A
합 계	45,585,615	51,184,911	100.0	5,599,296	12.3
보건복지부	38,988,079	42,954,193	83.9	3,966,114	10.2
중소벤처기업부	3,036,194	3,861,805	7.5	825,611	27.2
국토교통부	2,572,266	2,742,436	5.4	170,170	6.6
금융위원회	280,000	760,000	1.5	480,000	171.4
고용노동부	551,763	596,078	1.2	44,315	8.0
교육부	157,313	160,399	0.3	3,086	2.0
산업통상자원부	0	110,000	0.2	110,000	순증

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23.8.)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각 소관별 사업 예산안 내역을 추가한 내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 상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 및 「2024년 예산안」(23.8.)을 바탕으로 작성

다음으로, 복지체계 강화 관련 예산안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이 6,414억원으로 복지체계 강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1,115억원, 기획재정부 685억원, 교육부 156억원 등의 순이다.

[2024년도 예산안 복지체계 강화 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 처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비중	증감	
				B-A	(B-A)/A
합 계	704,156	836,903	100.0	132,747	18.9
여성가족부	577,516	641,388	76.6	63,872	11.1
보건복지부	63,136	111,464	13.3	48,328	76.5
기획재정부	56,754	68,451	8.2	11,697	20.6
교육부	6,750	15,600	1.9	8,850	131.1

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23.8.)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각 소관별 사업 예산안 내역을 추가한 내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 상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 및 「2024년 예산안」(23.8.)을 바탕으로 작성

사회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강화 관련 예산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조 6,697억원, 기금 5조 3,52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높으며, 기금 중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3조 8,6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양성평등기금이 6,403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5,961억원 등의 순이다.

[2024년도 예산안 복지체계 강화 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사업수
			B-A	(B-A)/A	
합 계	46,289,771	52,021,814	5,732,043	12.4	37
일반회계	42,014,489	46,669,699	4,655,210	11.1	18
기금	4,275,282	5,352,115	1,076,833	25.2	1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036,194	3,861,805	825,611	27.2	6
양성평등기금	577,516	640,299	62,783	10.9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51,763	596,078	44,315	8.0	3
전력산업기반기금	0	110,000	110,000	순증	1
복권기금	56,754	68,451	11,697	20.6	1
응급의료기금	53,055	68,043	14,988	28.2	4
국민건강증진기금	0	6,350	6,350	순증	1
청소년육성기금	0	1,089	1,089	순증	1

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23.8.)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각 소관별 사업 예산안 내역을 추가한 내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 상 예산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 및 「2024년 예산안」(‘23.8.)을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1)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사업 분석

2024년도 예산안 핵심과제 중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사회안전망 사업은 2023년 45조 5,856억원 대비 5조 5,993억원(12.3%) 증액된 51조 1,849억원이 편성되었다.

① 저소득층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32%), 및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48%),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급여액 11.1% 인상)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1조 5,395억원 증액된 19조 3,816억원이 편성하였다.

② 장애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1.5→12.4만명),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돌봄’ 사업과 고용노동부 소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1.3만명), 조기취업수당 도입에 따른 민간취업 촉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월 최대 40.3→41.4만원) 등을 위한 ‘소득·고용’ 사업,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 접근권과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의료’ 사업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조원 4,429억원 증액된 4조 2,978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소득·고용’ 관련한 노인일자리 증가(83.3→103.0만명) 및 수당 인상(2~4만원) 및 기초연금 인상(월 32.3→33.4만원)과, ‘돌봄서비스’ 사업은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확대 되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2조 13억원 증액된 22조 7,737억원이 편성되었다.

④ 소상공인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경영부담’ 관련하여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 및 에너지 효율화와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 관련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상점·공방, e커머스 소상공인 지속 지원이 있으며, 2023년 대비 1조 4,156억원 증액된 4조 7,31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사회안전망 관련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재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안전망			45,585,615	45,585,615	51,184,911	5,599,296	12.3
저소득층			17,842,095	17,842,095	19,381,620	1,539,525	8.6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생계급여	6,014,148	6,014,148	7,541,072	1,526,924	25.4
		의료급여	9,098,368	9,098,368	8,937,713	△160,655	△1.8
국토 교통부	일반 회계	주거급여	2,572,266	2,572,266	2,742,436	170,170	8.6
교육부	일반 회계	교육급여	157,313	157,313	160,399	3,086	2.0
장애인			3,854,897	3,854,897	4,297,755	442,858	11.5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발달장애인 지원	256,886	256,886	356,739	99,853	38.9
		장애인활동 지원	1,991,879	1,991,879	2,284,604	292,725	14.7
		장애인연금	878,663	878,663	866,287	△12,376	-1.4
		장애아동 가족지원	175,706	175,706	194,047	18,341	10.4
고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 진및직 업재활 기금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232,998	232,998	248,006	15,008	6.4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	21,018	21,018	24,701	3,683	17.5
		장애인고용 장려금	297,747	297,747	323,371	25,624	8.6
노인			20,572,429	20,572,429	22,773,731	2,201,302	10.7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노인일자리	18,530,432	18,530,432	20,201,456	1,671,024	9
		기초연금	1,540,016	1,540,016	2,026,170	486,154	31.6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501,981	501,981	546,105	44,124	8.8

(단위: 백만원, %)

부처	재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2024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상공인			3,316,194	3,316,194	4,731,805	1,415,611	42.7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 인시장 진흥 기금	소상공인지원 (융자)	3,000,000	3,000,000	3,800,000	800,000	26.7
		소상공인 재기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00	5,000	15,008	10,008	200.2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신사업창업사관 학교/온오프라인 점포실습)	12,750	12,750	14,035	1,285	10.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강한소상공인성 장지원)	13,000	13,000	23,986	10,986	84.5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로컬크리에 이터 육성)	5,444	5,444	6,848	1,404	25.8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0	0	1,928	1,928	순증
		금융 위원회	일반 회계	한국자산 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280,000	760,000
산업 통상 자원부	전력 기금	전력효율향상 (소상공인)	0	0	110,000	110,000	순증

주: 합계액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의 전체 합계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서 취합하여 작성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주요사업 중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예산이 일부 과다 편성된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면밀한 추계를 기반으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저소득층 지원]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사업¹⁾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5,269억 2,400만원이 증액한 7조 5,41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생계급여는 2024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6.09% 인상 및 선정기준을 2%p 상향하여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2024년 수급자 수 증가에 대한 추계 방식에 한계가 있어, 2023년 8월 말 기준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는 119만 1,882가구로 2024년 예산상 편성 인원인 118만 2,409가구²⁾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계급여는 이용가능한 최신 정보를 활용하고, 추계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및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³⁾

②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저소득층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사업⁴⁾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0억 9,300만원 증액된 4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 2024년 연평균 수급가구 및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가구 미포함

3)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35~40 참조

4) 코드: 일반회계 1535-309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사업은 '21~'23년 목표 대비 실적은 평균 61.1%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3년 대비 '24년 사업 규모를 3배가량 확대 하였으며, 사업 대상에 대한 추계 시 실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실적과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사업은 '24년 1인당 예산 단가 산출 시 '20년 재가의료급여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부정확한 예산 편성을 실시하였으므로 현행 재가의료급여 지원기준에 따른 1인당 단가 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 단가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⁵⁾

[노인 지원]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⁶⁾ 사업은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61억 5,400만원이 증액된 2조 26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2024년 수요조사 대비 사업 물량을 9.4% 확대하였으므로 일자리 유형별 신청 추이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사업 중도 포기율은 평균 10.6%,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1,400건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사업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⁷⁾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⁸⁾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100억 800만원(200.2%) 증액된 150억 800

5)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80~86 참조

6) 코드: 일반회계 2139-302

7)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29~34 참조

8)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역사업

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자부담이 면제되는 등 전반적인 자부담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를 낮게 선택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자영업자의 책임성 제고의 필요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비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환대출¹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특별경정자금 내역사업 내에 신설·운영되었던 사업으로,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차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대환대출 사업은 2022년도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대출실행연도에 대위변제재원에 금액(대출공급액의 22%)을 은행에 즉시 지급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계획안은 2.5배인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정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¹¹⁾

③ 세부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 감액 필요

[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의 최종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¹²⁾은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종증 발달장애인 참여 가능하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최종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404억 8,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최종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최종증 발달장애인 정의, 최종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등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아직

9)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10., pp.285~289 참조

10)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1-301의 내역사업

11)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10., pp.259~268 참조

12) 코드: 일반회계 1535-309

사업 인력 및 제공기관 선정기준 등 사업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설정하지 않아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지원 사업은 사업 제공기관 및 대상자 모집,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현행 12개월치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¹³⁾

(2) 복지체계 강화 주요사업 분석

2024년도 예산안 핵심과제 중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의료사각지대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2023년 7,042억원 대비 1,327억원(18.9%) 증액된 8,369억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716억 3,300만원 증액된 6,55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다음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관련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 내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내에 은둔고립청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되고,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생활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확대될 예정으로, 총 15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지원의 경우, 2023년 예산 대비 513억 2,800만원 증액된 1,659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복권기금,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사업,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 국가암관리 사업(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17~21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복지체계 관련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재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다문화·한부모 가족			584,266	655,899	71,633	12.3
여성 가족부	양평 기금	한부모가족	495,900	535,595	39,695	8.0
		자녀양육비 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1,616	104,704	23,088	28.3
교육부	일반 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6,750	15,600	8,850	131.1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5,290	15,076	9,786	185.0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	2,094	2,094	순증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	1,309	1,309	순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족돌봄청년 생활사회서비스)	5,290	10,584	5,294	100.1
여성 가족부	청소년 육성 기금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1,089	1,089	순증
의료사각지대			114,600	165,928	51,328	44.8
기획 재정부	복권 기금	재난적의료비 지원	56,754	68,451	11,697	20.6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재난적의료비 지원	3,791	16,984	13,193	348.0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1,000	6,100	5,100	510.0
	응급 의료 기금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23,709	29,876	6,167	26.0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5,230	7,800	2,570	49.1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155	4,655	4,500	2,903.2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3,961	25,712	1,751	7.3
	국민 건강 증진 기금	국가암관리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	6,350	6,350	순증
복지체계 합계			704,156	836,903	132,747	18.9

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23.8.) 보도자료와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각 소관별 사업 예산안 내역을 추가한 내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보도자료 상 예산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 및 「2024년 예산안」(23.8.)을 바탕으로 작성

복지체계 강화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는 등 예산의 절감 여지가 있는 사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례, 각 부처별로 편성된 사업들 간의 유사·중복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

①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¹⁴⁾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억 5,0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으로 성격으로 신규 추진(6개월 지원)한 이후, 2023년부터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2022년 38.7%, 2023년은 8월말 기준 57.9% 수준이며, 목표 대비 실제 지원률 또한 2022년 43.0%, 2023년 8월말 기준 31.5%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며, 최근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적정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¹⁵⁾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¹⁶⁾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및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총 13억 9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립·은둔 청년(19~34세) 및 그 가족 대상으로 2024년에는 총 96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선정하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4) 코드: 일반회계 2332-321의 내역사업

15)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285~289 참조

16) 코드: 일반회계 2254-431의 내역사업

그러나 현재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동 사업을 통한 지원 대상 규모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담당 인력이 관련 유사 사업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정확한 규모 파악에 근거한 대상 발굴 및 인력 기준 마련 등 사업 초기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10개월로 편성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의료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¹⁸⁾은 만성적인 적자로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월)에 근거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 및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2023년 10억원 대비 51억원 증액된 6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과 2023년 이후 신규 지정된 기관 등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항목별 실제 필요 소요비용, 현재까지 지원 받은 기관 및 향후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⁹⁾

[의료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²⁰⁾은 소아전문응급센터 또는 소아전문응급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국고보조율 100%)하는 것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7,000만원 증액된 78억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의 업무 부담 가중, 인건비 인상 폭에 비해 낮은 1인당 평균 지원단가, 정부 지원금의 상한액 기준에 따른 추가 채용 유인 부족 문제 등²¹⁾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추가 확보를 통한 의료진

17)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46~52 참조

18) 코드: 일반회계 2740-307

19)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107~113 참조

20) 코드: 응급의료기금 2833-303의 내역사업

부담 경감 및 소아응급의료체계 인프라 유지를 위해 2024년부터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정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집행률이 2020년 66.2%, 2021년 66.2%, 2022년 67.5%로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최종 지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정을 포기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확대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²⁾²³⁾

②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청년개발 정책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²⁴⁾의 내역사업인 **가족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의 상황 속 청년 본인의 미래 준비·자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 및 자기돌봄을 위한 지원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20억 9,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되는 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관련 인력(돌봄코디네이터) 관리체계 등 사업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자기돌봄비 지원 요건이나 방식 등 세부적인 지급 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²⁵⁾

21)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소아환자 쏠림 등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존 인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아·응급 의료진의 인건비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방식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지원단가가 5,000만원에서 8,300만원 수준으로 낮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지원 금액에 상한이 존재하여 병원 입장에서 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전문의 2명 포함 전담의 총 4명)을 초과하여 전문의를 추가 채용할 유인이 부족하였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2)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개소당 6명씩 총 12명의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예산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나,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전담전문의 채용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137~143 참조

24) 코드: 일반회계 2537-303

25)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43~45 참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여성가족부의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²⁶⁾은 우리사회 은둔·고립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의 예산 10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은둔·고립 청소년(9~24세) 및 보호자 등 가족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 수혜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사업 계획에 따라 대상자 발굴부터 개인별 사례 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수혜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등 사업 전달체계의 유효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⁷⁾

[의료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의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²⁸⁾은 야간 시간대나 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를 통해 소아경증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야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²⁹⁾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억원 증액된 4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 기준³⁰⁾을 강화하고, 세부 지원방식 및 평가 등에 관한 계획을 조속히

26) 코드: 일반회계 2254-431의 내역사업

27)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290~293 참조

28) 코드: 응급의료기금 2833-303의 내역사업

29) 보건복지부는 2023년까지 야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기관당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전제환자 중 소아환자 비율 및 건수, 주변 종합병원과 협약체결 여부, 야간·휴일의료서비스 제공시간, 인력투입 가능성 등

마련할 필요가 있다.³¹⁾

[의료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의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³²⁾은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소아암 진료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아암 환자·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 및 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암 진료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거점병원³³⁾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병원별 의료인력 인건비 및 사업단 운영비 등 총 6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하지만 현재 소아청소년암 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既 선정된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거점병원별 의료인력의 확보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소아암협회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력 확보 가능성과 채용절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³⁴⁾³⁵⁾

31)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144~147 참조

32)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2756-301의 내역사업

3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내 의료기관 중 기존의 정부 지원 공공의료 수행기관(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지역암센터 등)으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가능하며,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중심으로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既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4)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입장이다.

35)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168~172 참조

③ 각 부처별로 편성된 사업의 유사·중복가능성 검토 필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방문학습,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소통훈련, 생활관리 등), 가족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보건 복지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	267	3,689	3,422	1281.6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	-	1,309	1,309	순증
여성 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66,936	72,596	72,073	△523	△0.7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	1,089	1,089	순증
문화체육 관광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8,260	21,316	19,447	△1,869	△8.8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	4,955	7,655	8,979	1,324	17.3
	문화로 사회연대	-	-	1,900	1,900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³⁶⁾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및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총 13억 9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³⁷⁾은 우리사회 은둔·고립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의 예산 10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36) 코드: 일반회계 2537-303의 내역사업

37) 코드: 일반회계 2254-431의 내역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³⁸⁾은 정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19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편성된 각 사업별 지원 대상이나 사업 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보건복지부 사업과 여성가족부 사업 모두 지역별로 고립·은둔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체계 및 지원 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의 경우, 은둔, 사회적 단절 위기에 있는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나,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중 사회관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추진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다음으로, 각 사업별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은둔·고립 청년(19~34세) 및 가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은둔·고립 청소년(9~24세) 및 보호자 등 가족으로 지원 대상의 연령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보건복지부, 읍면동 단위) 및 지역 협업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으로, 상호간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38) 코드: 일반회계 1531-306의 내내역사업

[각 부처별 고립·은둔 청년 지원 관련 사업 비교]

구분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은둔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문화로 사회연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세부사업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체계 기반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 축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 산 지원
사업목적	고립·은둔 청년 맞춤 형 지원을 통해 사회복 귀 지원 및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우리사회 은둔·고립 청소년이 심리적·사회 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 하고, 건강한 미래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은둔·고립에 처할 위 기에 있는 정서적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활용 심리지원·문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사회 통합 및 안정 에 기여
수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자체	지자체	공모
사업내용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 프로그램 운 영 등 사례관리 제공· 연계, 사후관리 등 원 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은둔·고립형 청소년의 선제적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 원까지 이어지는 원스 톱 지원체계 구축·운 영	문화·인문자원 활용 문화케어 프로그램 운 영
지원대상	고립·은둔 청년 (19~34세) 및 그 가족	고립·은둔 청소년(9~24 세) 및 가족	은둔, 사회적 단절 위 기에 있는 정서적 취약 계층 * 희망복지지원단(복지 부, 읍면동단위) 및 지역 협업 기관과 협 력하여 발굴,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활용 한 발굴

자료: 각 부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23. 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로 편성한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동 사업들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의 중복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80~203 비공개)

가. 현 황

(1) 개요

재난안전 사업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¹⁾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법률상 규정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사업경계가 명확하나, 안전관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사업경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은 동법 제10조의22)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 재정사업의 예산안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제10조의2에 따라 매년 이전 연도에 추진된 재난안전관리 사업 중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며, 관계기관이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재난안전사업평가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평가점수와 등급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부여하면,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각 부처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확정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차년도 재난안전예산안 사전협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평가결과를 최대 35%까지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평가결과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를 총괄적으로 조정 및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기반으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에 따라 2024회계연도의 재난안전사업이 결정되면,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재난안전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기관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그리고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기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과정, 그리고 이후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수립한다. 수립된 사전협의안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6월까지 「재난안전법」 제10조의2제3항3)에 따라 통보하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통보받은 사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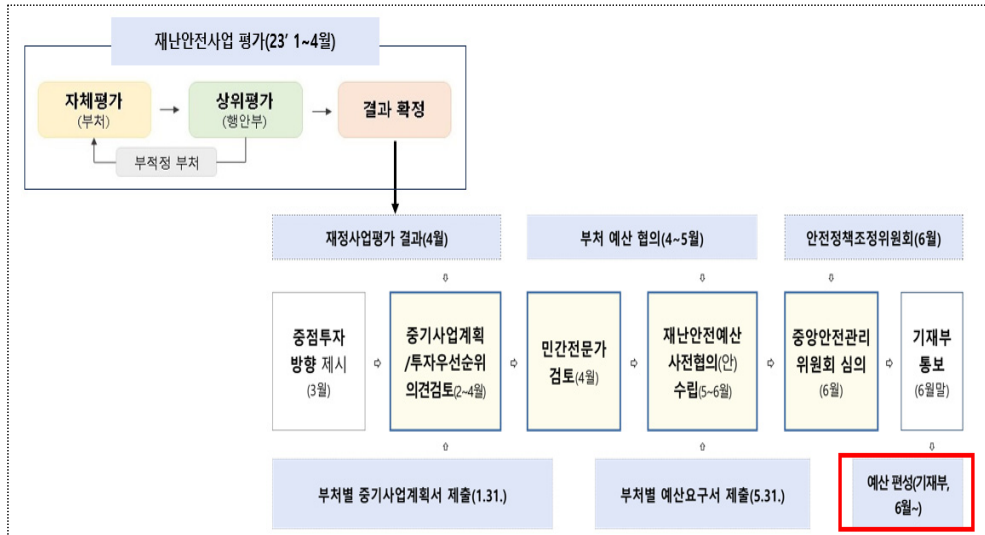
3) 「재난안전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한 예산편성 연계과정]



(2) 최근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동해안 산불 및 이태원 참사, 2023년 산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고,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왔다.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2022년 12월 대설에 의한 피해가 심각했던 전라북도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2020-202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구분	재난·피해내역		선포일	특별재난지역
사회 재난 · 사고	2020	코로나19	3.15.	대구광역시, 경북(경주시, 청도군, 봉화군)
	2022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3.6.	울진, 삼척
			3.8.	강릉, 동해
		이태원참사	10.30.	서울 용산구
	2023	4월 산불	4.5.	대전서구, 옥천, 홍성, 당진, 금산,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자연 재난	2020	7.28~8.11 호우	8.7.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음성· 제천, 충남 아산·천안
			8.13.	전남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 장성·함평·화순, 전북 남원, 경남 하동·합천
			8.24.	20개 시군구 19개 시군구의 36개 읍면동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9.15.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9.23.	강원 강릉·인제·고성, 경북 포항·경주 9개 시군구의 19개 읍면동
	2021	7.5~8일 호우	7.22.	전남 장흥·강진·해남, 진도(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제2호 태풍 오미스	9.6.	경북 포항
	2022	8.8.~17. 집중호우	8.22.	서울 영등포·관악·강남(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양평·여주(금사면·산 북면),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9.1.	서울 동작·서초, 경주 여주(시 전체) 의왕(고천동·청계동)·용인(동천동), 강 원 홍천, 충남 보령(청라면)
		제11호 태풍 한남노	9.7.	경북 포항·경주
			9.28.	울산 울주(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 (육지면·한산면)·거제(일운면·남부면)
	2023	12.17.~24. 대설·한파·강풍	1.9.	전북 순창(쌍치면)
		집중호우	7.23.	세종시 등 19개 시·군 및 21개 읍·면·동
		태풍카눈	8.15	군위, 고성, 경주, 철곡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는 이러한 자연·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난예방과 대응·복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4년 재난안전 재정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5,486억 9,300만원 증가한 25조 37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안(656.9조)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예산 추이를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14.6조원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1% 수준이다. 정부 예산(본예산) 대비 재난안전 사업의 비중은 3.6%에서 3.4%로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22년과 2023년에는 3.7%, 2024년 예산안에는 3.8% 수준으로 나타난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및 정부예산 대비 비중 추이(2017-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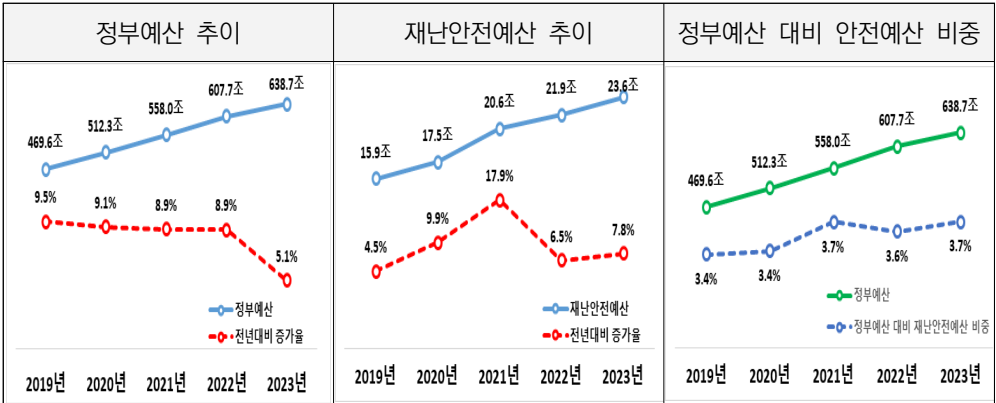
(단위: 개,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수	482	497	499	478	499	477	463	436
본예산	14.6	15.1	15.9	17.5	20.6	21.9	23.6	25.2
정부예산	400.7	428.8	469.6	512.3	555.8	604.4	638.7	656.9
정부예산 대비 비중	3.6	3.5	3.4	3.4	3.4	3.7	3.7	3.8

주: 2024년도 예산안은 9월 제출자료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2019~2023) 재난·안전사업예산 추이 및 증가율]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사업을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분류하고 다수의 재난·사고 유형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통’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자연재난 사업은 풍수해·가뭄·지진·폭염 등 7개 유형으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사업은 화재·산불·시설물·교통재난·범죄 등 25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외 특별교부세, 재난 구호 및 복구, 구조·구급·응급 의료와 같이 다양한 재난·사고 유형과 연관되는 경우 공통 분야로 분류된다.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는 11조 6,7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03억원 감소한 반면, 자연재난 예산안은 6조 6,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1억원 증가하였다.

증감률로 보면 세 분야 중 공통 분야의 증가율이 18.9%로 가장 큰데, 이는 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들의 증액(39.4%)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관련 사업들도 13.9% 증액되었다. 자연재난 분야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은 풍수해와 산사태 관련 예산안이 각각 23.8%, 17.3%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 분야별·유형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유형 (43개)	2023 예산액(A)	2024 예산안	증감액 (B)	증감률 (B/A)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32,630	23,039	△9,591	△29.4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379,153	431,936	52,783	13.9
	재난 구호 및 복구	2,819,213	3,929,899	1,110,686	39.4
	재난안전관리체계	234,630	214,052	20578	△8.8
	국가핵심기반 사고	119,872	131,494	11622	9.7
	안전취약계층 지원	83,620	77,529	6091	△7.3
	해외재난 관리	17,694	17,689	5	0.0
	교부세 및 기타	2,122,550	2,080,542	42008	△2.0
	소 계	5,809,362	6,906,180	1,096,818	18.9
자연 재난	풍수해	4,014,926	4,968,967	954,041	23.8
	산사태	232,977	273,209	40,232	17.3
	가뭄	1,109,651	1,175,080	65,429	5.9
	지진	223,910	174,961	△48,949	△21.9
	조류	84,856	31,377	△53,479	△63.0

(단위: 백만원, %)

분야	유형 (43개)		2023 예산액(A)	2024 예산안	증감액 (B)	증감률 (B/A)
	대설·한파		50	0	△50	순감
	폭염		10,085	10,000	△85	△0.8
	소 계		5,676,455	6,633,594	957,139	16.9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폭발		25,538	19,341	△6,197	△24.3
	산불		169,796	174,778	4,982	2.9
	시설물 재난·사고		107,611	125,469	17,858	16.6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2535557	2,514,294	△21,263	△0.8
		철도교통	1,973,246	2,335,246	362,000	18.3
		항공교통	71,101	57,197	△13,904	△19.6
		선박	763,454	829,975	66,521	8.7
	방사능 재난·사고		139,561	158,746	19,185	13.7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12,049	17,809	5,760	47.8
	미세먼지		685,357	555,213	△130,144	△19.0
	수질오염		949,740	1,157,922	208,182	21.9
	해양오염		35,850	15,872	△19,978	△55.7
	감염병		1,973,948	673,354	△1,300,594	△65.9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378,587	419,706	41,119	10.9
	생활 레저·사고	승강기사고	4,618	5,330	712	15.4
		전기·가스 사고	119,200	116,018	△3,182	△2.7
		등산레저 사고	18608	243,696	225,088	1209.6
		물놀이사고	1,918	1,138	△780	△40.7
	산업 재난·사고	사업장산재	1,209,215	1,271,847	62,632	5.2
		농어업사고	234911	266,251	31,340	13.3
	식품 사고		336,041	317,478	△18,563	△5.5
	의료제품 사고		56,693	59,258	2,565	4.5
	범죄		242,325	243,119	794	0.3
	자살		49883	50,183	300	0.6
	전시재난테러		46,923	42,226	△4,697	△10.0
	소 계		12,141,730	11,671,466	△470,264	△3.9
합 계			23,627,547	25,212,240	1,584,693	6.7

주: 2024년도 예산안은 9월 제출자료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1) 사업평가의 예산안 연계성 강화 필요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⁴⁾와, 제10조의3⁵⁾에 따라, 매년 각 소관부처의 자체평가와 행정안전부의 상위평가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목적을 가진다. 2023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총 26개 부처, 251개 사업의 2022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사업규모는 16조원이다.

평가방법은 부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사업을 평가하여 평가점수 및 등급을 우수(상위 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하위 15% 이상) 등급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행안부 상위평가단을 통해 자체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된다.

-
- 4)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5)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사업평가 과정]



자료: 행정안전부

확정된 결과는 기재부에 통보⁶⁾하고, 2024년 재난안전예산안 사전협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평가결과에 반영하게 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자체평가 (각 부처)	사업계획의 적정성	- 재난안전 목적과의 부합성 -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30점(신규사업) 15점(계속사업)
	환류 및 개선 노력	- 전년도 평가의견의 반영정도 - 외부 지적사항 등의 개선 실적	0점(신규사업) 15점(계속사업)
	사업관리의 적정성	- 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사업추진 현황점검 및 조치 실적	10점
	집행효율성	-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노력도	10점
	성과달성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30점
	성과우수성	-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	20점
상위평가 (행안부)	과정의 적정성		20점
	결과의 정확성		80점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 대한 반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총 254개의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251개 사업 중 50개,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은 161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40개이다.

6)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모든 평가는 성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미흡사업군 10% 이상) 하여 각 평가예산 총액의 1% 이상 삭감 요구를 원칙으로 함

[2023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반영결과]

(단위: 개, 억원, %)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	251	50 (19.9)	161 (64.2)	40 (15.9)
2022년 예산규모	160,384	36,465 (22.7)	112,475 (70.1)	11,444 (7.2)
평균점수	87	95.25	87.47	73.49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안의 기준으로 우수로 평가된 사업의 규모는 4조 890억원이며,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의 규모는 11조 7,552억원, 그리고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의 규모는 1조 1,000억원이다.

우수로 평가된 사업들의 2023년 예산규모는 3조 7,793억원으로, 3,096억 5,900만원 증가하여 약 8.2% 증가하였다.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들의 2023년 예산규모는 12조 1,869억원으로, 4,307억 5,800만원 감소하여 약 3.5% 감소하였다.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들의 2023년 예산규모는 1조 992억원으로, 4억 3,800만원 감소하여, 약 0.04% 감소하여 거의 변동이 없다.

[2023년 평가등급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예산안(A)	2024년 정부안(B)	증가율 ((B-A)/A)	반영률 (B/A)	평균 반영률
우수사업	37,793	40,890	8.2	108.2	101.3
보통사업	121,859	117,552	△3.5	96.5	105.4
미흡사업	10,992	10,996	0.04	100.0	80.8
총계	170,644	169,438	△0.7	99.3	-

주: 개별사업 단위 반영률의 평균치를 각 평가등급별로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①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재난안전사업평가의 결과에서 도출된 미흡 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는 등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사업을 평가하여 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업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 환류 및 개선 노력,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및 우수성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후 자체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행안부 상위평가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정해진 등급과 사유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 등급별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의 반영비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은 101.3%, 보통등급은 105.4%, 그리고 미흡등급은 80.8%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평균적으로 증액을 하고,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이 평균적으로 감액하는데, 보통등급을 받은 사업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반영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편성된 예산 규모가 유지 및 증액된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들 중에서도 감액보다 증액된 사업들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 예산액 유지·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사업명	2023년예산 (본예산)(A)	2024년예산 (정부안)(B)	증감율 (B-A/A)
행안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6,454	10,794	67.25
고용부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356,328	458,640	28.71
산업부	일반광업육성지원	10,973	13,828	26.02
국토부	항공장애표시등안전관리	669	837	25.11
해수부	어업인안전보험	1,749	2,071	18.41
해수부	수산물위생관리	23,707	25,810	8.87
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11,919	12,354	3.65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89,338	91,828	2.79
농식품부	수리시설유지관리	160,908	165,300	2.73
식약처	식품관리운영	1,410	1,438	1.99
소방청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5,367	15,456	0.58
소방청	119구조장비확충	11,147	11,201	0.48
질병청	신종감염병입원치료병상확충유지	3,907	3,907	0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평가된 사업 중 보통 등급이지만 점수가 80점 이하인 사업이나 미흡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규모 대비 2024년도 정부안 예산이 유지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보통’ 등급(80점 이하) 사업 중 예산액 유지·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사업명	점수	2023년예산 (본예산)(A)	2024년예산 (정부안)(B)	증감율 (B-A/A)
국토부	항공안전교육훈련	75	1,322	1,327	0.38
행안부	재난심리회복지원	80	1,160	1,190	2.59
소방청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	80	11,225	11,978	6.71
국토부	도로유지보수	80	778,391	837,805	7.63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79	51,117	62,434	22.14
환경부	국가하천정비	78	451,030	662,717	46.93
행안부	중앙안전상황실운영	80	2,108	7,984	278.75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자체평가 상 일부 개선이 필요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예산규모는 세부사업을 단위로 평가 및 편성되기 때문에, 미흡으로 평가된 내역사업과 실제 감액된 내역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평가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흡 평가의 원인이 되었던 내역사업이 아닌 다른 내역사업의 예산 조정, 혹은 신규사업으로 인한 세부사업 전체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별 내역사업별로 구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환류에 대한 이행 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또한,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시점(3월)과 예산 편성시점의 시차로 인한 변화가 일부 사업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와 편성된 예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 집행률 부진 등의 명확한 사유로 ‘미흡’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관련 내역사업에서 반영되지 않고 증액편성되는 등의 현상은 사업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일례로, ① 공공폐수처리시설(환경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며,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에서도 미흡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집행률 부진이다. 본 사업의 2022년 예산집행률(63.1%)은 저조할뿐더러, 2021년부터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시설에 대한 예산규모는 감액되었지만, 계속시설에 대해 증액이 되어, 연례적 집행부진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계속시설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항공안전교육훈련(국토교통부) 사업은 항공안전감독관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유지 및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사업 관점의 필요성 및 부합성의 점수가 높이 평가되지만, 연례적 및 분기별 집행률이 부진하였고, 전년도 평가의견에 대한 환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보통’ 등급 중에서도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평가에서 지적된 집행률 부진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낮거나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세분화하여 지적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통등급으로 평가된 사업 중 80점대로 평가가 된 사업은 90점 이상의 우수사업보다 평균 반영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사전협의의 결과에 따른 예산안 연계 체계 정비 필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재부가 효율적으로 재정배분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각 부처 예산요구서, 중기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투자방향 제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와 핵심사업이 선정된다.

사전협의의 결과에 따라 각 재난안전사업은 3개의 투자우선순위 등급으로 결정되며, 본 결과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선정결과]

(단위: 개, 억원)

	투자확대 (‘가’급)	투자유지 (‘나’급)	투자축소 (‘다’급)
사업 수	114(핵심사업: 39) (29.2%)	179 (45.8%)	98 (25.0%)
예산규모	97,561 (40.0%)	107,682 (43.7%)	40,920 (16.6%)

자료: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에 따른 등급별 예산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협의 대상인 전체 사업의 총 요구액 24조 5,542억원 중에서 2024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규모는 24조 5,782억원으로, 요구액 만큼 거의 반영되었으며, 2023년 예산안 대비 2024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규모는 240억 5,700만원 초과반영되어 106.0% 반영되었다.

[2024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평가결과]

(단위: 억원, %)

	2023년 예산안	사전협의 요구액(A)	2024년 정부안(B)	반영률 (B/A)	평균 반영률 ¹⁾
투자확대(핵심)	40,271	55,657	46,749	84.0	72.2
투자확대('가')	34,302	41,531	38,073	91.7	83.6
투자유지('나')	102,894	107,507	123,454	114.8	94.1
투자축소('다')	54,414	40,847	37,507	91.8	84.9
총계	231,881	245,542	245,782	100.1	87.7

주: 개별사업 단위 반영률의 평균치를 각 평가등급별로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제구성

①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제도와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사전협의 결과 투자유지 및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업이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증액편성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평가항목별 지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에 따른 투자등급별 예산반영비율은 투자확대('가') 등급 중 핵심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요구액 대비 2024년도 정부안은 84% 반영되었으며, 투자확대('가') 등급의 반영률은 91.7%, 투자유지('나') 등급의 반영률은 114.8%로 초과반영되었고, 투자축소('다') 등급은 91.8% 반영되었다.

그런데, 개별사업의 반영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투자유지('나') 등급의 반영률이 94.1%로 가장 높았고, 오히려 투자축소('다') 등급의 반영률이 투자확대('가') 등급의 반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투자유지('나')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의 개수가 다른 사업의 개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투자축소 및 확대등급과는 다르게, 투자유지 등급의 판정은 감액 및 증액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사전협의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제약이 느슨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축소('다')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이

에 대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증액된 사례가 있어, 사전협의결과에 대한 반영이 일부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① 수산물위생관리(해양수산부) 사업은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등급을 받았고, 2023년 진행된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유는 예산 실행행률 개선 필요와 사업성고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의 부족이다. 실제로 2022년도 예산으로 도입하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가 외자도입 기간 소요,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도입이 지연되었고, 2023년도 현시점에도 동일한 사유로 집행이 현재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도입될 장비도 유사한 사유로 집행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② 산재예방시설(용자)사업(고용노동부)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용자신청 시, 심사 대비 승인비율(결정률)이 거의 99%인데, 높은 결정률에 비해 신청 후 취소율은 평균 15.2%에 달한다.

[산재예방시설사업 용자 신청 후 취소 업체수 및 금액]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0.
신청	금액	161,744	162,577	445,123	475,325	420,472
	사업장 수	874	1,145	3,261	3,304	2,644
취소	금액	29,963	39,994	74,604	54,059	34,043
	사업장 수	163	266	564	435	275
취소율(사업장 수 기준)		18.6	23.2	17.3	13.1	10.4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거 시정요구⁷⁾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투자완료 기한도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취소사업장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등을 사업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승인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음에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일부 감점이 되어 최종적으로 투자축소(‘다’ 급) 의견을 받았다.

더불어, 취소율의 개선이 일부 나타나지만 여전히 높은 측면이 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에서 투자축소 의견에 따라 효율적 집행이 우선임에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대상이 확대되는 등 노동환경 변화와 폭염과 같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1,023억 증액되었다.

따라서, ‘투자축소’와 ‘투자유지’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로 지적사항을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의 우수성과 개선사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용자 신청 사업장이 서류에 기술적 미비사항이나 자격미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용자승인을 받고 있어, 2020년과 2021년 신청 대비 승인율이 99%에 이를 -용자 신청 승인 비율이 매우 높은 데 비하여 2021년도에는 신청 금액 중 16.7%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용자 신청 후 취소 업체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그 금액 또한 배로 증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용자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용자승인 신청 시 안내를 강화하고 승인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용자 취소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다' 등급 중 예산규모 유지·증가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사업명	2023년 예산 (본예산)	2024년 예산 요구액(A)	2024년 예산 (정부안) (B)	증감액	증감율 (B-A/A)
문체부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584	184	526	342	185.9
질병청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437,999	86,872	185,345	98,473	113.4
고용부	산재예방시설용자(용자)	356,328	356,328	458,640	102,312	28.7
해수부	수산물위생관리	23,707	23,152	25,810	2,658	11.5
산업부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10,973	12,611	13,828	1,217	9.7
질병청	에이즈 및 성병예방	15,925	15,055	16,314	1,259	8.4
산림청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2,876	2,558	2,588	30	1.2
국토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정보화)	2,277	644	644	0	0.0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출연 (재난취약지구정비)	8,309	3,160	3,160	0	0.0
기상청	해양 기상기 지구축 및 운영	5,114	1,988	1,988	0	0.0
환경부	댐안전성강화(Ⅰ 단계)사업	64,295	33,122	33,122	0	0.0
해수부	국가어항(제주)	10,240	6,746	6,746	0	0.0
산림청	청사시설관리(내진성능평가)	206	155	155	0	0.0
기재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5,300	4,770	4,770	0	0.0
기상청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2,408	2,208	2,208	0	0.0
환경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200	190	190	0	0.0
국토부	시화방조제관리지원	2,000	1,900	1,900	0	0.0
행안부	B-1 정부노후시설정비	934	916	916	0	0.0
소방청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날 행사지원	574	565	565	0	0.0
과기정통부	우체국보수(건물내진보강)	2,467	2,438	2,438	0	0.0
환경부	치수연구개발	40,000	40,000	40,000	0	0.0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정보화)	520	591	591	0	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3) 재난·안전사업 포트폴리오 적정성 검토 필요

정부는 각 회계연도별로 재난·안전사업의 자원 배분내역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재난·피해 유형별 예산규모와 투자단계별 예산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재난·피해유형별로 보면 사회재난·사고 분야에 46.29%, 자연 재난분야에 26.31%, 공통분야에 27.39%의 재원이 편성되었다. 세부유형별로는 교통재난·사고 유형 관련 예산이 5조 7,367억원(22.8%)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뒤를 이어 풍수해 관련 예산이 4조 9,6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71% 수준이며 재난 구호 및 복구 예산은 3조 9,299억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15.59%에 해당한다.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피해유형별 예산안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분야	유형 (43개)	2024예산안	비중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23,039	0.09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431,936	1.71
	재난 구호 및 복구	3,929,899	15.59
	재난안전관리체계	214,052	0.85
	국가핵심기반 사고	131,494	0.52
	안전취약계층 지원	77,529	0.31
	해외재난 관리	17,689	0.07
	교부세 및 기타	2,080,542	8.25
	소 계	6,906,180	27.39
자연 재난	풍수해	4,968,967	19.71
	산사태	273,209	1.08
	가뭄	1,175,080	4.66
	지진	174,961	0.69
	조류	31,377	0.12
	폭염	10,000	0.04
	소 계	6,633,594	26.31
사회 재난 및 안전	화재·폭발	19,341	0.08
	산불	174,778	0.69
	시설물 재난·사고	125,469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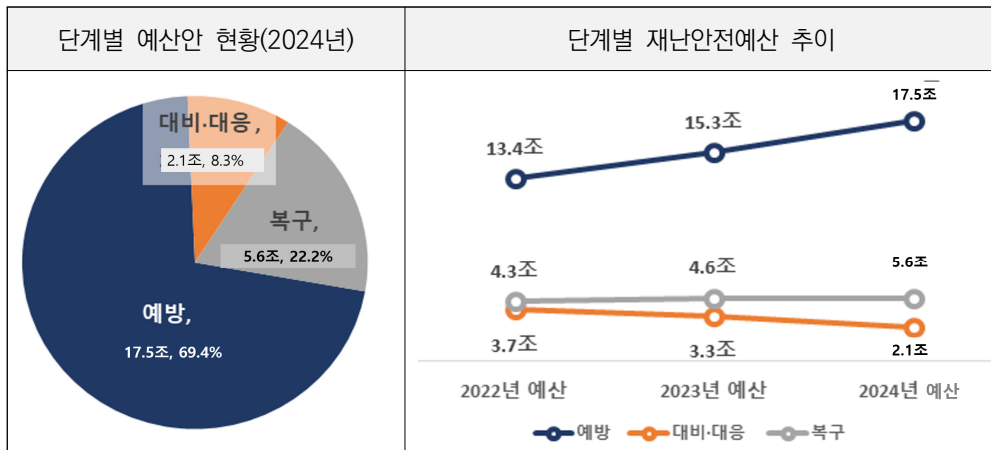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분야	유형 (43개)	2024예산안	비중
사고	교통재난·사고	5,736,712	22.75
	방사능 재난·사고	158,746	0.63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17,809	0.07
	미세먼지	555,213	2.20
	수질오염	1,157,922	4.59
	해양오염	15,872	0.06
	감염병	673,354	2.67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419,706	1.66
	생활레저 사고	366,182	1.45
	산업(산재,농어업) 재난·사고	1,538,098	6.10
	식품 사고	317,478	1.26
	의료제품 사고	59,258	0.24
	범죄	243,119	0.96
	자살	50,183	0.20
	전시재난·테러	42,226	0.17
	소 계	11,671,466	46.29
합 계		25,211,240	100

자료: 행정안전부

투자단계별로 보면 예방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이 역시 대비·대응 예산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예방부문과 복구부문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방 부문은 2023년은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하고 2024년은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상당하다. 복구 부문은 2022년과 2023년 예산이 0.3조원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2024년에는 1조원이 증액된 5.6조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단계별 예산안 규모 및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는 2024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재난·안전사고는 근본적 예방을 위해 관련 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효율적 예방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비비를 포함한 복구 예산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난·안전사업의 사업 내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① 재난예방 사업내역 구성의 명확화 및 재분류 필요

직접적 예방사업 외에 거시적 의미의 안전망 구축, 대비사업도 예방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사업 규모와 비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효율적 사업관리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투자단계별 사업내역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⁸⁾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⁸⁾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2024년도 투자단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예방부문 예산이 전체의 69.4%를 차

8)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례로 전국 침수 위험지구 정비사업 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예방사업을 위한 투자액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액의 40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하고 복구는 22.2%, 대비·대응은 8.3%수준이다. 2023년도와 비교하면 우선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예방사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3%p 이상 확대되고, 복구사업도 2.9%p 확대된 반면 대비·대응사업의 비중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2023-2024년도 투자단계별 사업수 및 예산액]

(단위: 백만원, %)

투자단계	2023			2024		
	사업수	예산액	비중	사업수	예산액	비중
예방	290	15,650,496	66.2	277	17,501,082	69.4
대비·대응	115	3,423,546	14.5	103	2,102,728	8.3
복구	27	4,553,505	19.3	26	5,608,430	22.2
합 계	432	23,627,547	100	406	25,212,240	100

주: 2024년도 예산안은 9월 제출자료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예방부문 사업들을 보면 ① 직접적 예방조치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여러 경로를 거쳐 간접적으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거나 ② 해당 세부사업의 일부가 재난·안전예방과 연관되는데 전체 사업 예산이 보고되어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국가어항, 연안정비 등 사업은 접안시설 등의 항구 시설 증축공사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 세부사업 예산이 모두 직접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역시 법령에 따라 신·증축 과정에서 내진설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체를 재난예방사업비로 포함시키고 있다.

더불어 정책목적상 재난안전예방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국토공간기반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큰데, 국토공간 파악이 재난발생 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판단하여 예방사업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지원이나 시설보수공사 예산 역시 안전취약계층지원에 해당하

고 이들이 재난·사고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재난·안전 예방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접적 예방사업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4예산안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301,655
국토교통부	첨단도로교통체계	210,001
해양수산부	연안정비	54,221
해양수산부	해양 및 수자원관리	42,802
해양수산부	국가해양관측망구축및운영	39,765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30,264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재건축	17,644
경찰청	청사시설관리	10,13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23,64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위탁및관리	25,880
국토부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980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3,745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국제협력	2179
법무부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705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691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기반조성	700
국토교통부	일반공항시설관리	389
기상청	다목적기상항공기도입 및 운영	264
산림청	청사시설관리	15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 차원의 사업을 합리적 기준 없이 재난·안전 예방사업으로 분류하거나 대규모 공사사업에 대해 일부분 안전을 위한 예산소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전체예산을 예방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당해연도 재난·안전 예방사업 예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재난예방사업 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같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 안전사고 발생 방지나 재난 및 사고발생 시 피해경감에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재난복구사업 예산편성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재난대책비는 매년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를 통해 당해연도에 전액 교부했으나 2024년예산안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2023년 수해 피해복구비를 차년도 재난대책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투자단계별 분류 시 복구에 속하는 사업들 중 일부는 재난구호 및 복구유형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비가 편성된 재난(재해)대책비와 재해보험, 재난 발생 후 구호 및 회복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재해)대책비가 대표적인 복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규모 확대를 감안하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금년도 재난·안전예산에 재난대책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87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즉, 복구 분야 전체 예산증액분 1.9조원의 52.6%가 동 사업들의 예산 증가에 기인한다.

[재난구호 및 복구유형 재난·안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유형명	부처명	사업명	2023 예산액	2024년 예산안
재난 구호 및 복구	기획재정부	예비비(재해예비비)	1,600,000	1,600,000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150,035	600,04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200,000	300,0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0,000	100,000
	해양수산부	양식등재해대책비	8,000	85,000
	산림청	임업인재해복구긴급지원	2,876	2,58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730,922	657,104
	농림축산식품부	재보험금	70,000	150,000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1,160	1,190
	행정안전부	재난구호지원	1,000	1,00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그러나 2023년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6.27~7.27 호우, 제 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계획 및 농·축·수산 분야 피해 상향·확대 지원(안)”에 따르면, 차년도 관련 예산 증액분 중 89.6%인 8,953억원은 2023년에 발생한 피해 복구 재원이 고 이를 제외한 1,034억원이 실제 2024년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 편성된 것이다.

[2023년 호우 및 태풍 피해 재난복구비 국비소요액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호우			태풍		
	계	금회	향후 ¹⁾	계	금회	향후 ¹⁾	계	금회	향후 ¹⁾
총계 ²⁾	121,6910	321,625	895,285	1,177,800	302,174	875,626	39,110	19,451	19,659
행안부	690,893	150,609	540,284	669,299	141,503	527,796	21,594	9,106	12,488
환경부	299,212	57,411	241,801	290,794	51,734	239,060	8,418	5,677	2,741
농림부	105,634	56,747	48,887	103,088	54,201	48,887	2,546	2,546	-
산림청	69,821	5,508	64,313	65,005	5,122	59,883	4,816	386	4,430
해수부	2,205	2,205	-	1,220	1,220	-	985	985	-

주. 1) 향후 국비 소요액은 2024 회계연도 소관 부처별 재난대책비로 지원

2) 제시된 부처 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복구비는 491억원이며, 향후 국비소요액은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매년 이월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설계·착공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6,201건, 74.8%)의 복구비와 장기소요가 예상되는 공사건(2,095건, 25.2%)의 설계비는 당해연도에 이·전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2024년 본예산을 통해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재난대책비 집행 후 부족한 복구비 전액을 예비비를 통해 교부한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공사 건별 특성에 따라 당해연도와 차년도 교부액을 나누어 계상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금년도와 같이 세수결손이 발생한 경우 상당 규모의 예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본예산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일정 부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모두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10월 전후 대형 태풍의 영향이 없어 차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교부대상과 규모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전 년도와 같이 8월경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와 10월 중하순 대형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예산편성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일반적인 SOC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를 계상하고 매년 계획된 일정 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재해복구의 경우 당해연도 자연·사회재난의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2023년도 역시 예산편성 이후 사고나 대설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시간적으로 추후 발생한 피해임에도 당해연도 예비비로 전액 교부할 것인지 차년도 초에 이·전용 등을 통해 2023년 수해피해복구비보다 늦게 교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일선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대규모 개선복구공사 건의 경우 금년도 복구공사는 규정상 국고보조금 교부 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2026년)에 완료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여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차년도 본예산으로 교부하면 이행의무가 2027년으로 변경되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이 정책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형 개선복구 공사들이 이행의무기간 연장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4) 핵심사업 선정기준 및 관리 기제 보완 필요

행정안전부는 매년 2월경 핵심사업 후보군을 선정하여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미리 통보하고, 2024년 6월 핵심사업을 최종 선정하는데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핵심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핵심사업을 선정한 후에는 6월경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착수 전 사전통보하여 예산안 편성 시 핵심사업에 대해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사업의 대상은 ‘투자우선순위 평가 결과 투자확대가 필요한 사업 중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하고, 정책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부재하다.

다만, 핵심사업의 최종 선정과정을 보면 이전에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을 기반으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자문단,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우선순위 세부 기준에 따라 사업별 점수를 부여한다. 투자우선순위는 피해 현황, 최근 부각된 위험성 및 향후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국민 안전 제고 기대효과 등 사업 필요성 측면과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실효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재정투자여건 및 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총 100점)]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40점)					재정 사업 평가 결과 (35점)	투자 여건(25점)		
피해 현황 (10점)	사회적 이슈 및 위험 전망 (15점)	사업의 기대효과 (15점)	가·감점			공급 주체 측면 (15점)	정부 측면 (10점)	가점
			사업내역 적정성 (±5점)	유사· 중복성 (-3점)				주요안전 정책 연계 (+5점)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별로 획득한 총점에 따라 투자우선순위 등급이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가 등급’⁹⁾ 중 예산 규모와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통지한다.

핵심사업 선정 여부가 예산안 편성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예산안 편성 전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편성 과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9) 전체 재난·안전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결과를 3개 등급으로 발표하는데 ‘가 등급’(투자확대) 30~40%, ‘나 등급’(투자유지) 50~60%, ‘다 등급’(투자축소) 10~20% 로 분류된다.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을 보면 총 436개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1조 5,847억원 증액되었는데, 핵심사업은 39개로 8%에 불과하나 이들의 증액 규모는 6,510억원 수준이다.

[2024년도 핵심사업 예산안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안	증감액
경찰청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12,071	11,975	△96
고용부	안전보건문화정착	32,847	32,925	78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131,530	145,655	14,125
과기부	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2,991	5,282	2,291
과기부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정보화, 출연)	64,137	62,125	△2,012
국토부	도로안전맞환경개선	969,151	1,078,255	109,104
국토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1,184,120	1,445,266	261,146
국토부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 정보화)	13,605	13,188	△417
기상청	선진예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9,872	14,131	4,259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7,252	9,544	2,292
법무부	전자감독	30,677	32,427	1,750
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514	29,267	753
복지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0,623	54,632	24,009
복지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	48,847	49,129	282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110,804	112,344	1,540
산림청	산불방지대책	51,117	62,434	11,317
소방청	119종합상황관리	1,198	20,090	18,892
소방청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2,696	11,334	△1,362
소방청	실화재훈련시설구축	-	4,094	4,094
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강화	3,479	7,185	3,706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5,388	5,617	229
식약처	수입축산물물검사	2,260	3,014	754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39,199	39,615	416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안	증감액
질병청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21,840	24,591	2,751
질병청	국가예방접종실시	357,566	359,647	2,081
해수부	연안정비	53,944	54,221	277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8,149	18,592	10,443
행안부	국민안전의식선진화	6,337	5,749	△588
행안부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3,484	3,583	99
행안부	대한민국안전리빌딩	-	-	-
행안부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81	2,981	300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955	503	△452
행안부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5,145	3,376	△1,769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703,256	862,867	159,611
행안부	지능형CCTV관제체계구축(정보화)	-	3,251	3,251
행안부	풍수해보험	36,371	38,045	1,674
환경부	가뭄조사및모니터링	2,026	2,276	250
환경부	도립천일대침수방지사업	3,031	12,500	9,469
환경부	홍수예보및수문조사	29,937	36,450	6,513
합 계		4,027,100	4,678,160	651,060

자료: 행정안전부

핵심사업 선정여부가 실제 해당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등 예산안 편성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과정과 결과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목적과 함께 사업계획의 면밀성과 집행가능성도 고려하여 선정·관리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핵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중장기적 관리사업과 현안·단기사업 별도 관리방안 모색 필요

핵심사업 선정 시 당해연도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슈화된 분야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예방·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구축되지 않도록 장기적 예방차원의 핵심사업과 계기성 사업을 분류하여 선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핵심사업 내역을 보면 피해유형별 분야 43개 중 18개 내외의 분야 사업들이 선정되는데 주로 당해연도의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회계연도의 경우 감염병, 도로교통, 미세먼지, 풍수해 분야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전 년도와 달리 국가핵심기반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선박재난사고, 철도교통재난사고 분야의 사업 선정건수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주요 이슈화된 사건·사고 내역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2020년 주요 사건·사고를 보면 코로나19,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31중 추돌사고, 합천 33번 국도 41중 추돌사고,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및 SNS계정해킹과 비트코인 조작사건, 이천물류센터 화재,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 32명민호 침몰사고, 상계역 전동열차 추돌사고, 조류독감 확산 등이 있었다.

반면 2024회계연도 핵심사업은 재난안전관리체계, 풍수해,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식품사고,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산불 분야 사업이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재난안전관리체계 분야에 편중이 두드러지는데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목록을 보면 119종합상황관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 재난행정정보화 등 범부처 상황정보·대응조치 공유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2022년 이태원참사와 같은 재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써 추진되고 있다. 신규 핵심사업인 지능형CCTV관제체계구축사업 또한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CCTV노후화 및 성능제약, 관제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타 주요 이슈가 된 강릉산불, 신림과 분당 등에서 일어난 다발적 흥기난동사건, 일본 오염수방류 등에 대응하여 산불, 범죄, 식품사고 분야 사업이 핵심사업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비중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021·2024회계연도 분야별 핵심사업 비중 비교]

(단위: 백만원, %)

2021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유형별 분야	사업수	비중	유형별 분야	사업수	비중
국가핵심기반사고	1	2.6	가뭄	1	2.6
가뭄	1	2.6	감염병	2	5.1
가축및수산물생물전염	3	7.7	구조,구급및응급의료	2	5.1
감염병	5	12.8	국가핵심기반사고	2	5.1
도로교통재난·사고	4	10.3	도로교통재난·사고	1	2.6
미세먼지	4	10.3	범죄	3	7.7
범죄	1	2.6	사업장산재	2	5.1
사업장산재	3	7.7	산불	2	5.1
산불	1	2.6	시설물재난·사고	1	2.6
선박재난·사고	1	2.6	식품사고	2	5.1
시설물재난·사고	2	5.1	안전문화및교육훈련홍보	1	2.6
안전문화및교육훈련홍보	1	2.6	안전취약계층지원	1	2.6
안전취약계층지원	1	2.6	의료제품사고	1	2.6
자살	1	2.6	자살	1	2.6
재난안전관리체계	2	5.1	재난안전관리체계	8	20.5
철도교통재난·사고	2	5.1	지진	1	2.6
폭염	1	2.6	철도교통재난·사고	1	2.6
풍수해	4	10.3	풍수해	6	15.4
항공교통재난·사고	1	2.6	화재·폭발	1	2.56
화재·폭발	1	2.6			
2020년 주요사건 및 이슈			2023년 주요사건 및 이슈		
· 코로나19 팬데믹 · 이천물류센터 화재 ·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31중 추돌사고 · 합천 33번국도 41중 추돌사고 · 텔레그램성착취 및 SNS계정해킹 · 역대 최장장마/태풍 강타 · 32명민호 침몰사고 · 상계역 전동열차 추돌사고 · 조류독감 확산 등			· 이태원참사 · 집중호우 피해 · 강릉산불 · 다발적 홍기난동사건 · 「스토킹방지법」 시행 · 수입식품방사능안전문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행정안전부는 차년도 사업별 투자배분 과정에서 금년도 재난·안전 이슈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핵심사업 선정에도 이것이 많이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의 재난·안전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이슈가 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그 필요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재난·안전은 향후 위험에 대한 예방측면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문이 있는데, 당해연도 핵심사업에 대해 전년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면 중장기사업을 통한 예방이 필요한 부문이 소외되거나 구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 재원투입을 통한 재난예방이 이루어져야할 부문에서 주요 사업이 일관성·계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효과성을 제약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일례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¹⁰⁾와 이에 기반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¹¹⁾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 폭염, 풍수해 규모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당 분야의 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2021년 이전 몇 년간 이슈가 되었던 가뭄이나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 관련 사업은 금년도에 이슈화된 사건이 없어 핵심사업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여 예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군과 특정 계기를 기반으로 단기대응이 필요한 사업군으로 나누어 핵심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주기적 빈도로 피해를 입거나 미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4-5년 단위로 수행해야 할 사업과 당해연도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각 부문에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국제협의체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지구 온난화의 메커니즘과 사회·경제에의 영향, 대책을 밝히기 위해 1990년부터 발행하는 보고서이다.

11) 환경부와 기상청 등이 주관이 되어 분야별 전문가의 주도하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며, 가장 최근 보고서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고 2023년 9월 현재 2025년도 발간 보고서를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② 집행가능성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필요

첫째, 실수요, 이월액 및 절대 공기를 고려할 때 실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수요보다 과다한 예산안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핵심 선정 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제도는 핵심사업 선정의 전제가 되는 투자우선순위 결정 시 위험전망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이전 집행률과 해당 회계 연도의 집행 가능성, 추진 환경, 사업 목적 대비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지연으로 차년도에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수요와 관련 물품·서비스 공급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을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환경부의 도립천일대 침수방지사업¹²⁾은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계획 대비 약 1.7배 증액되어 2023년 8월말 기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비 30억 3,100만원이 전액 미집행 상태이다.

[2024년도 도립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도립천 일대침수방지	-	3,031	12,500	9,469	312.4

자료: 환경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차년도의 우선시공분 설계 및 착공 이후 진행되는 본공사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 사업이 총사업비 협의 절차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본공사 설계 및 공사 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조정된 일정상 본공사 착공은 12월로 예정하고 있고 유사사업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본공사가 2025년도로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동 사업은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에서도 투자를 확대해야할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예산규모 상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예산안에 환경부의 요구액125억원이

1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48-53.

그대로 편성되었다.

[도림천일대 침수방지사업 현황 및 2024년도 재난안전사전협의 요구액·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8. 실적행현황			2024 예산안		
	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총사업비 연부액 ¹⁾	사전협의시 요구액 ²⁾	예산안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설계·공사비	3,031	0	0.0	12,500	12,500	12,500

주: 1) 당초계획 상 2024년 소요 사업비를 의미

2)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시 부처가 제출한 요구액

자료: 환경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¹³⁾ 역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 증가한 8,140억원이 편성되었다. 증액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내역사업이 전년 대비 554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사유인데 이에 대해 실소요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코로나19백신 신규 도입(750만회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는 재고량 2,989만회분과 금년도 도입 예정물량 6,142만회분을 감안하지 않고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백신接种의 경우 근본적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당해연도 예산 소요가 계획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코로나19 백신 도입 내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예방접종실시	2,892,160	813,487	814,049	562	0.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493,992	386,950	442,371	55,421	14.3

자료: 질병관리청

1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244-249.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의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내역사업 역시 신규사업임에도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47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산출내역을 보면 정부의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정 목표 개소 수가 총 100개소인 점과 주7일 운영을 기준으로 개소당 2억원의 운영비(국비 50%)를 지원한다는 계획(홍보비 1억 5,500만원)인데, 이는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실제 참여의도가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그 중 주7일 운영 기관의 확보 가능 여부가 모두 불분명한 상황이다.

[2024년도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28,942	30,623	54,632	24,009	78.4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	5,230	7,800	2,570	49.1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사업이 투자 규모를 최우선적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안이 편성 되면 해당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전문가 의견수렴 당시 투자 확대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

일부 사업들은 신규로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관련 재난피해 현황이나 향후 위험 전망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을 핵심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거나, 전문가들이 투자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계획수립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핵심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안전리빌딩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전협의 결과보고서에는 예산안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명칭과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사업의 신규 내내역사업(범정부 위험분석·발굴체계 운영사업)¹⁴⁾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4년도 범정부 위험분석·발굴체계 운영 내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역안전개선컨설팅	457	1,359	2,650	1,291	95.0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36	163	2,272	2,109	1293.9
범정부 위험분석·발굴 체계 운영	-	-	2,125	순증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범정부 위험분석·발굴체계 운영사업은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출연 연구원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새로운 위험발굴 분석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금년도에 수도권, 충청권, 제주전라권, 강원권, 경상권에서 각각 5~8개 자치단체(총 20~30개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출연연구원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확보 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동시 참여하여 각 지역의 주요시설이나 재해예방인프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과 가용인력에 차이가 있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67-71.

사전협의 당시 검토위원들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역별 실수요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전국 5대 권역에서 5~8개 자치단체를 설정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사전협의 당시 제시한 것과 동일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다기관 공동 추진체계의 구체적 방식과 책임성 확보 방안, 지역의 실수요 조사 및 협의, 안전위험요소 조사대상과 관리방안에 대해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사업인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¹⁵⁾ 증액 건도 해당 사업 내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80억원)된 것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4년도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산불방지대책	51,831	51,117	62,434	11,317	22.1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	-	8,000	8,000	순증

자료: 산림청

사전협의 당시 대형산불발생 빈도와 규모를 감안하여 산림헬기 등 기존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비용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계상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산림헬기의 대안으로 고정익항공기(군 수송기)에 장착하여 산불 진화용으로 사용할 물탱크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물탱크 1대를 설치하는 비용 8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다. 그런데 산림청은 물탱크를 장착할 고정익항공기 제공여부, 방식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담수 및 이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 진화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물탱크 1대당 도입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면밀한 대안모색과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 보다 신중하게 사업의 차별

1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46-255.

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협의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핵심사업 선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75-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